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730-01



북한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

2019. 12.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북한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구 기간 : 2019년 5월 30일 ~ 2019년 12월 18일
- 주관연구책임자 : 허 인(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참 여 연 구 원 : 강경남(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재식(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정화(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위원)
이인혜(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고유흠(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혜정(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임연구원)
최현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의섭(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선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양혜영(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아름(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임연구원)
이성훈(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위촉연구원)
정수연(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위촉연구원)

목 차

제1장 서론	1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II. 연구의 범위	2
제2장 북한 산업재산권 개관	4
I. 북한의 지식재산권 정책	4
II.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6
1. 서설	6
2. 사회주의 헌법	7
3. 발명법	8
4. 상표법	15
5. 공업도안법	20
6. 국제조약	23
III. 남북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비교 분석	27
1. 남한 특허법과 북한 발명법	27
2. 남한 상표법과 북한 상표법	34
3. 남한 디자인보호법과 북한 공업도안법	43
IV.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	49
1. 개관	49
2. 발명총국	50
3. 상표 및 공업도안, 원산지명사무소	50
4. 기타	51

V. 북한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51
1. 개관	51
2. 북한 내 발명권 및 특허권 등록 현황	51
3. WIPO를 통한 국제 출원 현황	52
제3장 북한 발명공보 정보 분석	54
I. 북한의 산업재산권(발명공보) 분석	54
1. 분석 대상 자료	54
2. 북한의 산업재산권 권리별 분포	55
3. 북한 산업재산권 연도별 출원 추이	56
4. 산업재산권 연도별 등록 현황	59
5. 북한 산업재산권 산업분야별 분석	61
6.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인 분석	64
7. 북한 산업재산권 발명자 분석	69
8. 남북한 산업재산권 산업활동성 비교	70
II. 북한의 발명공보 데이터의 키워드 특성 분석	72
1. 분석데이터	72
2. 분석방법	72
3. 분석결과	75
제4장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방안	89
I. 서설	89
II.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 현황	91
1. 남북 산업재산권 관련 당국 간 협의 경과	91
2. 민간 차원의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 현황	92

III.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및 조화 관련 해외사례	94
1. 독일	94
2. 중국과 대만	96
3. 시사점	98
IV.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방안	100
1. 남북한 당국 간 협의체의 구성	100
2. 북한 산업재산권 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103
3. 북한에 대한 대금지급 방안 마련	103
4.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서의 채택	108
제5장 결론	115
참고문헌	118
〈부록〉	
〈부록 1〉 연도별 남북한 산업재산권의 산업활동성 비교	120
〈부록 2〉 저널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135
〈부록 3〉 뉴스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139
〈표 차례〉	
표 1 남북 합의서상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1
표 2 북한에 출원된 우리나라 마드리드 출원의 심사 결과(2013.1. ~ 2018.4.)	2
표 3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에 따른 북한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변화	4
표 4 북한 개방정책 변화에 따른 북한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변화	5
표 5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 비교	6
표 6 북한법의 체계	7
표 7 북한 발명법상 발명권과 특허권의 차이점	10
표 8 북한이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23

표 9 남한이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24
표 10 남북이 동시에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26
표 11 남북 특허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비교	29
표 12 남북 상표법의 주요내용 비교	36
표 13 남북 디자인보호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비교	45
표 14 북한 내 발명 및 특허 등록 현황	52
표 15 북한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분포도	55
표 16 북한 산업재산권의 발명 및 특허의 출원 연도별 추이	57
표 17 북한 산업재산권의 연도별 등록현황	60
표 18 북한 산업재산권 산학연 출원인 Top 10	66
표 19 북한 산업재산권 합계 1천 건 이상 출원된 출원인 형태별 산업분야	68
표 20 북한 산업재산권 10건 이상 출원한 발명자 및 소속	69
표 21 제1시구간(2004~2011)과 제2시구간(2012~2018)의 TF-IDF 순위 상위 100위 키워드 목록	76
표 22 TFIDF 상위 키워드가 포함된 클러스터의 구성키워드 현황 (제1시구간: 2004년~2011년)	80
표 23 TFIDF 상위 키워드가 포함된 클러스터의 구성키워드 현황 (제1시구간: 2012년~2018년)	84

<그림 차례>

그림 1 WIPO 시스템하의 출원(출처 : WIPO IP statistics)	53
그림 2 발명공보 책자 예시	54
그림 3 발명공보 CD롬판 종합본(1) 표지 및 수록 등록문건 내용	54
그림 4 북한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분포도	56
그림 5 북한 산업재산권(발명과 특허)의 연도별 출원 추이	58
그림 6 북한 산업재산권 발명의 발명권(F)와 실용기술(H)의 연도별 출원 추이	58
그림 7 북한 산업재산권 특허의 (특허권)L와 (실용기술특허)W의 연도별 출원 추이 ...	59
그림 8 북한 산업재산권의 발명과 특허의 연도별 현황	61
그림 9 북한 산업재산권의 발명과 특허의 연도별 현황	62
그림 10 북한 산업재산권 산업집중도(산업활동성) 분석	64
그림 11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인 유형별 출원건수 분석	65

그림 12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인 형태별 기술집중도 분석	66
그림 13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인 Top 30	67
그림 14	남북한 산업재산권 산업분야 비교	71
그림 15	제1시구간(2004년~2011년) 북한 특허데이터 주요 키워드 상관관계 지도	73
그림 16	제1시구간(2004년~2011년) 북한 특허데이터 주요 키워드 상관관계 지도(밀도지도)	74
그림 17	제2시구간(2012년~2018년) 북한 특허데이터 주요 키워드 상관관계 지도	74
그림 18	제2시구간(2012년~2018년) 북한 특허데이터 주요 키워드 상관관계 지도(밀도지도)	75

요 약 문

2018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이후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사회·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등 남북화해·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남북경협을 위한 전제임에도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한 남북 논의는 여전히 답보중이다. 이제는 남북경협 및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토대 마련을 위한 선결과제로써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 지식재산권 정책의 흐름, 북한의 주요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와 북한이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남북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분석, 북한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북한 산업재산권 제도를 개관하였다. 북한의 산업재산권법은 사회주의 국가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으며 법조문이 비교적 단순하고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법체계의 정합성,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 규범력 등의 면에서 남한의 산업재산권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산업재산권 법 제도가 기본적으로 권리의 확정과 권리자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측면이 강하고, 북한도 주요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차이는 교류·협력 및 조화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법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바, 북한 산업재산권 법령의 개정동향을 통해 북한 산업재산권 제도의 변화와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북한 특허정보가 북한의 기술혁신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써 북한의 기술혁신 구조 및 남북 협력 주제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 발명공보를 중심으로 북한 산업재산권(발명특허 중심) 기술 추이, 현황 및 산업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북한 발명공보 수록 내용에 따르면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발명 출원이 9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재산권으로서의 발명특허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산업재산권을 산업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출원된 분야는 측정, 사업,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2,551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24,478건), 특수기계 제조업(2,281건)이었고, 반면에 가장 적게 출원된 산업분야는 그 외 분류 안 된 운송장비 제조업(2건), 담배 제조업(4건),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9건), 항공기 제조업(9건) 등이었다. 북한의 발명공보 데이터의 키워드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기술개발 영역에서 특정 기술주제로의 집중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활동에 관하여는 연구주제의 중요성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연구활동이 단기적으로 수행됨을 추

정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위 사안을 토대로,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을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남한과 북한은 제8차 남북 고위급 회담의 부속합의서(1992.9.17.),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12.16.)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원칙에 합의하였으나, 관련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아서 현재 남북 산업재산권 관련 교류협력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방안으로 남북 당국 간 단계적 협의체 구성, 북한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북한에 대한 대금지급 방안 마련,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서’ 채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쟁점이 될 산업재산권 관련 부분에 대해 미리 통일조약 또는 통일합의서의 초안을 준비함으로써 통일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였다는 점, 중국과 대만이 상호 교류협력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책의 법제화를 시행함으로써 해당 정책의 실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합의서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의 교류협력 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재산권은 국제적인 성격이 강하여 규범과 집행의 통일화가 용이하다는 점, 사회경제적 질서와 정치체제로부터 비교적 중립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 대북 제재의 예외에 해당하여 대북제재와 관련된 다소 민감한 이슈와 상관없이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는 분야라는 특성이 있다. 이는 산업재산권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분야임을 의미한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야의 교류협력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남북경협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제라 할 수 있음에도, 현재 우리는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부족한 상황이며, 상표 또는 특허 관련 DB에 접근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남북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및 지원을 통해 북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북한을 산업재산권에 관한 논의의 장으로 유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남과 북의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관한 구체적·실질적 방안의 수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8년 남북정상회담’, ‘5·26 남북정상회담’,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등 총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싱가포르)’, ‘2차 북미정상회담(베트남 하노이)’ 등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재산권은 남북 간 경제협력의 중요 선결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남한과 북한은 제8차 남북 고위급회담의 부속합의서(1992.9.17.),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12.16.)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원칙에 합의하였으나, 관련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아서 실제로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의 북한 내 특허·상표 등록 건수는 전무하다.

표 1 남북 합의서상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구분	관련 규정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제2항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제9조 제5항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 제1항 “투자자산”이란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남북 모두 특허협력조약(PCT) 및 마드리드시스템 가입국으로서 국제출원을 통한 상호출원이 가능하나, 북한의 한국 출원인에 대한 출원 불인정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 국적의 개인 또는 기업의 북한 내 특허·상표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복수의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라 중국, 홍콩 등 제3국의 법인을 통하여 태평양, 피존, LG전자, 금강 등 143건의 상표가 출원되어, 이들 중 신세계, 초코파이, 신라면 등 35건의 상표가 등록된 것으로 알려지니 바 있는데, 이처럼 현재 한국 출원인은 제3국을 우회하여 특허·상표를 출원하는 것만이 북한 내에서 특허 또는 상표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아래

의 표1)와 같이 북한에 출원된 우리나라 마드리드 출원의 심사를 보면 58건의 출원 중 한 1건도 등록되지 못하였다.

표 2 북한에 출원된 우리나라 마드리드 출원의 심사 결과(2013.1. ~ 2018.4.)

구 분	거절결정	심사미착수	취하/포기	반려/무효	기타*	총계
건 수	35	1	14 (3/11)	5 (2/3)	3	58

* 국제등록번호 미부여 상태

최근 남북관계는 다소 교착상태에 놓여있으나, 남북경협 및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토대 마련을 위하여 북한 산업재산권 제도의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고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다만, 현재는 북한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최근 정보자료가 부족하여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이는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는 점, 조직적인 역량 투입 미비로 북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체계화된 지식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등에 기인한다. 특히 북한의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법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간헐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북한 특허정보를 통한 기술적, 산업적 분석의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허정보 분석은 북한의 산업상·기술상의 강약점 등에 관한 산업경쟁력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남북이 상생의 경제적 효과를 얻고 실행 가능성 높은 남북 기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도 및 현황을 파악하고, 남북 경협 시 산업 기술 협력 가능 항목에 대한 특허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의 지식기반 조성 및 남북 경협을 지원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산업재산권 전반을 개관한다. 먼저 북한 지식재산권 정책의 흐름과 북한의 주요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로써 2014년 개정 「발명법」, 2012년 개정 「상표법」, 2011년 개정 「공업도안법」과 북한이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남북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한다.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기

1) 백재현 의원실, 2018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10.10.

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현황을 통하여 북한 지식재산 활동을 검토한다. 다만 북한이 2016년 발간한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에는 일부의 법률만 수록되어 있고, 매년 개정된 법률이 반영되어 발간되지도 않으며, 하위 규정이나 세칙 등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 인하여 북한의 현행 산업재산권법과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는 북한 발명공보를 토대로 북한 산업재산권(발명특허 중심) 기술 추이, 현황 및 산업경쟁력을 분석하고,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제2장 북한 산업재산권 제도 개관²⁾

I. 북한의 지식재산권 정책

지식재산권은 근대적 소유권 개념의 확립과 함께 탄생하였으며, 재산권 행사의 사적 자치를 인정하는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산물이다.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들도 지식재산권 제도를 두고 있으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식재산권 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처럼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사회주의 법체계 속에서 지식재산권이 자유주의국가와 동일한 형태로 존재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지식재산권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작되었다 하여도 사회주의 체제 자체 내에서의 변형과 그 존재모습을 이해하는데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³⁾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들의 해체로 인한 정치적 동맹관계의 상실 및 극도의 경제침체 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책으로 1990년대 말부터 대외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북한의 지식재산권 정책도 ‘연구개발투자 성과에 대한 보호’와 ‘투자확대’라는 큰 축에 따라 변화해왔으며,⁴⁾ 이는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기술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투자 성과 보호를 위해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정비 하여왔는데,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에 따른 북한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변화는 다음의 표와 같다.⁵⁾

2) 본 장의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남북한 지식재산 법제도의 조화에 관한 연구」, 특허청·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9, 9-56면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 인용.

3) 강진철, “북한법연구의 현황과 과제-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하여”, 법과 사회이론 연구회, 1989, 193면.

4) 북한 지식재산권 정책의 변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지식재산학회, 「북한 지적권 현황 파악 및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사례 분석 연구」, 특허청, 2015, 16-25면 참조.

5) 다음의 표는 김혜정,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도 현황 및 제언”, 심층분석보고서, 제2019-14호,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9, 5면에서 인용(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추진 방안」, 통일부, 2004, 12면. ; 한국지식재산학회, 「북한 지적권 현황 파악 및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사례 분석 연구」, 특허청, 2015, 16-20면을 참고하여 요약·정리)

표 3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에 따른 북한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변화

구분	주요내용
해방이후 ~ 1950년대 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의 기반 정비기 • 6·25 전쟁으로 창작행위 장려 및 이익보호를 위한 법령 제정 불가
1950년대 후반 ~ 1980년대 초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의 발명을 장려, 북한실정에 맞는 독자적 기술개발 강조 •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제정(1967)
1980년대 중반 ~ 1990년 초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기술개발을 강조하는 한편 파리협약 등 국제적인 산업재산권 협약에 활발하게 가입 •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정(1986)
1990년대 중반 ~ 2000년대 초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도입기로, 외국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직접투자 유치 및 국제협력 강조 • 「발명법」 제정(1998)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제정(2001)
2000년대 중반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특구 확대 및 적극적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원시지명법」(2003), 「컴퓨터소프트웨어법」(2004)이 제정되고 「발명법」, 「공업도안법」, 「상표법」이 개정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북한의 개방정책에 변화에 따른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의 제·개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⁶⁾

표 4 북한 개방정책 변화에 따른 북한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변화

구분	주요내용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경제개방정책의 법적 토대 마련 후 외국인투자관계법 도입 • 「발명법」, 「공업도안법」, 「상표법」의 제정을 통해 전근대적이었던 법령들을 세계 변화 추세에 따라 정비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특구확대되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 • 「원시지명법」, 「컴퓨터소프트웨어법」 제정 • 「발명법」 등 산업재산권 관련법의 개정이 있었으나 개정 전 법과 큰 차이 없음
201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투자유치를 위하여 「발명법」 개정 •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이 북한에 특허권을 출원하는 경우 특허신청대리기관을 이용하는 내용,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 등이 추가

6) 다음의 표는 김혜정,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도 현황 및 제언”, 심층분석보고서, 제2019-14호,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9, 5면에서 인용(한국지식재산학회, 「북한 지재권 현황 파악 및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사례 분석 연구」, 특허청, 2015, 22-25면을 참고하여 요약·정리)

II.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1. 서설

남한의 경우 지식재산권을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구분하고,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 지식재산권을 지식소유권으로, 저작권을 저작소유권으로, 산업재산권을 공업소유권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남과 북한의 체계상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공업소유권에서 우리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대응되는 권리로 발명권, 상표권, 공업도안권이 있다. 각 권리별로 남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및 적용 법령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⁷⁾

표 5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 비교

대상 권리	사용 용어	북한 법령	남한 법령
발명	발명(북)	발명법	특허법
	특허(남, 북)		
고안	실용신안(남)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⁸⁾	실용신안법
	창의고안(북)		
디자인	디자인(남)	공업도안법	디자인보호법
	공업도안(북)		
상표	상표	상표법	상표법

북한 「민사법사전」에서는 공업소유권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지적창조물에 대한 소유권이며, 여기에는 발명권, 특허권, 발견권, 창의고안권, 공업도안권, 상표권, 원상지명권(특정한 생산물의 원산지를 독점할 권리)과 같은 것들이 속한다”⁹⁾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발간하는 법전에 모든 법률이 수록된 것도 아니고 하위 규정이나 세칙 등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공포하는 법률들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수밖에 없다.¹⁰⁾ 북한은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와 같이 대외경제와 관련된 법률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률들은 공개하지 않다가 2004년 6월 처음으로 총 112개의 법률이 수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을 발간한 바 있다.¹¹⁾ 2012년 7월

7) <표 1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 비교>는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한울아카데미, 2016, 223면.

8) 북한의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은 공개되지 않아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9)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평양), 1997, 58면.

10)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한울아카데미, 2016, 244면.

187개의 법률이 수록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제2권이 출판되고, 2016년 7월에는 사회주의헌법(2016. 6. 29. 개헌)¹²⁾과 2012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을 수록하여 제2권에 대한 증보판을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 지식재산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주의 헌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을 통해 공개된 2014년 개정 「발명법」, 2012년 개정 「상표법」, 2011년 개정 「공업도안법」을 기준으로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및 관련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검토한다.

표 6 북한법의 체계

북한의 규범체계(명칭)	제정기관(공포형식)
헌법	최고인민회의(법령)
부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	최고인민회의(법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규정 (법시행규정 또는 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결정) 내각(결정)
세칙 (법시행세칙 또는 규정시행세칙 또는 세칙)	내각 위원회, 성(지시) 도(직할시)인민회의(결정) 인민위원회(결정)

2. 사회주의 헌법

북한은 1948년 사회주의 헌법(이하, ‘북한 헌법’이라 함)을 제정하면서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제20조)라는 규정을 통해 저작권과 발명권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였다.

1972년 헌법 개정 시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창의고안자와 발명가들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제60조)라는 규정을 두어 창의고안자 및 발명가 개인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였다.

11)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한울아카데미, 2016, 222-224면.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이 출판된 이후인 2019년 4월 11일에 사회주의헌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북한의 개정 헌법은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확실하게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

1992년 헌법 개정에서는 “국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제74조)라고 하여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다.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은 과학과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제74조)라고 하여 최초로 특허권이 인정된 이래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헌법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행 북한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의 헌법적 근거는 북한 헌법 제74조의 “국민은 과학과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라는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3. 발명법

가. 개관

북한의 「발명법」은 남한의 특허법에 대응하는 법률로, 5개장 6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후 과학기술에 의거한 경제성장전략을 국정 우선지표로 내세우고 과학기술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의 추진과 함께 「과학기술법」을 개정하여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정책에 맞추어 1967년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¹³⁾ 이 규정은 1978년, 1986년 두 차례 개정 후, 1998년에 「발명법」과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으로 분리되었다. 1998년에 제정된 「발명법」은 1999년, 2011년, 2014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1998년 전까지만 해도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과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을 크게 이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년 「발명법」, 「상표법」, 「공업도안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2001년에는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법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¹⁴⁾ 다만, 1998년 이후 제정된 이들 법률로 인하여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등의 기존 법률이 폐지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1998년 제정된 「발명법」만으로는 법제 구성상으로 볼 때 남한의 특허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미비점을 보이고 있

13) 육소영·윤권순, 「북한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센터, 2003, 31면.

14) 육소영 외,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3, 7면.

으며, 이런 미비점을 다소 보완하기 위해 1986년 개정된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을 파기하지 않고 동시에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는 등 이원적 법률 구조체계를 가지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여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¹⁵⁾, “남한의 실용신안에 해당하는 북한의 창의고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거나 혹은 별도의 창의고안에 관한 개별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북한의 현행법 체계를 보면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은 발명법의 제정으로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창의고안에 관한 별도의 개별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견해¹⁶⁾가 존재한다.

북한 발명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발명보호에 관한 권리를 발명권과 특허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사법사전」에 따르면 발명권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새롭고 발전적이며 공업적으로 실현하여 보다 높은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부여되는 인격적 및 재산적 권리” 라고 정의된다.¹⁷⁾ 또한 발명한 자에 대해서는 “발명의 창조자로서 발명의 과학적 기술 내용과 그에 대한 우선권과 일정한 국가적 및 사회적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발명권은 발명가가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포기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발명권을 받은 발명기술의 리용권은 국가에 속하며, 기관·기업소·사회합동단체는 발명권으로 보호되는 발명을 승인받지 않고도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생산과 건설에 널리 도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고 설명하고 있다.¹⁸⁾

발명권과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 형태로 발명의 창조라는 데 대한 인정, 발명 내용과 발명의 우선권 및 발명에 대한 권리 보장 등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대체로 같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등록 보호를 청원하는 신청 수속 절차와 방법, 문건 형식, 그에 대한 심의절차와 기준도 거의 같다.¹⁹⁾ 그러나 발명권과 특허권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²⁰⁾

15) 박종배,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이해」, 북코리아, 2011, 147-148면.

16)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한울아카데미, 2016, 223면, 주1 참조.

17)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평양), 1997, 252면.

18)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평양), 1997, 252-253면.

19)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한울아카데미, 2016, 226면.

20) <표 3 북한 발명법상 발명권과 특허권의 차이점>은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한울아카데미, 2016, 226-227면 요약·정리(최정희, 「공업소유권과 공업소유권보호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 김일정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6권 제2호, 김일정종합대학출판사(평양), 2002.에서 재인용).

표 7 북한 발명법상 발명권과 특허권의 차이점

구분	발명권	특허권
권리 귀속 및 이용권	발명권은 발명자에 귀속하지만, 그 이용권은 국가에 귀속 ²¹⁾	발명에 대한 이용권을 특허소유자가 독점 ²²⁾
권리의 취소·포기·양도	발명권은 마음대로 취소, 포기, 양도 불가	특허권에 대한 포기, 권리양도,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권 허락이 모두 가능
상호변경(전환)	발명권은 특허권으로 변경 불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에서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발명권으로 전환 가능
권리존속기간	권리자의 생존기간 동안 무한대로 인정	15년의 존속기간 특허권자의 요구에 따라 5년 연장 가능
수수료	발명권 등록 및 그와 관련된 비용부담이 없고, 국가로부터 정치적·도덕적·물질적 특전 부여	특허권 신청·등록 시 각종 수수료를 부담하고, 존속기간 내에 상당한 연차료 부담

한편, 2014년 발명법은 발명권과 특허권으로 구분되었던 발명법상의 권리가 발명권, 특허권, 실용기술발명권, 실용기술특허권 총 4개로 세분화되었다는 점, 특허 신청양식에 외국어 시청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하여 외국인의 발명·특허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북한 주민이 다른 국가에 또는 외국인이 북한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허신청대리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미성년자도 발명과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특허권을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기관, 기업, 단체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발명이나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시설을 이용한 발명, 공동 창작물의 소유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해당기관(공동창작물은 합의여부에 따라 공동 창작자)에게 공동 소유권을 인정하였다는 점 등에 특징이 있다.

나. 발명법의 주요내용

1) 목적

북한 발명법은 특허권 등록의 신청과 심의,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발명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과학기술과 인민경제의 발전을

21) 국가는 등록된 발명은 발명자의 승인·합의·계약 등이 없어도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다른 나라에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2)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에는 특허권 소유자의 승인 없이 어느 개인이나 기관, 기업소는 물론이고 국가도 마음대로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북한 발명법 제1조).

2) 발명의 정의 및 원칙

북한 발명법은 발명을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안”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개정 전 2011년 북한 발명법 제2조가 발명을 “이미 알려진 기술에 비해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과학기술적 성과”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행 발명법은 발명을 보다 더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북한 발명법은 발명이 될 수 없는 대상, 발명권, 특허권을 받을 수 없는 발명, 발명권,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정리된 발명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 발견, 과학적 이론, ② 미학적 창조물, ③ 정신활동이나 유희, 경영활동을 위한 규칙과 방법, ④ 기술적 해결이 없는 컴퓨터프로그램, ⑤ 정보의 표시방법은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제18조). 또한 조선민족의 고상한 풍속과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거나 사회공동의 이익에 저해를 주는 대상, 식물이나 동물변종 혹은 동식물의 순수 생물학적인 사육 및 재배방법, 사람이나 동물의 수술방법, 치료방법, 사람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방법과 관련한 발명에 대하여는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북한 발명법은 발명·특허의 요건으로 신규성이 있을 것, 발명수준이 있을 것, 도입가능성을 있을 것을 요하고 있다. 신규성이 있다는 것은 “신청된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새롭다는 것”, 발명수준이 있다는 것은 “그 기술에 숙련된 자가 선행기술에 기초하여 발명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도입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발명을 공업, 농업, 수산업, 임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제20조). 발명내용이 국가가 인정하는 학술토론회나 전시회에 처음으로 발표 또는 전시되었거나 신청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 의하여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그 날로부터 6월내에 발명권이나 특허권등록신청을 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문건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인정한다(제22조). 한편, 발명수준이 낮아도 신규성과 도입가능성이 인정되는 발명은 실용기술발명권이나 실용기술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제21조).

북한 발명법은 제1장 “발명법의 기본”에서 발명권, 특허권 등록의 원칙(제3조), 발명권, 특허권 등록의 심의원칙(제4조),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원칙(제5조), 발명창조사업의 장려 원칙(제6조), 발명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제7조), 발명사업에서 국가의 안전 및 중요이익보장(제8조)을 명시하고 있다.

3) 출원 및 등록 절차

발명권과 특허권의 등록 절차는 신청, 초보심사, 실질심사를 통한 부결 또는 등록결정(부결 시 이의신청), 등록결정 시 공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을 발명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발명의 종류를 발명권, 특허권, 실용기술발명권, 실용기술특허권 중 하나로 특정하여야 한다(제9조).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때는 조선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발명권등록신청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발명권등록의 신청은 발명을 창조한 국민이 하여야하며(제11조), 직무상 임부수행 과정에서 창조하였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질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특허권등록신청을 한다(제12조). 그러나 직무와는 관계없이 노동시간 외에 자체의 물질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 또는 연로보장자, 노동할 나이에 이르지 않은 자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등록신청은 그 발명가가 하도록 한다(제13조). 공동으로 창조한 발명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것을 창조한 기관, 기업소, 단체나 국민들이 공동으로 발명권, 특허권등록을 신청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탁을 실행하는 과정에 창조한 발명에 대한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은 그것을 창조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국민이 한다(제14조). 특허권등록신청권리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권리를 양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도확인서를 첨부하여 특허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5조).

외국인이 그 외국인이 속한 국가 또는 다른 국가에 첫 특허권등록신청을 한 날로부터 12월내에 북한에 같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3월내에 첫 특허권등록신청 문건사본과 우선권을 주장하는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제23조).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으려는 신청자에게 신청의 취소 및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신청자는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기의 신청을 취소하거나 발명권을 실용기술발명권 또는 그 반대로, 특허권을 실용기술특허권 또는 그 반대로, 특허권을 발명권으로, 실용기술특허권을 실용기술발명권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25조).

북한의 신청자가 다른 국가에 특허권등록을 신청하거나 다른 국가의 신청자가 북한에 특허권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발명대리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북한의 신청자는 사전에 다른 국가에 신청하고자 하는 특허권등록신청 문건을 발명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26조). 또한 특허권등록신청자는 신청, 심의, 등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발명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제27조).

발명권, 특허권등록 심의는 형식심의와 본질심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제28조).

형식심의는 신청문건이 정해진 형식상의 요구를 갖추었는지를 심의하는 것으로, 발명행정기관은 형식심의 과정에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 문건이 형식상 요구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통지한 날로부터 신청자가 3개월 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신청문건을 수정하지 않으면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기각한다(제30조). 또한 신청자가 3개월 내에 신청문건을 수정하였거나 의견을 제기하면 그것을 심의하여 정해진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해당문건을 공개하고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기각한다(제30조). 공개된 신청문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로써, 형식심의 후 공개한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신청문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그이 대한 본질심의가 끝나기 전에 발명행정기관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제31조).

본질심의는 신청된 발명이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는지를 심의하는 것으로, 본질심의에서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발명권 또는 특허권을 부여할지를 결정하고 등록하며, 그 내용을 공개한다(제32조). 만약 본질심의과정에서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발명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심의의견통지서를 보내고 통지서를 보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답하지 않으면 그 결정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제33조). 신청자는 본질심의 중이라도 자기의 발명권, 특허권등록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음의 설명서와 주장범위에서 공개한 내용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제35조). 발명행정기관은 본질심의에서 신청된 발명에 대한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을 부결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부결이유를 밝힌 통지서를 보내야 하고(제36조),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의 부결결정에 의견이 있는 신청자는 발명행정기관에 부결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제37조).

한편, 발명권 또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결정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무효주장이 가능하다.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에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나 국민은 발명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발명행정기관은 이를 제때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기자와 해당 발명권 또는 특허권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38조). 발명권 및 특허권등록이 무효로 결정된 때에는 그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권리의 보호 및 침해 구제

발명권 또는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신청자의 발명주장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설명서와 그림은 주장범위를 해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제39조). 발명권을 받은 기술의 이용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지만(제40조), 특허권을 받은 기술의 이용은 그 소유자가 하며,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특허권을 받은 기술을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41조).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특허권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15년이나 특허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용기술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실용기술특허권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10년이다(제42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받은 해부터 발명행정기관에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43조), 발명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는다. 또한 직무상 임무수행과정에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질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창조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그 발명가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44조).

특허권의 이전도 가능한데, 특허권자는 수요자와의 계약을 통해 특허기술에 대한 이용을 허가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계약은 발명행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효력을 가진다(제45조). 또한 특허기술의 이용 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그 기술의 이용을 허가할 수 없다(제45조).

특허권 행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자기의 특허기술을 이용하도록 허가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제46조), 공동으로 특허권을 받은 기술은 그 특허권의 공동소유자들이 이용하며, 공동으로 받은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특허기술의 이용 허가를 할 경우 합의하여야 한다(제47조).

한편,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특허기술을 이용하지 않거나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발명행정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그 특허기술의 이용을 강제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권자에게 그에 대하여 통지하며 공개하여야 한다(제48조). 다만 강제이용허가가 있는 경우, 그 이용 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허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명행정기관이 요금을 정할 수 있다(제49조).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소유자가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특허권보호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명행정기관이 특허권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특허권을 이전 받을 권한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나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는 보호기관에 관계없이 소멸한다(제51조).

특허권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행위의 중지요구(제55조), 손해보상(제56조)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적 책임(제63조) 및 형사적 책임(제63조)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 발명법은 손해배상에 대해서 “특허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특허권을 침해한 당사자가 손해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자는 발명행정기관에 제기하여 해결받을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북한은 손해보상에 대한 별도의 법률인 「손해보상법」을 통하여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 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손해보상액의 확정과 보상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37조는 “발명, 특허권을 침해하여 재산상손

실을 준 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다른 사람의 과학기술적 발명자료를 도용하여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였거나 제3자에게 넘겨주어 발명, 특허권을 받게 하였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에도 그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발명권지도기관이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적 책임에 관해서도 “이 법 제63조²³⁾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라고만 규정할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북한 형법 제117조에서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을 침해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상표법

가. 개관

북한은 1968년 1월 1일부터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상표와 공업도안에 관한 제도를 1998년까지 단일법으로 규율해 왔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상표법과 공업도안법으로 이를 분리하여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상표법인 독자적인 법률로서 제정된 것은 1998년으로 볼 수 있으며, 1999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2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5장 50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제1장 ‘상표법의 기본’, 제2장 ‘상표등록의 신청’, 제3장 ‘상표등록의 심의’, 제4장 ‘상표권의 보호’, 제5장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총 12장 237조로 구성된 남한의 상표법에 비해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다 보니 권리 보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남한 상표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 규정들도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제도 운영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3) 북한 발명법 제63조 (행정적 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발명행정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발명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특허권등록을 직접 신청하였을 경우
2. 발명행정기관이 공개하지 않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내용을 공개하였을 경우
3. 형식심의에서 통과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4. 본질심의과정에 신청자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명권, 특허권등록을 부결하였을 경우
5.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는 발명에 대하여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주었을 경우
6. 발명권 특허권등록과 관련한 재심의요구를 접수하고 제때에 심의하지 않았을 경우
7. 발명권 및 특허권의무효요구를 접수하고 심의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
8. 발명권,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9. 특허기술을 리용하고 발명가에게 해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나. 상표법의 주요내용

1) 목적

북한 상표법은 상표등록의 신청과 심의, 상표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북한 상표법 제1조).

2) 상표의 정의 및 원칙

북한은 상표를 “서로 다른 생산자 또는 봉사자의 같은 제금이나 봉사를 구별하기 위하여 글자, 그림, 수자, 기호, 색깔, 3차원적인 형태 또는 그것들의 결합체로 밝히는 표식”으로 정의하면서 제품상표, 봉사상표, 집단상표, 증명상표, 담보상표 등이 상표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제2조).

북한 상표법은 제1장 “상표법의 기본”에서 상표등록의 원칙(제3조), 상표등록의 심의 원칙(제4조), 상표권의 보호원칙(제5조), 상표사업의 현대화, 과학화 원칙(제6조), 상표분야의 교류와 협조(제7조)를 명시하고 있다.

3) 출원 및 등록 절차

북한 상표법은 상표등록의 신청은 상표사업의 첫 공정이라고 규정하면서(제3조)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상표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상표등록 신청 문건을 만들어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하는데(제8조), 상표등록 신청문건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상품 및 봉사분류 같은 것을 정확히 밝히며 상표견본, 영업허가와 관련한 공증 문건을 첨부한다(제9조).

외국인이 북한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외국인은 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선말로 된 상표등록 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²⁴⁾에 내야 하는 반면(제11조),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외국에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기관에 등록된 상표를 해당 국제기구 또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등록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 상표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2조).

24) 현행 상표법에는 상표등록기관을 명시한 규정이 없으나, 과거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1991) 당시에는 상표 및 공업도안처에서 이를 담당하였다.

상표등록 신청문건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기관은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3개월 안에 결함을 고치게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안에 결함을 고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2개월 간 연장하여 줄 수 있다(제14조). 상표등록의 신청날짜는 상표등록기관이 상표등록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 하고, 결함이 있는 상표등록 신청문건을 고쳤을 경우에도 상표등록의 신청날짜는 상표등록기관이 상표등록 신청문건을 처음 접수한 날로 한다(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람회, 전시회에 상표를 출품하였을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신청에서 우선권을 가지는데, 우선권을 요구하는 문건은 전람회, 전시회에 상표가 출품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상표등록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제16조). 이러한 상표등록신청의 우선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데,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서 받은 상표의 등록신청에 대한 우선권은 그것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북한 상표등록기관에 해당 문건을 낼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된다(제17조).

상표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보호기간이 지난 상표의 등록신청은 그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보호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제18조).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심의하여야 하는데(제19조), 상표등록이 결정된 상표는 국가상표등록부에 등록하며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는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 주고, 등록된 상표는 상표공보를 통해 공개한다(제23조).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그 등록이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상표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데, 상표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기하였거나 상표를 등록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제24조).

상표등록이 부결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상표등록의 부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재심의를 위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상표등록기관은 재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재심의결정은 그것이 공개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다른 의견이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 확정된다(제25조). 상표등록의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재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국가상표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상표심의위원회는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상표등록기관과 의견을 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26조).

한편 북한 상표법은 상표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표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상표를 등록할 수 없는 사유로는, ①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② 국호나 그 약자로 만들었거나 국장, 국기, 훈장, 메달과 같거나 유사한 모양으로 만든 표식, ③ 북한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양

속에 맞지 않는 표식, ④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허위적 내용을 담은 표식, ⑤ 상품의 이름, 조성, 특성 같은 것만의 표기, ⑥ 검사표식이나 단순한 숫자, 기하학적 표식, ⑦ 전람회, 전시회에 출품되었던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⑧ 북한이 가입한 국제기구의 표식으로 되었거나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표식, ⑨ 널리 알려진 상표, 유명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⑩ 우리나라를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을 신청한 표식 또는 표기를 규정하고 있다(제21조).

4) 권리의 보호 및 침해 구제

상표권은 상표등록기관에 상표를 등록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소유하며(제27조), 상표권의 소유자는 ① 등록된 상표의 사용권, ② 등록된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 및 사용허가권, ③ 상표권침해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④ 등록된 상표의 취소권을 갖는다(제29조). 저작권법이나 발명법과 달리 명시적으로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눈에 띈다.

상표권의 양도는 상표권 양도 합의 후 상표권 양도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상표권양도문건을 만들어 상표등록기관에 내야하고, 상표등록기관에 양도등록이 된 날로부터 그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제30조). 상표의 사용허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상표허가계약을 맺은 후 정해진 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1조). 사용허가를 받은 상표에 따르는 상품, 봉사의 질에 대하여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책임지는데, 상표권자는 사용허가를 한 상표에 따르는 상품, 봉사의 질에 대하여 통제를 할 수 있다(제32조).

다만, 해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 사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등록된 상표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제33조).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상표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상표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표권의 보호기간을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제34조). 상표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권 보호기간 연장신청 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권보호기간 연장신청 문건은 상표권의 보호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제36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표권 보호기간 연장신청 문건을 그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까지의 사이에 제출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이름, 주소 같은 것이 달라졌을 경우 상표등록 변경신청 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제38조),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 변경내용을 국가상표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제37조).

상표권자는 상표등록 취소신청 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상표권을 취소시킬 수 있고(제38조), 상표등록이 취소되거나 상표를 등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없어진다(제39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비법적으로 상표를 만들거나 출판, 인쇄, 매매하거나 허위 및 위조 상표를 붙인 상품, 상표가 없는 상품을 판매, 수출입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제44조),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상표등록의 신청, 심의 질서를 지키고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를 하여야 한다(제46조). 상표권을 비법적으로 양도, 사용허가 하였거나 등록된 상표를 변경시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생산 또는 봉사를 중지시키거나 상표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제48조). 상표권자는 상표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제45조).

상표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고, 위법행위에 이용된 상표, 상품 같은 것은 몰수되고 영업활동도 중단될 수 있다(제47조). 이처럼 북한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 외에도 몰수 및 영업활동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업도안법이나 원산지명법에서 손해배상 외에 위법한 행위를 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몰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두텁게 상표권자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북한 손해보상법 제38에 따르면 “상표, 공업도안, 기업이름 같은 것과 관련한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준 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이 경우 상표나 공업도안, 기업이름 같은 것은 해당 기관에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표법을 위반하여 상표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꾼과 개별적 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제49조), 이에 관해서는 북한 행정처벌법과 형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북한 행정처벌법 제119조는 “상표리용질서를 어긴 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 형법 제117조는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을 침해한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라고 하고 있다.

5. 공업도안법

가. 개관

공업도안법은 1998년 개정²⁵⁾을 통하여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에서 분리되었다. 1968년 제정된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은 공업도안, 상표, 본래명칭(우리의 지리적 표시 내지 원산지 표시에 해당)이 함께 규정되어 있었다. 독자적 법률로 제정된 1998년 이후,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2005년 8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35호로 수정보충, 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5장 50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제1장 ‘공업도안법의 기본’, 제2장 공업도안등록의 신청, 제3장 ‘공업도안등록의 심의’, 제4장 ‘공업도안권의 보호’, 제5장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나. 공업도안법의 주요내용

1) 목적

북한 상표법은 공업도안법은 공업도안등록의 신청과 심의, 공업도안권의 보호에 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제품의 질을 높이고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북한 공업도안법 제1조).

2) 공업도안의 정의 및 원칙

북한은 공업도안을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려는 제품의 형스태와 색깔, 장식 같은 것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새롭게 묘사한 것”으로 정의하면서 기계설비와 운수수단, 방직제품, 생활 및 문화용품, 의약품, 가구류, 건구류, 포장용기 같은 제품도안과 장식도안이 공업도안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제2조).

북한 공업도안법은 제1장 “공업도안법의 기본”에서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원칙(제3조), 공업도안등록의 심의원칙(제4조), 공업도안등록의 보호원칙(제5조), 공업도안등록의 갱신원칙(제6조), 공업도안 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제7조)를 명시하고 있다.

25) 1998년 6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7호로 채택.

3) 출원 및 등록 절차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안 등록신청 문건을 만들어 공업도안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공업도안 등록신청을 공동으로 하여 할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된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제9조). 공업도안 등록신청 문건은 공업도안별로 만들어야 하는데, 구조작용상 서로 결합된 제품에 대한 공업도안은 하나의 신청문건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공업도안 등록신청 문건에는 도안명, 도안의 분류, 신청자 및 장작가의 이름 같은 것을 기재하며 도안과 도안 설명서, 평정서를 첨부한다(제10조). 공업도안 등록신청 문건은 공업도안 등록기관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업도안 등록신청 문건을 텔렉스, 팩스 같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내는 것이 허용된다(제11조).

외국인이 북한에서 공업도안을 등록하려 할 경우 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선말로 된 공업도안 등록신청 문건을 공업도안 등록기관에 내야 한다(제12조). 공업도안 등록기관은 공업도안 등록신청 문건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3개월 안에 고치게 하여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안에 결함을 고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2개월까지 연장하여 줄 수 있다(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람회, 전시회에 공업도안이나 그 시제품을 내놓았을 경우 해당 공업도안 등록의 신청에서 우선권을 가지는데, 이 경우 우선권을 증명하는 문건을 전람회, 전시회에 공업도안이나 그 시제품을 내놓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업도안 등록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제16조). 이러한 공업도안 등록신청의 우선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데,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서 받은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에 대한 우선권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북한 공업도안 등록기관에 해당 문건을 낼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된다(제17조).

한편,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외국에 공업도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업도안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고 공업도안 등록신청 문건을 해당 국제기구 또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제18조).

공업도안 등록기관은 공업도안 등록신청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심의하여야 한다(제19조). 북한 공업도안법 공업도안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업도안 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데, 공업도안을 등록할 수 없는 사유로는, ① 이미 등록된 공업도안과 같거나 유사한 도안, ② 이미 공개되어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도안, ③ 북한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도안, ④ 설비 및 기술공정 도면이나 미술작품, 건축물 및 기념비 같은 것의 도안, ⑤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도안, ⑥ 경제적 효과성과 실용예술성, 생산 도입 가능성이 없는 도안을 규정하고 있다(제21조).

공업도안 등록기관은 공업도안 등록신청 문건을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심의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2조). 등록이 결정된 공업도안은 국가공업도안 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공업도안 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며, 등록된 공업도안은 공업도안 공보를 통하여 공개한다(제23조). 등록된 공업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공업도안 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데, 공업도안 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24조).

공업도안 등록이 부결된 경우에는, 공업도안 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심의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공업도안 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25조). 공업도안 등록의 재심의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국가공업도안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제26조).

4) 권리의 보호 및 침해 구제

공업도안권은 공업도안을 등록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소유한다. 공동명의로 등록받은 공업도안권은 공동으로 소유하며(제28조), 공업도안권 소유자는 등록된 공업도안의 사용권, 등록된 공업도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 및 사용허가권, 등록된 공업도안의 취소권을 가진다(제29조). 공업도안권 양도 시, 공업도안권을 양도하거나 양도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양도신청 문건을 공업도안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양도는 양도등록을 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제30조). 또한 공업도안의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도 허가 문건을 공업도안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1조). 그러나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공업도안권을 양도하거나 등록된 공업도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으며(제33조),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외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공업도안권을 양도하거나 등록된 공업도안의 사용을 허가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도안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4조).

공업도안권의 보호기간은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5년이나,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에 따라 공업도안권의 보호기간을 5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업도안권 보호기간 연장신청 문건을 공업도안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제35조).

공업도안권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공업도안등록의 취소가 가능하며(제37조), 공업도안의 취소, 보호기관의 만료, 공업도안 등록 후 2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도안권

의 효력이 상실된다(제39조).

공업도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보상과 몰수(제47조), 공업도안등록의 사용중지 및 등록취소(제4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제49조)을 부담한다. 공업도안법에서는 민·형사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북한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손해보상법 및 형법에서 “상표, 공업도안, 기업이름 같은 것과 관련한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준 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이 경우 상표나 공업도안, 기업이름 같은 것은 해당기관에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북한 손해보상법 제38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을 침해한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북한 형법 제117조).” 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국제조약

2019년 9월 기준, 북한은 특허협력조약(PCT)을 비롯한 17개의 지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서명 또는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총 20개의 지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서명 또는 가입하였는데, 남북이 동시에 서명 또는 가입한 지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은 11개로 파악된다.

표 8 북한이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조약명칭	서명	비준/가입/승인	발효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2012.6.26.	비준: 2016.2.19.	
문학·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베른협약)		가입: 2003.1.28.	2003.4.28.
특허 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부다페스트조약)		가입: 2001.11.21.	2002.2.21.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헤이그협정)		가입: 1992.4.15.	1992.5.27.
원산지명칭의 보호와 국제 등록에 관한 리스본협정(리스본협정)		가입: 2004.10.4.	2005.1.4.
산업디자인의 국제 분류 확립 로카르노협정 (로카르노협정)		가입: 1997.3.6.	1997.6.6.

조약명칭	서명	비준/가입/승인	발효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마드리드협정)		가입: 1980.3.7.	1980.6.10.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의정서 (마드리드의정서)	1989.6.28.	승인: 1996.7.3.	1996.10.3.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마라케시조약)	2013.6.28.	비준: 2016.2.19.	2016.9.30.
올림픽 심벌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	1983.6.28.		
상표 등록상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니스협정)		가입: 1997.3.6.	1997.6.6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파리협약)		가입: 1980.3.7.	1980.6.10.
특허협력조약 (PCT)		가입: 1980.4.8.	1980.7.8.
특허법조약(PLT)	2000.6.2.	비준: 2018.5.22.	2018.8.22.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싱가포르 조약)	2006.3.28.	비준: 2016.6.13.	2016.9.13.
국제 특허 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협정 (IPC협정)		가입: 2001.11.21.	2002.11.21.
세계지적재산권기구설립협정 (WIPO설립협약)		가입: 1974.5.17.	1974.8.17.

표 9 남한이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조약명칭	서명	비준/가입	발효
문학·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베른협약)		가입: 1996.5.21.	1996.8.21.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전송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브뤼셀협약)		가입: 2011.12.19.	2012.3.19.
특허 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부다페스트조약)		가입: 1987.12.28.	1988.3.28.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헤이그협정)		가입: 2014.3.31.	2014.7.1.

조약명칭	서명	비준/가입	발효
산업디자인의 국제 분류 확립 로카르노협정 (로카르노협정)		가입: 2011.1.17.	2011.4.17.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의정서 (마드리드의정서)		가입: 2003.1.10.	2003.4.10.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마라케시조약)	2014.6.26.	비준: 2015.10.8.	2016.9.30.
상표 등록상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니스협정)		가입: 1998.10.8.	1999.1.8.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파리협약)		가입: 1980.2.1.	1980.5.4.
특허협력조약 (PCT)		가입: 1984.5.10.	1984.8.10.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음반협약)		가입: 1987.7.1.	1987.10.10.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로마협약)		가입: 2008.12.18.	2009.3.18.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싱가포르 조약)		가입: 2016.4.1.	2016.7.1.
국제 특허 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협정 (IPC협정)		가입: 1998.10.8.	1999.10.8.
상표법조약(TLT)		가입: 2002.11.25.	2003.2.25.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UPOV 협약)		가입: 2001.12.7.	2002.1.7.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 분류 확립에 관한 비엔나협정(비엔나협정)		가입: 2011.1.17.	2011.4.17.
세계지적재산권기구설립협정 (WIPO설립협약)		가입: 1978.12.1.	1979.3.1.
WIPO 저작권조약(WCT)		가입: 2004.3.24.	2004.6.24.
WIPO 실연·음반조약(WPPT)		가입: 2008.12.18.	2009.3.18.

표 10 남북이 동시에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구분	조약명칭	남한 발효일	북한 발효일
지식재산권	세계지적재산권기구설립협정 (WIPO설립협약)	1979. 3. 1.	1974. 8. 17.
산업재산권 일반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파리협약)	1980. 5. 4.	1980. 6. 10.
특허	국제 특허 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협정 (IPC협정)	1988. 10. 8.	2002. 11. 21.
	특허협력조약 (PCT)	1984. 8. 10.	1980. 7. 8.
	특허 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부다페스트조약)	1988. 3. 28.	2002. 2. 21.
상표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의정서 (마드리드의정서)	2003. 4. 10.	1996. 10. 3.
	상표 등록상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니스협정)	1999. 1. 8.	1997. 6. 6.
디자인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헤이그협정)	2014. 7. 1.	1992. 5. 27.
	산업디자인의 국제 분류 확립 로카르노협정 (로카르노협정)	2011. 4. 17.	1997. 6. 6.
저작권	문학·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베른협약)	1996. 8. 21.	2003. 4. 28.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마라케시조약)	2016. 9. 30.	2016. 9. 30.

위의 표를 살펴보면 특허협력조약 (PCT),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의정서 (마드리드의정서), 상표 등록상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니스협정),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헤이그협정), 산업디자인의 국제 분류 확립 로카르노협정 (로카르노협정) 등 산업재산권 관련 조약이 남한보다 더 빨리 발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조약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과학 기술발전과 발명사업의 강화에 우선을 두고 있는 북한의 정책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활동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다만, 이러한 북한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 조치는 형식적으로

국제기구 및 조약에 대한 준수의 표명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이러한 국제규범과 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자세는 잘 파악되지 않고 있다.²⁷⁾ 이러한 점 때문에 북한의 적극적 국제조약가입을 국제조약준수에 대한 의지표명 이외에 실질적으로 국제적 규범과 기준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대부분의 국제조약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적극적 국제조약가입은 국제교류확대를 위한 형식적 행위로 평가되기도 한다.²⁸⁾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협정)은 국제 분쟁을 WTO의 강제 관할에 둬으로써 각국의 조약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등 이제까지 체결된 어떤 지식재산권 조약보다도 망라적이며 실효적인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나,²⁹⁾ 북한은 TRIPS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III. 남북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비교 분석

1. 남한 특허법과 북한 발명법

가. 개관

북한의 발명법에 대응하는 남한의 법률은 특허법이다. 남한에서 특허를 규율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은 1908년 「발명·디자인·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한일조약」에 의해 제정·공포된 「특허령」이다. 「특허령」은 1910년 한일병합으로 폐지되었으며 해방될 때까지 일본 특허법의 적용을 받았다. 광복 후 군정법령 제91호로 특허법을 제정한 이래 1961년 현행 특허법의 모태가 된 특허법이 법률 제 950호로 제정되었다.

남한의 현행 특허법(법률 제16208호)은 2019년 1월 8일 개정되어 2019년 7월 9일자로 시행되었으며, 총 12장 23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특허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 자격 등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요건, 선출원, 권리의 이전, 특허출원, 출원 시의 보정, 분할 또는 변경출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심사’에서는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관, 심사청구절차, 거절결정과 거절이

26) 박정원, “북한의 발명법에 관한 분석”, 아시아법제연구, 창간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135-136면.

27) 박정원, “북한의 발명법에 관한 분석”, 아시아법제연구, 창간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136면.

28) 육소영 외,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3, 83면.

29) 최경수, 「국제지식재산권법(개정판)」, 한울, 2017, 413면.

유통지, 출원공개, 특허결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에서는 특허료, 수수료 등과 관련되어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 ‘특허권’에서는 특허권의 설정등록, 존속기간, 존속기간 연장, 특허권의 효력,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질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에서는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침해행위, 손해액 추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 ‘심판’에서는 특허심판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공동심판, 심판관, 심판관 제척·기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8장 ‘재심’에서는 재심의 청구, 청구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9장 ‘소송’에서는 심결에 대한 소, 피고적격, 소송비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에서는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출원절차와 출원일의 인정, 대표자 지정, 수수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보충적인 규정이나 벌칙과 관련된 규정들은 제11장 ‘보칙’과 제12장 ‘벌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북한 발명법은 5장(제1장 발명의 기본, 제2장 발명등록의 신청, 제3장 발명의 심의등록, 제4장 발명권·특허권의 보호, 제5장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4개 조문으로 비교적 단순하고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어, 법의 명확성 및 구체성에서 남한의 특허법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 남한 특허법과 북한 발명법의 주요내용 분석

남한과 북한의 특허 관련 법제를 비교하면 선출원주의, 등록공고제도, 출원보정제도, 이의신청제도 및 거절불복 제도, 등록료 납부 유지의무, 공동출원, 국가에 의한 수용 및 강제실시권 제도 등이 유사 제도로 파악된다. 또한 남북 모두 출원과정 상의 보정을 인정하고 있고, 특허권 소멸, 권리침해에 대한 법제구제 수단으로 민·형사적 책임, 특허권의 효력 범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 규정의 상세한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남북의 특허법제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남한의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 발명법은 독점배타적 권리인 특허권과 실시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발명권으로 이원화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⁰⁾ 북한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발명권을 위주로 하면서 특허권도 보호하고 있다”³¹⁾라고 하면서 발명권을 보다 더 강조하여 왔다. 구소련, 동독,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면서 특허권만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특허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발명권이라는

30) 북한 발명법상의 발명권과 특허권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II.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중 ‘발명법’의 장에서 논하였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31) 최정희, 「공업소유권과 공업소유권보호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 김일정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6권 제2호, 김일정종합대학출판사(평양), 2002, 63면.

권리를 중심에 둬으로써 자본주의 국가의 특허제도시스템과는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것이다.³²⁾

특허의 요건 면에서 보면, 남한 특허법은 특허요건으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불특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발명법은 신규성, 발명수준, 도입가능성을 특허요건으로 규정하면서 “풍속 및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거나 사회공동의 이익에 해를 주는 대상, 식물이나 동물변종 혹은 동식물의 순수 생물학적인 사육 및 재배 방법, 사람이나 동물의 수술방법, 치료방법, 사람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방법과 관련한 발명”을 불특허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 존속기간의 경우, 남한 특허법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하면서 허락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5년에 한하여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 발명법에서는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특허권 등록신청날자로부터 15년”으로 하되, “특허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20년 간 특허권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하였다. 발명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발명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발명자의 생존기간 동안 무한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권리침해 시 특허법상에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형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죄, 비닐누설 죄,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몰수,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민사적 구제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손해배상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으며, 형법을 통해 특허권 침해죄 등을 규율하고 있다.

그 외에도 남한의 특허법에는 북한 발명법에 없는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특허관리인 제도,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출원,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 변경 및 분할 출원, 통상실시권 및 전용실시권, 특허취소신청, 침해로 보는 행위, 손해액 추정, 심판제도, PCT에 따른 국제출원 등이 있다.

32) 육소영 외,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3, 44면.

표 11 남북 특허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비교

	(북한) 발명법 주체103(2014)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호로 수정보충	(남한) 특허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8호, 2019. 1. 8., 일부개정]
목적	발명등록의 신청과 발명의 심의등록,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과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
보호대상	발명(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안) ※ ‘발견, 과학적 이론 수학적 방법’, ‘미학적 창조물’, ‘정신활동이나 유희, 경영활동을 위한 규칙과 방법’, ‘기술적 해결이 없는 컴퓨터프로그램’, ‘정보의 표시방법’은 발명이 될 수 없는 대상으로 명시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불특허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민족의 고상한 풍속과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거나 사회공동의 이익에 저해를 주는 대상, 식물이나 동물변종 혹은 동식물의 순수 생물학적인 사육 및 재배방법, 사람이나 동물의 수술방법, 치료방법, 사람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방법과 관련한 발명 - 원자핵변환의 방법으로 얻어진 물질에 대한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특허요건	신규성, 발명수준, 도입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권자 및 공동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명을 창조한 자가 발명권등록 신청 - 직무상 임무수행 과정에 창조하였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질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창조한 발명은 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 가능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유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발명법</p> <p style="text-align: center;">주체103(2014)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호로 수정보충</p>	<p style="text-align: center;">(남한) 특허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8호, 2019. 1. 8.,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공동으로 창조한 발명에 대한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은 따로 합의된 것이 없는 한 그것을 창조한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들이 공동으로 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탁을 실행하는 과정에 창조한 발명에 대한 발명권, 특허권등록은 그것을 창조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신청 - 특허권등록신청권리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양도 가능 	<p>(이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
<p style="text-align: center;">우선권</p>	<p>외국 신청자가 자국 또는 외국에 첫 특허권등록신청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북한에 같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경우,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며,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 불가 -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 주장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하나의 특허 출원 범위</p>	<p>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은 개개의 발명에 대하여 따로따로 하여야 하지만, 둘 또는 그 이상의 발명이 총체적으로 하나의 발명 개념을 이루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 문건으로 제출 가능</p>	<p>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해야하지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출원의 변경 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는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심의 종료 전 신청 취소 가능 	<p>분할출원, 변경출원(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호 간 변경)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발명법</p> <p style="text-align: center;">주체103(2014)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호로 수정보충</p>	<p style="text-align: center;">(남한) 특허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8호, 2019. 1. 8., 일부개정]</p>
취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명권을 실용기술발명권 또는 그 반대로, 특허권을 실용기술특허권 또는 그 반대로, 특허권을 발명권으로, 실용기술특허권을 실용기술발명권으로 변경 신청 가능 	
심사방식	형식심의를 통과하면 별도의 심사청구 없이 본질심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
출원 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등록신청 문건이 정해진 형식상요구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 통지한 날로부터 신청자가 3개월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수정 또는 기타 의견을 제기하지 않으면 등록신청 취소한 것으로 보아 기각 - 신청자는 본질심의도중에도 수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결정 등본 송달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가능
출원공개	형식심의에서 통과되면 신청문건의 접수날자를 신청날자로 하고 그 신청문건을 공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
특허(거절) 결정 및 이의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심의 후 공개한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신청문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에 대한 본질심의가 끝나기 전에 발명행정기관에 의견 제기 가능 - 본질심의에서 통과되면 발명권 또는 특허권을 등록하고 공개하며, 발명권이나 특허권소유자에게 해당한 증서 발급 - 본질심의에서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심의의견통지서 발송하고, 신청자가 3개월 내 정당한 이유 없이 회답을 보내오지 않으면 그 의견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거절결정을 하고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 가능 -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함

	(북한) 발명법 주체103(2014)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호로 수정보충	(남한) 특허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8호, 2019. 1. 8., 일부개정]
	-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을 부결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부결 이유를 밝힌 통지서 발송	
재심사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의 부결결정에 의견이 있는 신청자는 발명행정기관에 부결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의를 요구 가능	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 청구 가능
특허취소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에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나 국민은 발명행정기관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발명권 및 특허권등록을 무효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	-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 가능 - 특허취소신청절차 중 특허권자는 특허의 정정청구 가능 - 특허취소신청서에 대한 보정 명령 가능하며, 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은 각하
특허권 존속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특허권등록신청날자로부터 15년(특허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기간을 5년간 연장 가능)	-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인정
특허권의 이전	특허권자는 이용을 허가하거나 권리 양도 가능(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서로 합의하여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용 허가 가능)	특허권 이전 가능(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의 동의 필요)
강제실시 또는 수용	- 3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특허기술을 이용하지 않거나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특허기술이용의 강제허가 가능(단 특허권자에게 요금 지불)	-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 수용 가능(권리자에게 보상금 지급) -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非商業的)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음

	(북한) 발명법 주체103(2014)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호로 수정보충	(남한) 특허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8호, 2019. 1. 8., 일부개정]
		-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특허권 소멸사유	특허권 포기, 특허권보호요금 미납, 발 명행정기관의 특허권 무효 결정, 특허 권 상속자 부존재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특허료 미납, 상속인의 부존재, 특허취소결정, 무효 심결 확정, 특허권 포기
법적구제 수단	손해보상, 행정적 책임 및 형사적 책임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침해죄, 비밀 누설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몰수, 과태 료

2. 남한 상표법과 북한 상표법

가. 개관

남한의 상표법은 1949년 11월 28일 제정되었으며, 현행 상표법(법률 제16205호)은 2019년 1월 8일 개정되어 2019년 7월 9일자로 시행되었다. 총 12장 237조로 구성된 상표법은 제1장 ‘총칙’에서 상표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 자격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에서는 상표등록의 요건 및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선출원, 1상표 1출원, 출원 시의 보정, 분할 또는 변경출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심사’에서는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관, 심사청구절차, 거절결정과 거절이유통지, 출원공개, 상표등록결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에서는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 등과 관련되어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 ‘상표권’에서는 상표권의 설정등록, 존속기간, 존속기간 연장, 상표권의 효력, 상표등록 등의 보호범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질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에서는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침해행위, 손해액 추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 ‘심판’에서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심판관 제척·기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8장 ‘재심 및 소송’에서는 재심의 청구, 청구기간, 심결 등에 대한 소, 피고적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에서는 국제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등록출원의 특

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0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에서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보충적인 규정이나 벌칙과 관련된 규정들은 제11장 ‘보칙’ 과 제12장 ‘벌칙’ 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북한 상표법은 5장(제1장 상표법의 기본, 제2장 상표등록의 신청, 제3장 상표의 심의등록, 제4장 상표권의 보호, 제5장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0개 조문으로 비교적 단순하고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관련 법제와 마찬가지로 법의 명확성 및 구체성에서 남한의 상표법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 남북 상표법의 주요내용 분석

남한과 북한의 상표법은 선출원주의, 1상표 1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출원공고, 이의신청, 거절불복 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면서 보호기간 갱신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박람회 등에서 상표를 출품하였을 경우 출원시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표의 부등록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불사용상표에 대한 취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민·형사적 구제수단을 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남한의 상표법은 모든 절차, 용어에 대한 정의가 계속 축적되어 오면서 상표권의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반면 북한 상표법의 경우 다른 북한법과 마찬가지로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거나 용어의 사용이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법적 안정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관리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피해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³³⁾

남한 상표법에는 대리인에 관한 규정,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출원, 선출원, 출원공고결정 전후의 보정, 출원의 변경 및 분할, 출원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직권보정, 침해로 보는 행위, 손해액 추정, 법정손해배상, 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심판제도, 재심 및 소송,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제도, 지정상품 추가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 규정과 유사한 제도는 북한 상표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남한 상표법에는 없으나 북한 상표법에는 있는 규정 중 특이한 것은 북한에 상표를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대리기관을 통하여 상표출원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북한 국적의 사람이 외국에 상표출원을 하고자 할 때는 북한 상표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한은 권리침해 시 상표법상에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형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죄,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위증죄, 거짓 표

33) 법무부, 「남북비교법령집」, 법무부, 2015, 590면.

시의 죄, 거짓 행위의 죄, 양벌규정, 몰수,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민사적 구제로써 손해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손해보상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으며, 형법을 통해 상표권 침해죄, 행정처벌법을 통해 상표리용질서위반 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다.

한편, 종래 북한은 “우리나라를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을 신청한 표식 또는 표기”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한 상표법 제21조³⁴⁾ 제10항에 근거하여 한국 출원인에 대한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조항은 2016년 상표법 개정에 따라 삭제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러한 북한의 상표법 개정으로 인해 남한 상표출원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변화한 것은 아니다. 남북 모두 마드리드조약 가입국으로서 국제출원을 통한 상호출원이 가능하나, 북한의 한국 출원인에 대한 출원 불인정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 국적의 개인 또는 기업의 북한 내 특허·상표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 출원인은 제3국을 우회하여 특허·상표를 출원하는 것만이 북한 내에서 특허 또는 상표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표 12 남북 상표법의 주요내용 비교

	(북한) 상표법 주체101(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수정보충	(남한) 상표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5호, 2019. 1. 8., 일부개정]
목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법은 상표 등록의 신청과 심의, 상표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 보호
보호대상	- 상표(서로 다른 생산자 또는 봉사자의 같은 제곱이나 봉사를 구별하기 위하여 글자, 그림, 수자, 기호, 색깔, 3	- 상표(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

34) 북한 상표법 제21조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표식, 표기) 다음에 해당하는 표식, 표기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 ①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 ② 국호나 그 약자로 만들었거나 국장, 국기, 훈장, 메달과 같거나 유사한 모양으로 만든 표식
- ③ 북한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표식
- ④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허위적 내용을 담은 표식
- ⑤ 상품의 이름, 조성, 특성 같은 것만의 표기
- ⑥ 검사표식이나 단순한 숫자, 기하학적 표식
- ⑦ 전람회, 전시회에 출품되었던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 ⑧ 북한이 가입한 국제기구의 표식으로 되었거나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표식
- ⑨ 널리 알려진 상표, 유명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 ⑩ 우리나라를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을 신청한 표식 또는 표기 북한 상표법<삭제>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상표법</p> <p style="text-align: center;">주체101(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수정보충</p>	<p style="text-align: center;">(남한) 상표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5호, 2019. 1. 8., 일부개정]</p>
	<p>차원적인 형태 또는 그것들의 결합체로 밝히는 표식)</p> <p>- 제품상표, 봉사상표, 집단상표, 증명상표, 담보상표</p>	<p>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p> <p>-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p> <p>-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p>
부등록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2. 국호나 그 약자로 만들었거나 국장, 국기, 훈장, 메달과 같거나 유사한 모양으로 만든 표식 3. 우리 나라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표식 4.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허위적내용을 담은 표식 5. 상품명, 조성, 특성 같은것만의 표기 6. 검사표식이나 단순한 수자, 기하학적표식 7. 전람회, 전시회에 출품되었던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8.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표식으로 되었거나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표식 9. 널리 알려진 상표, 유명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의 국기(國旗) 및 국제기구의 기장(記章)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3.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는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상표법</p> <p style="text-align: center;">주체101(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수정보충</p>	<p style="text-align: center;">(남한) 상표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5호, 2019. 1. 8., 일부개정]</p>
	<p>10. 우리 나라를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을 신청한 표식 또는 표가</p> <p>(※ 본 보고서에서는 2016년 7월 발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제2판 증보판을 기준으로 하여 2012년 상표법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2016년 상표법 개정으로 “우리 나라는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을 신청한 표식 또는 표기”라는 조항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됨)</p>	<p>최하는 박람회(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p> <p>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雅號)·예명(藝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p> <p>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 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p> <p>8.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p> <p>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p> <p>10.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상표법 주체101(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수정보충</p>	<p style="text-align: center;">(남한) 상표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5호, 2019. 1. 8., 일부개정]</p>
		<p>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p> <p>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p> <p>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p> <p>14.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p> <p>15.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p> <p>16.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상표법 주체101(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수정보충</p>	<p style="text-align: center;">(남한) 상표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5호, 2019. 1. 8., 일부개정]</p>
		<p>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p> <p>17.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p> <p>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p> <p>19.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p> <p>20.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p> <p>21.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p>

	(북한) 상표법 주체101(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수정보충	(남한) 상표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5호, 2019. 1. 8., 일부개정]
		여 등록출원한 상표
보정	- 결함이 있는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상표등록기관은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3개월 안에 결함을 고치게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안에 결함을 고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2개월간 연장 가능	- 상표에 관한 절차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함 - 출원공고결정 전 또는, 출원공고결정 후에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보정 허용
출원 시 우선권 특례	- 전람회, 전시회에 상표를 출품하였을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신청에서 우선권 인정(우선권을 요구하는 문건은 전람회, 전시회에 상표가 출품된 날부터 3개월안에 상표등록기관에 제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조약 당사국의 영역(領域)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 출원을 한 경우 우선권 인정(상표등록 출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우선권 주장	외국인이 자국에서 받은 상표의 등록신청에 대한 우선권은 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상표등록 기관에 해당 문건을 제출해야 효력 발생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보며, 이때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 불가
상표 심사	상표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상표를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심의결과는 상표등록을 신청	심사관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 출원인에게 거절이유통지를 하여야 하고, 거

	(북한) 상표법 주체101(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수정보충	(남한) 상표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5호, 2019. 1. 8., 일부개정]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통지	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함
상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이 결정된 상표는 국가상표등록부에 등록하며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는 상표등록증을 발급 - 등록된 상표는 상표공보를 통하여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제209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이라 한다),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하여 상표원부에 등록 - 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
이의신청 및 불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하려는 상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상표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년 안에 의견 제기 가능 - 상표등록의 부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재심의 요청 제기 가능 - 상표등록의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재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국가상표심의회에 의견 제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허용 -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결정(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가능) -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상표법 제7장의 심판을 통한 복복 가능 - 확정된 심결에 대한 재심 청구 가능
상표권의 효력	등록된 상표의 사용권, 등록된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 및 사용허가권, 상표권침해행위를 중지시킬데 대한 권리와 손해보상청구권, 등록된 상표의 취소권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다만 상표법 제90조에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명시)
상표권 양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권을 양도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상표권양도문건을 만들어 상표등록기관에 제출 -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상표권 양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 가능 -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에 대한 양도, 전용사용권, 통사사용권 설정 금지

	(북한) 상표법 주체101(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수정보충	(남한) 상표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5호, 2019. 1. 8., 일부개정]
상표의 사용권	- 상표사용허가계약에 따라 상표사용 허가가 허용되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상표권 양도 금지	-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 인에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설정 가능 -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인정
상표권 존속기간	-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상표등록을 신 청한 날부터 10년 - 상표권을 소유한 자는 신청에 따라 상표권의 보호기간을 10년씩 연장 가 능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 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 가능
상표권 소멸	상표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상표를 등록 한 날부터 5년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권의 포기,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 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 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 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그 상표권 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구제 수단	손해보상, 몰수, 영업중지. 생산, 봉사 의 중지, 등록취소, 행정적 또는 형사 적 책임(형법상 상표권침해죄, 행정처 벌법상 상표권침해)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 회복청구권, 침해죄, 비밀유지명령 위 반죄, 위증죄, 몰수, 과태료

3. 남한 디자인보호법과 북한 공업도안법

가. 개관

남한 디자인보호법은 1961년 12월 31일 「의장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으며, 2005년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면서 법률의 명칭도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되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6203호)은 2019년 1월 8일 개정되어 2019년 7월 9일자로 시행되었다. 총 11장 229조로 구성된 디자인보호법은 제1장 ‘총칙’에서 디자인보호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 자격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에서는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선출원, 1디자인 1출원, 출원 시의 보정, 복수의 디자인 등록출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심사’에서는 디자인출원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관, 심사청구절차, 거절결정과 거절이유통지, 출원공개, 디자인등록결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에서는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 등과 관련되어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 ‘디자인권’에서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존속기간, 존속기간 연장,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등록 등의 보호범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질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에서는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침해행위, 손해액 추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 ‘심판’에서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또는 디자인 등록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판관 제척·기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8장 ‘재심 및 소송’에서는 재심의 청구, 청구기간, 심렬 등에 대한 소, 피고적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에서는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외의 보충적인 규정이나 벌칙과 관련된 규정들은 제10장 ‘보칙’ 과 제11장 ‘벌칙’ 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북한 공업도안법은 5장(제1장공업도안법의 기본, 제2장 공업도안등록의 신청, 제3장 공업도안등록의 심의, 제4장 공업도안권의 보호, 제5장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0 개 조문으로, 북한 상표법과 형식상 큰 차이가 없다.

나. 남한 디자인보호법과 북한 공업도안법의 주요내용 분석

남한과 북한의 디자인보호에 관한 법은 선출원주의, 1디자인 1출원주의, 공동출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의신청 및 거절불복 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 부등록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권리양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양 법률 간에는 큰 틀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으나, 세부적인 규정 내용은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북한의 발명법과 상표법이 그러하듯 공업도안법 역시 불분명한 조항이 많고, 선언적인 내용 또는 포괄적인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한의 디자인보호법은 유사디자인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할 별의 물품디자인, 비밀디자인, 무권리자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 디자인 심사 및 심판, 재심 및 소송절차에 대한 규정,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규정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만, 북한의 공업도안법에서는 이와 유사한 규정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경우 남한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5년” 간 보호하되, 디자인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업도안권의 보호기간을 5년씩 2번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여, 총 20년 동안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한은 권리침해 시 디자인보호법상에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형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죄,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비밀누설죄, 양벌규정, 몰수,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민사적 구제로써 손해배상청구권과 몰수, 영업정지를 인정하고 있지만 손해보상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으며, 형법을 통해 공업도안권 침해죄 등을 규율하고 있다.

표 13 남북 디자인보호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비교

	(북한) 공업도안법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남한) 디자인보호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3호, 2019. 1. 8., 일부개정]
목적	공업도안등록의 신청과 심의, 공업도안권의 보호에 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제품의 질을 높이고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보호대상 및 요건	공업도안(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려는 제품의 형태와 색깔, 장식 같은것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새롭게 묘사한 것) - 기계설비와 운수수단, 방직제품, 생활 및 문화용품, 의약품, 가구류, 건구류, 포장용기 같은 제품도안과 장식도안이 포함	디자인(물품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 · 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부등록사유	1. 이미 등록된 공업도안과 본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도안 2. 이미 공개되며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도안 3. 우리나라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량속에 맞지 않는 도안 4. 설비 및 기술공정도면이나 미술작품, 건축물 및 기념비 같은 것의 도안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북한) 공업도안법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남한) 디자인보호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3호, 2019. 1. 8., 일부개정]
	5.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도안 6. 경제적 효과성과 실용예술성, 생산 도입가능성이 없는 도안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 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 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절차상 보정	공업도안등록기관은 공업도안등록신청 문건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을 돌려 보내거나 3개월 안에 고치게 하여고,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안에 결함을 고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2개월까지 연장	-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일정한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보정 명령
우선권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람 회, 전시회에 공업도안이나 그 시제품 을 내놓았을 경우 해당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에서 우선권 인정(이 경우 우선권 을 증명하는 문건을 전람회, 전시회에 공업도안이나 그 시제품을 내놓은 날부 터 3개월 안에 공업도안등록기관에 제 출) - 외국인이 자국에서 받은 공업도안등 록의 신청에 대한 우선권은 그것을 받 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당 문건을 제 출하여 우선권 인정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 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 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 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 원한 날로 보며,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 록출원을 하여야 함
국제출원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자는 공업도안을 외국에 등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 업도안등록기관의 승인을 받고 공업도 안등록신청문건을 해당 국제기구 또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제출	-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에 서 국제출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 정
디자인 심사	공업도안등록기관은 공업도안등록신청 문건을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업 도안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 와 국민에게 통지	-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일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등록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 디자인등록거 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 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공업도안법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p>	<p style="text-align: center;">(남한) 디자인보호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3호, 2019. 1. 8., 일부개정]</p>
		결정을 하여야 함
디자인 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이 결정된 공업도안은 국가공업도안등록부에 등록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는 공업도안등록증을 발급 - 등록된 공업도안은 공업도안공보를 통하여 공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원부에 등록 -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
이의신청 및 불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공업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그것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공업도안등록기관에 의견 제기 가능 - 공업도안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통지 - 공업도안등록의 부결에 대한 재심의 제기 가능 - 공업도안 등록의 재심의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비상설공업도안심의위원회에 의견 제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 가능 -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가능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허용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결정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허용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허용
디자인권의 효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된 공업도안의 사용권 2. 등록된 공업도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 및 사용허가권 3. 등록된 공업도안의 취소권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디자인권	- 공업도안권 양도 가능	- 디자인권 이전 가능

	(북한) 공업도안법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남한) 디자인보호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3호, 2019. 1. 8., 일부개정]
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는 공업도안권을 양도 금지 - 외국인에게 공업도안권의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공업도안등록기관의 승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 이전 불가
디자인의 사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도안 사용허가 가능 -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는 공업도안권 사용허가 금지 - 외국인에게 공업도안사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업도안등록기관의 승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설정 가능
존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5년 -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기간을 5년씩 두 번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디자인권 소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공업도안이 취소되었거나 또는 그 보호기간이 끝났거나 공업도안을 등록한 날부터 2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업도안권 소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등록료 미납, 상속인의 부존재, 디자인등록취소 결정
출원공개 및 공보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도안등록기관은 공업도안의 등록, 보호기간연장, 양도, 사용허가, 취소정형과 공업도안등록신청자의 이름, 주소변경정형을 정상적으로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 가능 -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 디자인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등을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
디자인권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보상, 몰수 - 사용중지, 등록취소 -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침해죄,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비밀누설죄, 몰수, 과태료

IV.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

1. 개관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기구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북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보니, 국내에 소개된 자료들은 북한의 단편적인 원전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³⁵⁾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기구로는 국가과학원, 발명총국(Invention Office of DPRK), 발명심의소가 있으며, 계량 및 품질감독국, 상표 및 공업도안처(The Trademark & Industrial Design Department), 심사과 등이 있다고 알려져왔다.

그러나 평양에 ‘MSIP Pyongyang Center’ 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북경명석지식산업 대리유한공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기구는 내각 국가과학원 산하의 발명총국이 분명하며, 품질감독국 산하에 있던 상표 및 공업도안처는 품질감독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명칭도 ‘상표 및 공업도안, 원산지명사무소(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Office of the DPRK)’ 로 변경되었다고 한다.³⁶⁾

한편 2019년 8월 18일,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내나라는 “지적소유권 보호 사업에 힘을 넣는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적소유권국 국장 김영철’ 이라는 인물의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는 나라의 지적소유권 보호 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하여 경제건설과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³⁷⁾ 그런데 ‘지적소유권국’ 이라는 명칭은 위 글에서 처음 등장하는 기구로,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조건과 환경을 더욱 완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추정될 뿐, 기존 지식재산 조직과의 관계, 세부 조직 구성 등에 관하여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지적소유권국이 기존의 조직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지, 기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던 발명총국을 대체하는 것인지,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알기가 어렵다.

이하에서는 현재까지 파악이 가능한 상황을 중심으로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서술한다.

35) 최은석·허인, 「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해」, 20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신론사, 28면.

36)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한울아카데미, 2016, 221면.

37) 최호, “北, 지식재산 전담 조직 ‘지적소유권국’ 설치”, 전자신문, 2019. 8.18. <<http://www.etnews.com/20190818000161>>

2. 발명총국

그간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기관은 내각의 국가과학원 산하 발명총국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54년 6월 4일에 창립되어 발족 당시에는 내각 직속의 창의고안심사위원회라고 불렸다. 초기에는 창의고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내각 부수상이었고 심사위원은 중앙기관 상, 부상들, 과학원일군들, 대학학장, 부학장들이 되는 등 실질적인 지식재산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북한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지적창작물에 대한 보호문제가 현실화되자 국가과학원으로 통합된 과학기술위원회산하의 발명국을 지적창작물에 대한 심의, 등록, 보호,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독립 승격시키고 발명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³⁸⁾

발명총국에서는 기관들로부터 넘겨받은 발명문건들은 분야별로 나누어 심의하고 그 경제적 가치와 과학적 창작성에 따라 특허, 발명과 창의고안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발명과 특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는 발명총국 산하의 발명심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⁹⁾

특수 분야의 발명에 대한 심의는 특수부문발명심의회기관들에서 하며 창의고안등록신청은 기술심의회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등록시킨다. 다만 기술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창의고안은 기술평정을 하여 해당 도(시)과학기술행정기관의 합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발명총국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타국에서 제기되어 오는 특허 문제에 대한 실무처리사업을 한다. 이외에도 발명 및 특허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조성, 컴퓨터망에 의한 자료제공, 발명과 특허 및 비특허정보자료들의 수집 및 입력과 검색, 프로그램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발명총국에서는 “발명공보”, “특허기술통보”, “발명신청공보” 등의 정기간행물들을 편집, 발행하고 있다.

3. 상표 및 공업도안, 원산지명사무소

상표 및 공업도안, 원산지명사무소는 품질감독국 산하에 있던 상표 및 공업도안처가 품질감독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상표 및 공업도안, 원산지명사무소는 상표 및 도안에 대한 정책수립, 상표 및 공업도안의 접수·심사·심판 업무를 하며, 심사업무는 표 및 공업도안, 원산지명사무소의 상표심사과와 공업도안심사과에서 각각 담당한다.⁴⁰⁾

38) 한국지식재산학회, 「북한 지재권 현황 파악 및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 사례 분석 연구」, 특허청, 2015, 7면.

39) 이은정, “북한의 지식재산권”, 북한법연구, 제5호, 2002. 6., 144면.

40) 한국지식재산학회, 「북한 지재권 현황 파악 및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

4. 기타

그 밖의 내각 산하 기타 조직으로 소개된 산업재산권 관련 기구로 추정되는 조직으로는 ‘조선과학발명위원회’ (위원장 김응호), ‘국가소프트웨어 산업총국’ 과 ‘평양국제 새기술정보센터’ 등이 있다.⁴¹⁾

V. 북한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1. 개관

현재 북한 내 모든 지식재산권 등록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며, 특허의 경우에는 북한 발명총국에서 발간하는 발명공보를 통해 대략적인 북한 특허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나, 발명공보에는 북한에서 등록된 발명특허 전부가 게재되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고, 상표와 디자인의 경우에는 출원, 등록 건수 등 대략적인 통계조차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2. 북한 내 발명권 및 특허권 등록 현황

발명총국에서 발행하는 특허공보는 2009년부터 매달 국회도서관 및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내 발명 및 특허 등록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⁴²⁾

사례 분석 연구」, 특허청, 2015, 7면.

41)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한울아카데미, 2016, 221면.

42) _____,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한 동서독 사례와 남북한 협력방안」, 지식재산정책 IP Policy, Vol.3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3, 7면.

표 14 북한 내 발명 및 특허 등록 현황

	발명권	특허권	총계
2009	2,588	10	2,598
2010	1,479	70	1,549
2011	1,500	36	1,536
2012	1,223	50	1,273
2013	1,108	144	1,252
2014	1,188	76	1,264
2015	1,358	67	1,425
2016	1,502	149	1,651
2017	1,065	59	1,124
2018	1,013	133	1,146
합계	14,024	794	14,818

위 표에 따르면 특허권에 비하여 발명권의 수가 훨씬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치상으로는 볼 때는 발명권과 특허권 모두 지속적으로 뚜렷한 증가세 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은 아니나, 10년 전과 비교한다면 발명권에 비해 특허권의 증가는 뚜렷하다.

1986년부터는 북한 주민에게도 특허권의 취득이 허용되고 있지만, 특허제도는 주로 외국인이 이용하고 발명자증 제도는 주로 북한주민, 기관, 사업소, 협동단체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개별적인 공민은 기업경영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민이 특허권을 소유하더라도 특허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자기의 발명을 생산과 건설에 도입하여 개인 기업을 창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⁴³⁾

한편, 발명공보를 살펴보면 국가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3개 기관에 의한 출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또는 연구소와 같은 단체가 아닌 개인에 의한 출원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WIPO를 통한 국제 출원 현황

다음은 WIPO IP 통계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북한의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출원 현황이다.

43) 신지연 외, 「남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방안」, 특허청, 2008, 14면.

Year	PCT	Madrid	Hague
2008	7		
2009	1	2	2
2010	4	5	
2011	4	2	
2012	3	2	
2013	1	3	
2014	4	7	
2015	6	7	
2016	4	7	
2017	2	6	

그림 1 WIPO 시스템하의 출원(출처 : WIPO IP statistics)

위 표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10년간 PCT, 마드리드 시스템,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특허, 상표, 디자인의 국제출원 건수가 매년 10건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WIPO 시스템을 통한 국제출원 건수가 극히 미미하여 북한의 지식재산 활동을 파악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3장 북한 발명공보 정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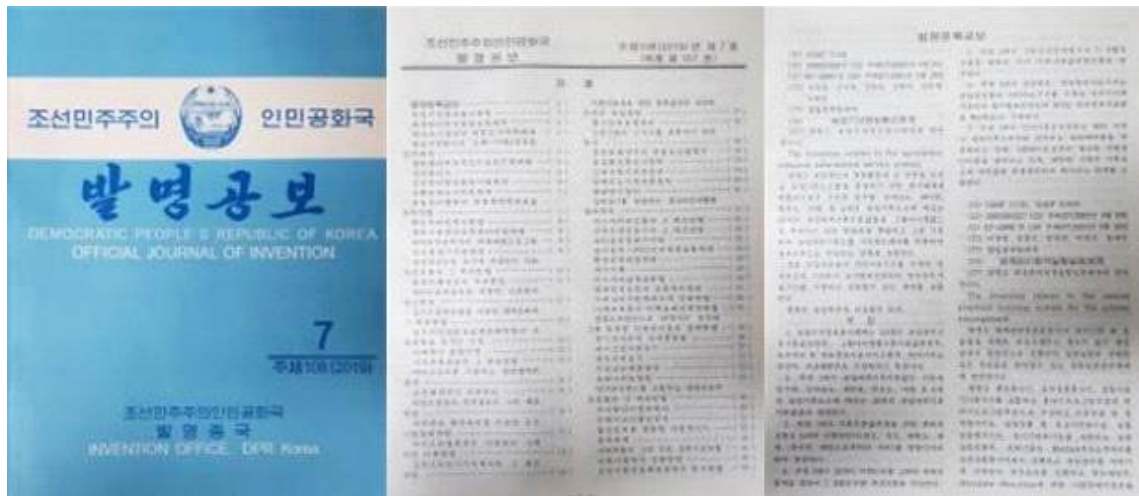
I. 북한의 산업재산권(발명공보) 분석

1. 분석 대상 자료

북한은 특허 전담 정부조직인 발명총국을 통해 “발명공보” 44)를 책자 형태로 월간지로 발간하고 있다. 이 발명공보에 수록된 발명등록공보와 특허등록공보의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연도별 출원 동향, 등록현황, 출원인 동향 등 산업재산권45) 분석을 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발명공보 책자본 및 2004년부터 2014년의 CD롬판에 수록된 기본적인 내용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가공하였다.

그림 2 발명공보 책자 예시



데이터의 원천적인 오류나 의도적인 누락(예를 들어 신청인 항목 등)이 있으나 북한은 또한 CD롬 형태로 된 발간물에 발명공보 2004년 1호부터 2014년 12호까지 수록하여 종합본을 내놓기도 했다. 이 내용에는 발명에 대한 설명이 보다 상세하고 데이터 관리 등의 측면에서 보다 체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

44) “발명공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공보”(DPRK Official Journal of Invention)의 약칭임.

45) 이 분석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북한이 말하는 지적소유권의 대상인 발명(특허)과 실용기술, 공업도안, 상표중에서 발명공보에 수록된 발명과 실용기술의 범주에서 산업재산권 분석을 하였다.

그림 3 발명공보 CD롬판 종합본(1) 표지 및 수록 등록문건 내용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2) 발명권등록문건

발명총국

(11) 발행번호: KP 56894 F

(21) 신청번호: 201313001064	(75) 발명기/신청자: 김중만, 박오진, 이경남, 원금숙
(22) 신청일자: 주체 102(2013)년 5월 6일	(77) 기관/기업소: 과학기술혁신연구소
(24) 등록일자: 주체 102(2013)년 7월 4일	
(45) 발행일자: 주체 103(2014)년 11월 5일	
(51) 국제특허분류: C22C 33/08	

(54) 제목: 저합금주철불가량제와 제조방법
 (54) TITLE: Low-alloy cast iron ball improving agent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57) 개요:

발명은 저합금주철불가량제와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에서는 개량제의 주요개량원소물인 Ti, Zr, 및 희토류원소물은 합금철을 쓰지 않고 그에 적당한 양분을 그대로 이용하여 쇠물에 직접 첨부의도록 하였다.

(57) ABSTRACT:

The invention relates to the low-alloy cast iron ball improving agent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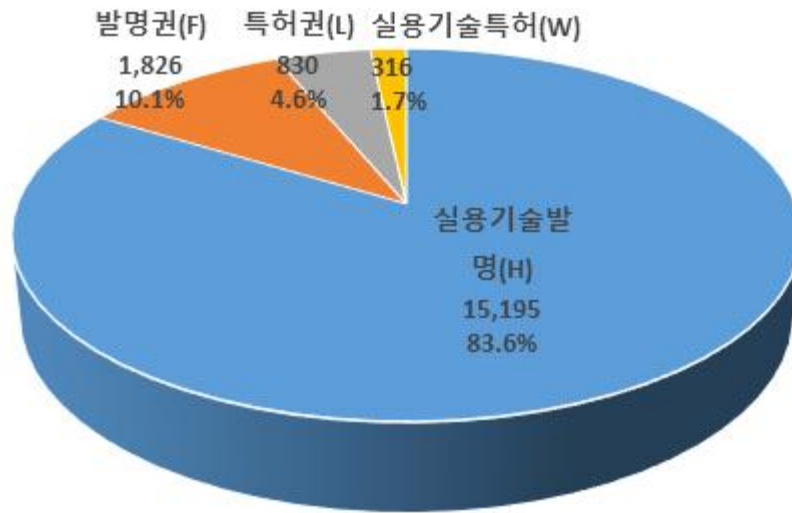
2. 북한의 산업재산권 권리별 분포

수집된 북한의 발명공보 수록 내용을 발명과 특허로 구분하면, 발명이 17,021건, 특허가 1,146건 합계 18,167건이다. 이 분석에서는 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 산업재산권은 발명이 93.7%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명의 경우는 발명권(F)이 1,826건, 실용기술(H)이 15,195건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허의 경우는 특허권(L)이 830건, 실용기술특허(W)이 316건이다.

표 15 북한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분포도

구분		기술 고도성		합계
		대발명(발명/특허)	소발명(실용기술)	
권리 귀속	발명	1,826	15,195	17,021
	특허	830	316	1,146
합계		2,656	15,511	18,167

그림 4 북한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분포도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남한의 직무발명에 견줄 수 있는 발명권을 가진 산업재산권이 93.7%에 이를 정도로 다수이고, 재산권이 개인 또는 기업 등에 부여되는 특허는 발명의 약 1/15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더구나 이 특허도 외국 출원이 다수여서 북한의 경우 내국인은 특허 보다는 발명권을 대부분 가지게 된다. 개인의 재산권으로서 발명특허는 아직 미미한 정도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기업체 등의 출원이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한의 실용신안(소발명)에 해당하는 실용기술발명은 대발명인 발명에 비해 8.3배 많으며, 특허의 경우 대발명이 2.6배 많은 편이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는 주로 대발명 보다는 소발명 위주이며, 특허의 경우 외국인이 출원하는 등의 이유인 것으로 나타난다.

3. 북한 산업재산권 연도별 출원 추이

북한 산업재산권 발명의 연도별 출원 추이를 보면 <표 3-2> 및 <그림 3-4>와 같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감소 후 등락을 반복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⁴⁶⁾. 이는 2000년대 초반에 외국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직접투자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경제특구 확대 및 적극적 투자유치 정책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46) 공보 발간 기간이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이므로 초기 년도와 후반기의 데이터는 그 특성, 즉 출원과 등록 사이의 다양한 시차로 인해 데이터의 추이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면이 있다.

표 16 북한 산업재산권의 발명 및 특허의 출원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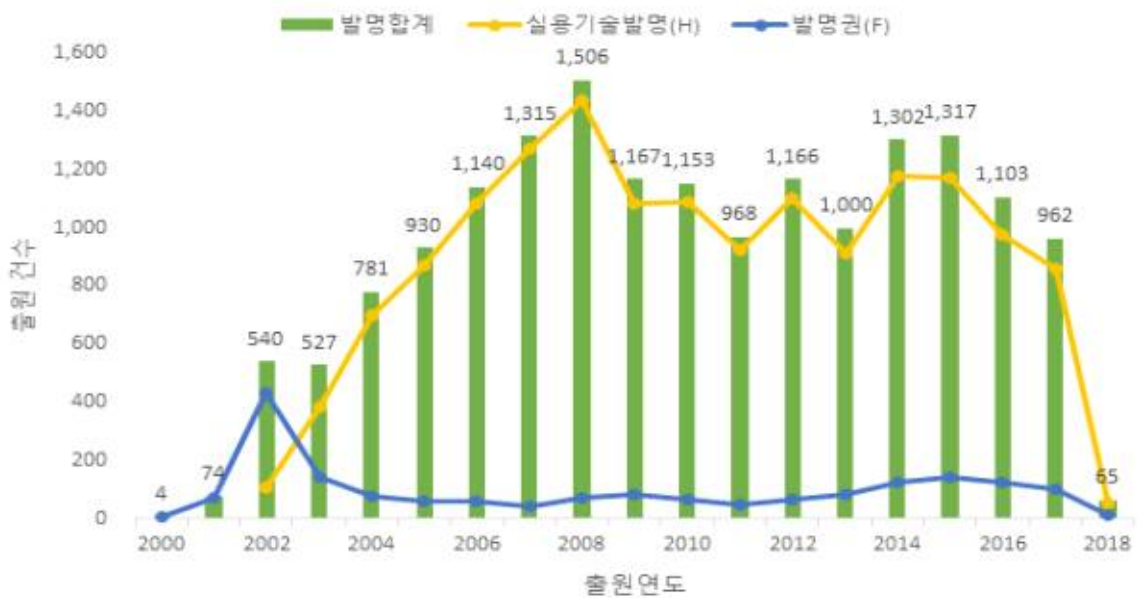
출원 연도	발명		특허		대발명 (특허)	소발명 (실용)	합계
	(발명권) F	(실용기술) H	(특허권) L	(실용기술) W			
1999	1		1		2	0	2
2000	4		12		16	0	16
2001	74		24		98	0	98
2002	432	108	24		456	108	564
2003	144	383	17		161	383	544
2004	80	701	61		141	701	842
2005	61	869	50		111	869	980
2006	60	1,080	62	10	122	1,090	1,212
2007	42	1,273	100	4	142	1,277	1,419
2008	69	1,437	91	4	160	1,441	1,601
2009	84	1,083	73	3	157	1,086	1,243
2010	64	1,089	81	6	145	1,095	1,240
2011	47	921	67		114	921	1,035
2012	64	1,102	50	1	114	1,103	1,217
2013	86	914	42	15	128	929	1,057
2014	127	1,175	31	28	158	1,203	1,361
2015	145	1,172	30	57	175	1,229	1,404
2016	126	977	10	78	136	1,055	1,191
2017	104	858	4	109	108	967	1,075
2018	12	53		1	12	54	66
합계	1,826	15,195	830	316	2,656	15,511	18,167

그림 5 북한 산업재산권(발명과 특허)의 연도별 출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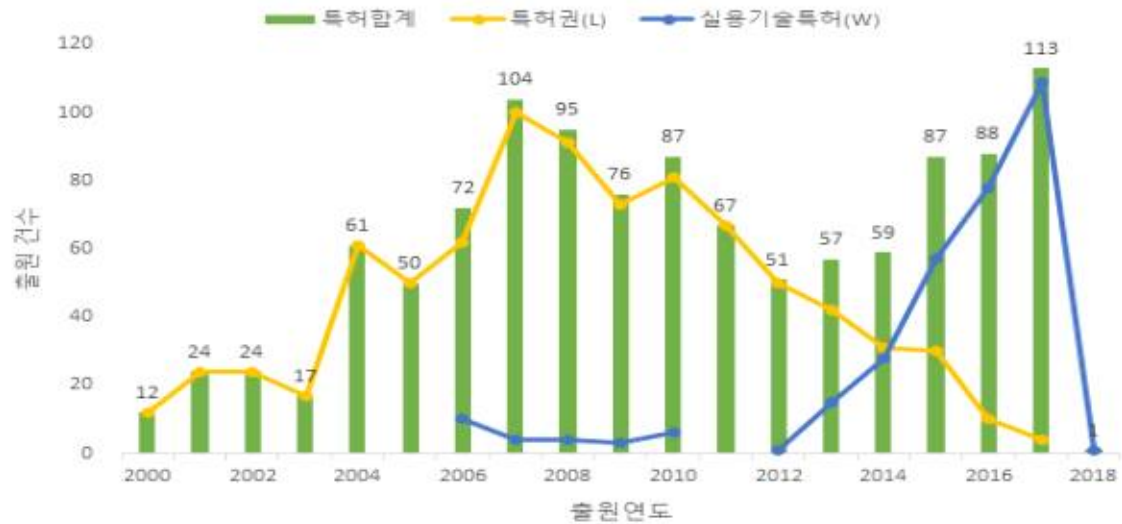
북한 산업재산권의 연도별 출원(신청) 추이는 남북 교류 협력의 활성화와 같은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 연계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요구하나 경제 활성화의 기대가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눈여겨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북한 산업재산권 발명의 발명권(F)과 실용기술(H)의 연도별 출원 추이



전체적으로 특허 건수의 변화는 2002년도에 특이한 높은 건수를 보이고 있으나 그 후의 변동 폭은 그리 없는 편이다. 북한에의 특허 출원이 따른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북한에 특허의 권리화에 관심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한 출원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북한 산업재산권 특허의 (특허권)L와 (실용기술특허)W의 연도별 출원 추이



특히 외국인의 특허 출원은 실용기술 보다는 특허(대발명)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볼 때 2014년 이후의 하락 폭은 커지고 있다. 대신 북한의 국내 출원인이 실용기술을 중심으로 개인 또는 법인의 권리화를 추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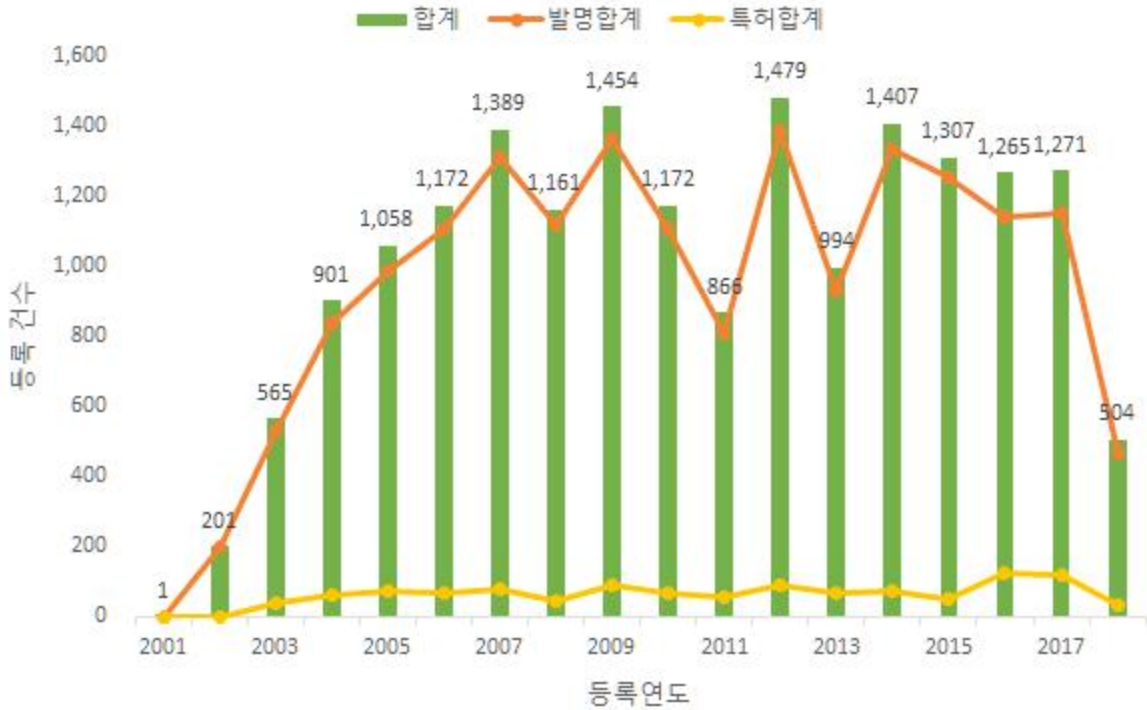
4. 산업재산권 연도별 등록 현황

북한 산업재산권을 발명과 특허의 등록추이 분석하면 다음 <표 3-3>과 <그림 3-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등록 추이는 출원 추이와 거의 같은 경향은 나타내고 있다. 꾸준히 등록이 된다는 점이 출원 분포와는 차이가 있고, 시기적으로도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표 17 북한 산업재산권의 연도별 등록현황

등록연도	발명		특허		대발명 (특허)	소발명 (실용)	합계
	(발명권) F	(실용기술) H	(특허권) L	(실용기술) W			
2001	1				1	0	1
2002	201				201	0	201
2003	408	119	38		446	119	565
2004	92	746	63		155	746	901
2005	70	913	75		145	913	1,058
2006	72	1,033	58	9	130	1,042	1,172
2007	35	1,276	73	5	108	1,281	1,389
2008	39	1,079	39	4	78	1,083	1,161
2009	84	1,278	89	3	173	1,281	1,454
2010	66	1,039	67		133	1,039	1,172
2011	54	754	54	4	108	758	866
2012	63	1,323	92	1	155	1,324	1,479
2013	44	885	59	6	103	891	994
2014	148	1,184	49	26	197	1,210	1,407
2015	128	1,126	28	25	156	1,151	1,307
2016	134	1,007	33	91	167	1,098	1,265
2017	105	1,046	12	108	117	1,154	1,271
2018	82	387	1	34	83	421	504
합계	1,826	15,195	830	316	2,656	15,511	18,167

그림 8 북한 산업재산권의 발명과 특허의 연도별 현황



김정일 집권시기의 마지막 년도인 2011년도라는 점은 북한의 과학기술 주도 정책의 미진한 점을 보여주는 득하다. 현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과학기술 중심 사상의 강조와 함께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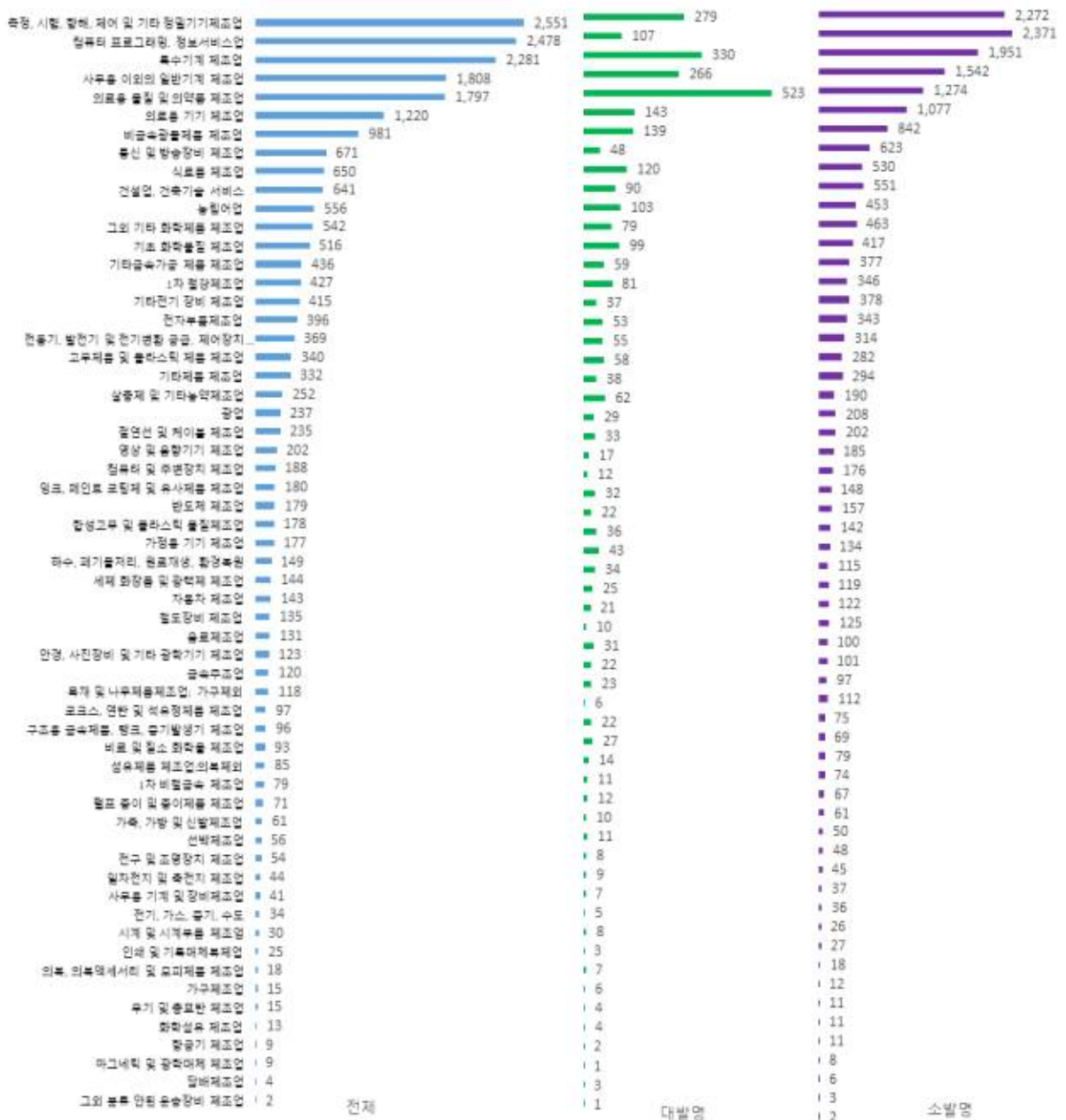
5. 북한 산업재산권 산업분야별 분석

우리나라 특허청(kipo.go.kr)에서 공개된 ‘산업(KSIC)-특허(IPC) 연계표’를 활용하여 특허분류를 산업분류로 변환하여 각 산업분야별로 분석하였다.

가장 많이 출원된 산업분야는 측정, 사업,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2,551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24,478건), 특수기계 제조업(2,281건)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가장 적게 출원된 산업분야는 그 외 분류 안 된 운송장비 제조업(2건), 담배 제조업(4건),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9건), 항공기 제조업(9건) 등으로 분석되었다.

무기개발에 필요한 기술(측정, 사업,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 특수기계)들이 많이 출원되었으며, 기타 운송장비 및 항공기 제조업 등이 미미한 것으로 보여 진다. 중요한 것은 전투용 차량 제조업과 모터사이클 제조업에 관한 특허는 1건도 출원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9 북한 산업재산권의 발명과 특허의 연도별 현황



대발명의 경우에는 의료 관련 출원이 가장 많고, 특수기계 제조업이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다. 실용기술의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정보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것을 볼 때 이 부분은 기술의 고도성은 낮으나 다양한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의 활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Balassa가 제안한 기술활동성 지수를 다음의 식과 같이 산업활동성 지수로 정의하여 산업분야별 출원 건수 동향과 비교하고자 한다.

$$AI(t,i) = \frac{P_{ti} / \sum_t P_{ti}}{\sum_i P_{ti} / \sum_t \sum_i P_{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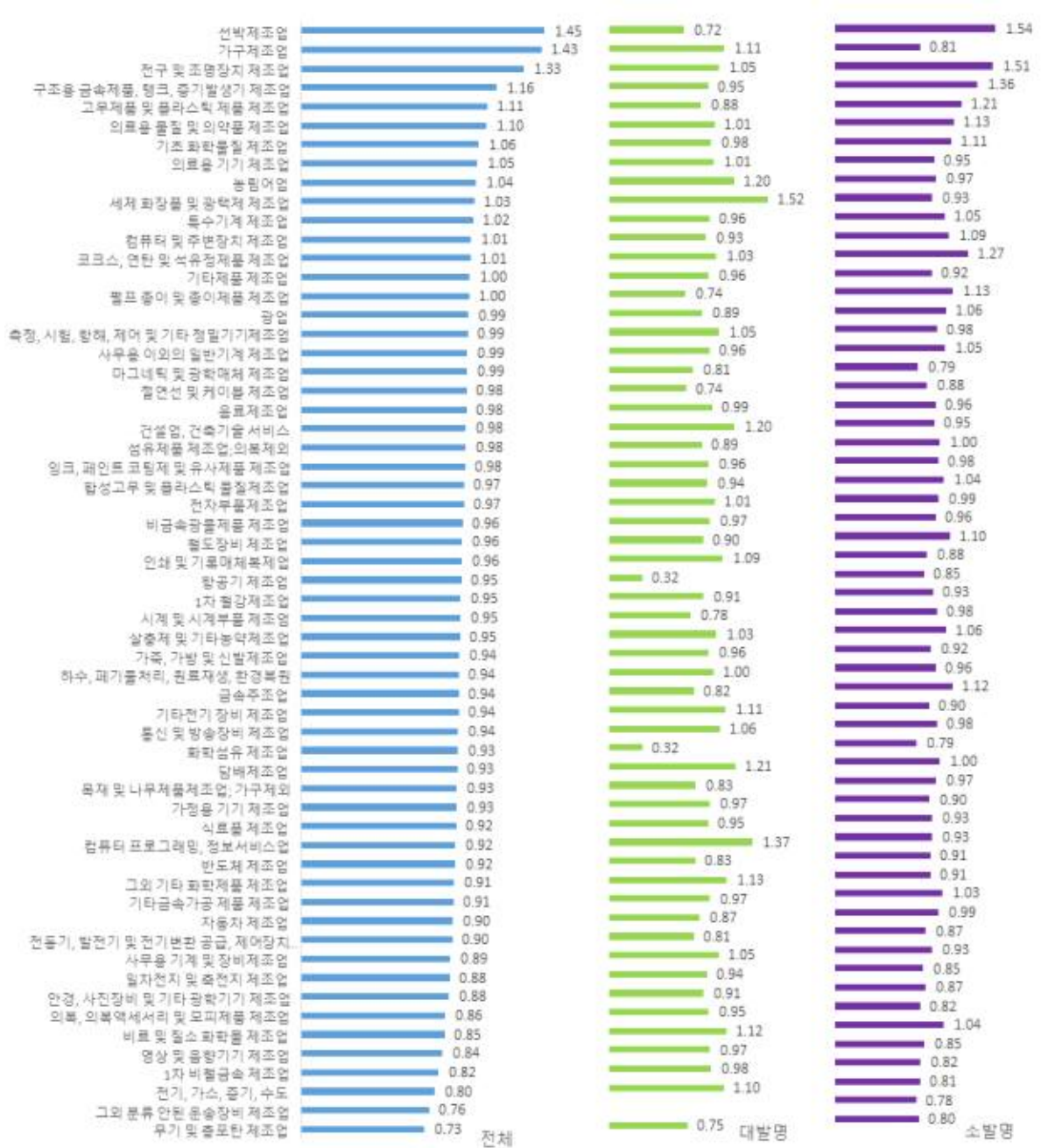
여기서 P_{ti} 는 i 분야, t 연도의 특허건수이다.

이 식에서 분자는 분석대상이 되는 산업분야 중에서 i 분야의 t 연도에 대해 출원된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분모는 분석대상 연도의 전체 특허 중에서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i 분야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분석된 산업활동성 지수가 1보다 큰 경우 산업집중도가 높아 활동성이 높은 산업으로 보고, 1보다 작은 경우는 산업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활동이 낮은 것으로 본다.

1보다 높아 산업 활동이 높은 산업으로는 선박 제조업(1.45), 가구 제조업(1.43),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1.33),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증기발생기 제조업(1.1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1.1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1.06), 의료용 기기 제조업(1.05), 농림어업(1.04),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1.03), 특수기계 제조업(1.02),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1.0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01), 기타제품 제조업(1.0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00)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1보다 낮은 0.90이하의 산업으로는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0.73), 그 외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0.76), 전기, 가스, 증기, 수도(0.8), 1차 비철금속 제조업(0.82),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0.84), 비료 및 질소 화학물 제조업(0.8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0.86),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0.88),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0.8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0.89),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 공급, 제어장치 제조업(0.90), 자동차 제조업(0.90)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0 북한 산업재산권 산업집중도(산업활동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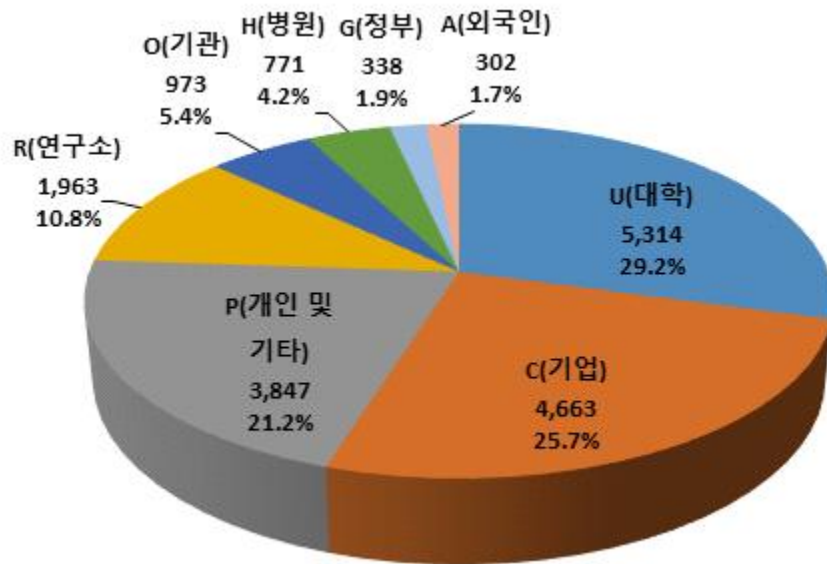
6.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인 분석

북한 산업재산권의 출원인의 형태를 기업, 대학, 연구소, 기관, 정부, 외국인 및 개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실제 개인으로 출원된 것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원인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개인으로 간주한 것이다. 북한 산업재산권의 경우 출원인을 표기하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거나 국가의 주요기관

에 대해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를 모두 개인으로 분류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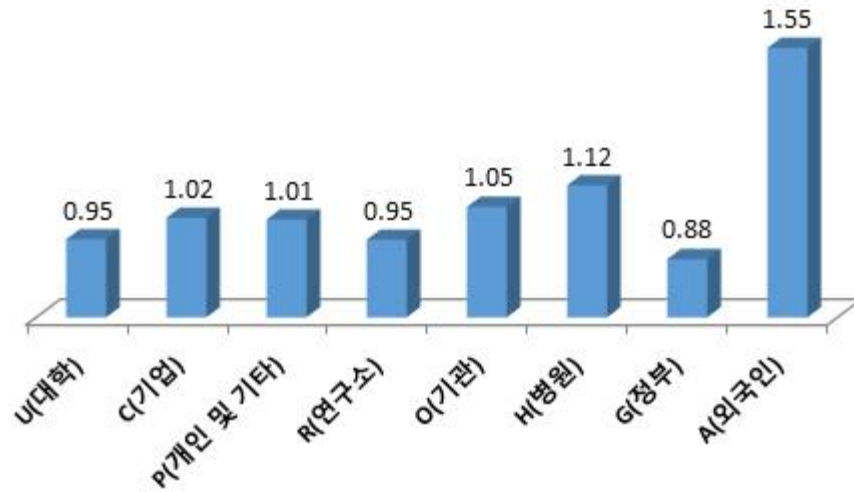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인을 형태별로 출원 건수를 분석하면 대학이 5,314건으로 29.2%이고, 그 뒤를 이어 기업(4,663건, 25.7%), 개인(3,847건 21.2%), 연구소(1,963건, 10.8%), 기관(973건, 5.4%), 병원(771건, 4.4%), 정부(388건, 1.9%), 외국인(302건, 1.7%) 순으로 나타났다. 출원인의 특징은 대학이 출원 건수로는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인 유형별 출원건수 분석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인 형태의 산업집중도를 분석하면 외국 출원인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집중도는 정부이고, 대학과 연구소의 경우도 집중도가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인 형태별 기술집중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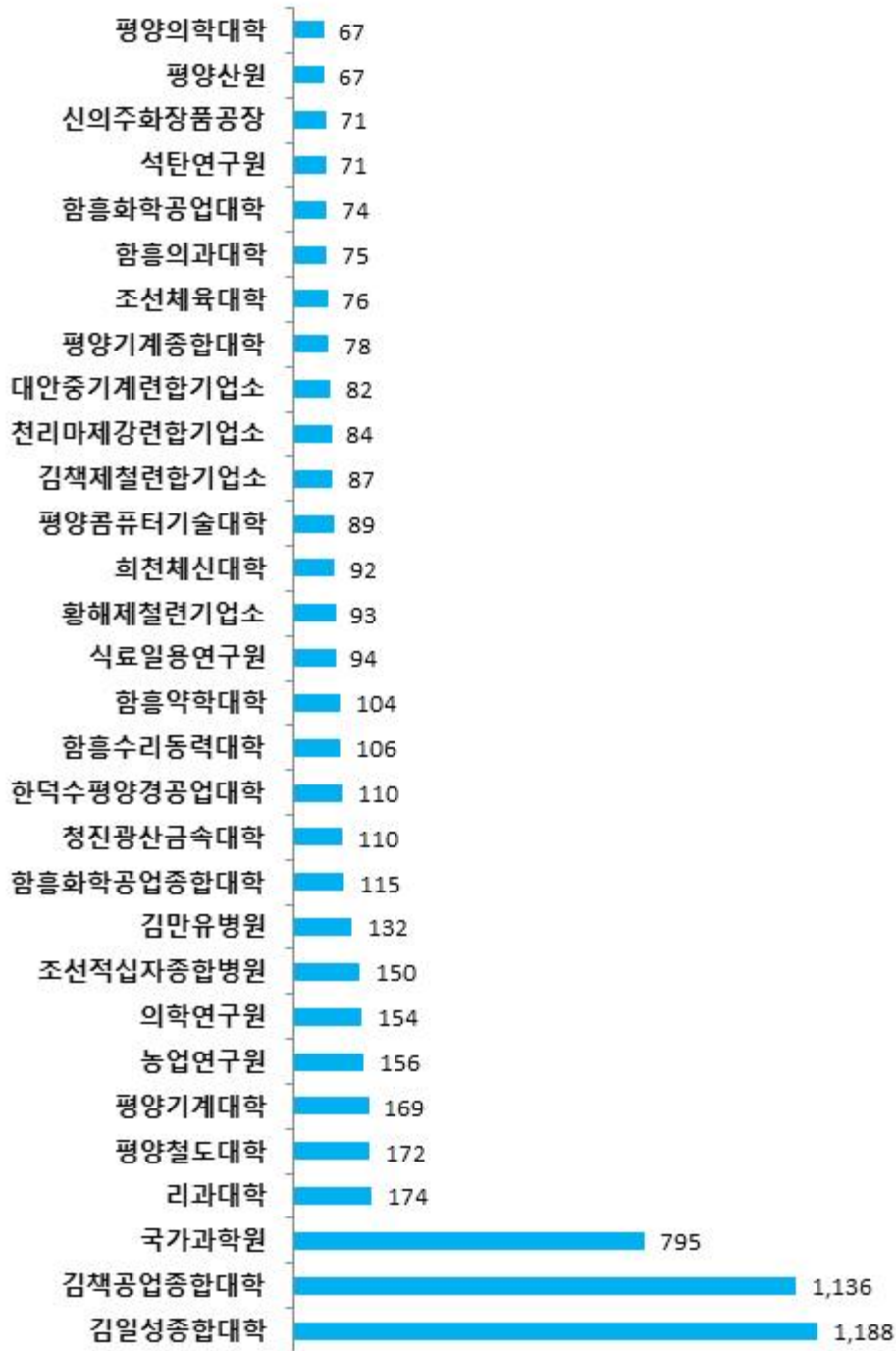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인 상위 30위 출원을 살펴보면 대학이 65.9% 이상을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연구소 21.3%, 기업 7.0%, 병원 5.8%의 순이다. 기술개발의 중심이 대학이라는 것을 출원인 특허분석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병원에서 출원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또한 산학연 출원인의 Top 10은 다음 <표 3-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이 가장 많이 출원하였으며, 기업으로는 황해제철련기업소가 93건 출원하였으며, 연구소에서는 국가과학원이 795건 출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8 북한 산업재산권 산학연 출원인 Top 10

대학		기업		연구소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김일성종합대학	1,188	황해제철련기업소	93	국가과학원	795
김책공업종합대학	1,136	김책제철련합기업소	87	농업연구원	156
리과대학	174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84	의학연구원	154
평양철도대학	172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82	식료일용연구원	94
평양기계대학	169	신의주화장품공장	71	석탄연구원	71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115	홍남벼료련합기업소	60	정보통신연구소	64
청진광산금속대학	110	평양화장품공장	54	백두산건축연구원	49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110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48	고려의학연구원	48
함흥수리동력대학	106	2.8비날론련합기업소	46	수산연구원	25
함흥약학대학	104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43	체육연구원	25

그림 13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인 Top 30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인 형태별로 어떤 산업분야에 관심을 갖고 출원되었는지를 분석하여 보면, 대학의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1,390건),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1,007건), 특수기계 제조업(484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421건), 사무용 이외의 일반기계 제조업(39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는

특수기계 제조업(968건), 사무용 이외의 일반기계 제조업(683건),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488건),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371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25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533건), 특수기계 제조업(473건),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456건), 사무용 이외의 일반기계 제조업(387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33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의 경우는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283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62건), 특수기계 제조업(240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218건), 사무용 이외의 일반기계 제조업(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경우는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177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125건), 사무용 이외의 일반기계 제조업(101건), 특수기계 제조업(70건), 건설업, 건축기술 서비스(68)의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경우는 의료용 기기 제조업(469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67건),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75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70건), 사무용 이외의 일반기계 제조업(18)이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경우는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86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80건),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59건), 건설업, 건축기술 서비스(19건), 사무용 이외의 일반기계 제조업(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인들은 공통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에 관심을 갖고 출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국 출원인의 경우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10건), 사무용 이외의 일반기계 제조업(35건), 의료용 기기 제조업(19건),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19건), 특수기계 제조업(16)에 관심을 갖고 출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Appendix 참조)

표 19 북한 산업재산권 합계 1천 건 이상 출원된 출원인 형태별 산업분야

산업명	U (대학)	C (기업)	P (개인)	R (연구)	O (기관)	H (병원)	G (정부)	A (외국)	합계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	1,007	488	456	283	177	75	59	6	2,551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1,390	253	337	218	125	70	80	5	2,478
특수기계 제조업	484	968	473	240	70	13	17	16	2,281
사무용 이외의 일반기계 제조업	399	683	387	169	101	18	17	35	1,80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21	235	533	262	56	167	15	110	1,797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1	59	281	49	7	469	5	19	1,220

7. 북한 산업재산권 발명자 분석

북한 산업재산권의 발명자 분석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구자에 대한 동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 1건 이상 출원한 발명자의 소속과 함께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상위 출원 발명자는 대학 소속이다.

표 20 북한 산업재산권 10건 이상 출원한 발명자 및 소속

발명자	소속	건수	발명자	소속	건수
김상훈	함흥의과대학	26	최명철	김책공업종합대학	11
석영범	국가과학원	23	김장학	김책공업종합대학	11
김광혁	함흥약학대학	20	김영실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11
김철호	김일성종합대학	19	리성진	련두평수력발전건설사업소	11
김홍원	신의주화학제품공장	18	오영식	신의주화학제품공장	11
김호성	함흥의과대학	16	정일룡	문평제련소	11
박철	김일성종합대학	15	김성철	대동강축전기공장	11
김철	김책공업종합대학	15	김성호	평양통신기계공장	11
김성철	김책공업종합대학	14	김경일	김일성종합대학	10
최등광	평양천연향료연구소	14	림창호	김일성종합대학	10
김금철	김책공업종합대학	13	김진혁	김일성종합대학	10
김철호	국가과학원	13	손문호	김일성종합대학	10
리태남	농업연구원	13	김균	김일성종합대학	10
정세영	김철주사범대학	13	리석준	김일성종합대학	10
김명선	문평제련소	13	김주영	김책공업종합대학	10
김현철	김일성종합대학	12	김광철	김책공업종합대학	10
리금철	김일성종합대학	12	최광룡	김책공업종합대학	10
김성철	김일성종합대학	12	조군세	김책공업종합대학	10
김철수	김책공업종합대학	12	김성철	국가과학원	10
김광혁	국가과학원	12	조영혁	청진광산금속대학	10
김명철	국가과학원	12	리경일	평양일용품공장	10
리혜선	신의주화학제품공장	12	김금실	녕변건직공장	10
김정철	김일성종합대학	11	최경일	함흥의과대학	10
리성철	김책공업종합대학	11	송병익	함흥약학대학	10
한성혁	김책공업종합대학	11	전종백	함흥약학대학	10
김혁철	김책공업종합대학	11	최명길	김책제철련합기업소	10

8. 남북한 산업재산권 산업활동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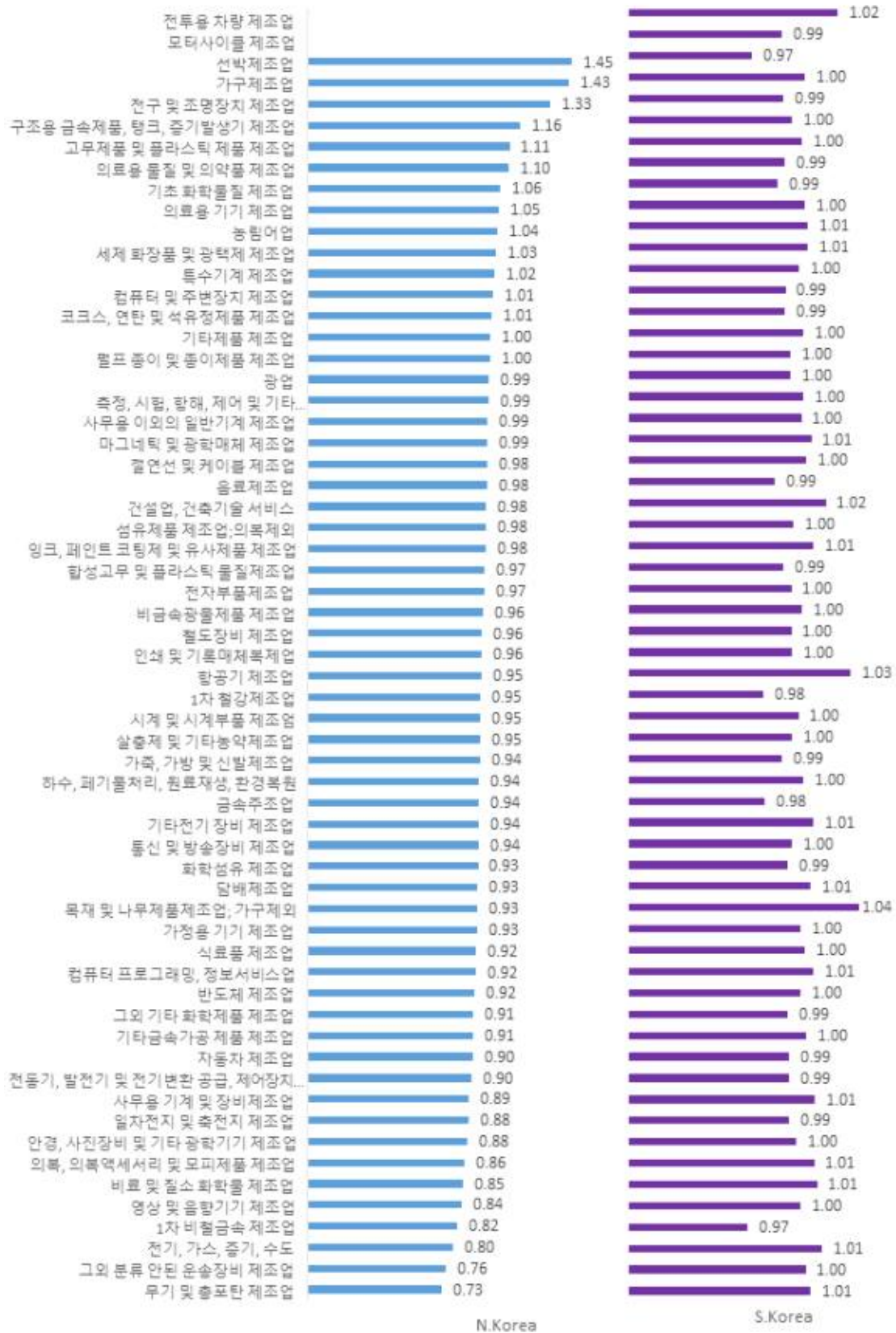
KSIC-IPC 연계표를 활용하여 남북한 산업재산권의 산업활동성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부록 1>에 수록하였다. 산업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분야별로 비교하여 서로간의 비교우위의 산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에서 산업활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선박제조업(1.45), 가구제조업(1.43),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1.33),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증기발생기 제조업(1.1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1.1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1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1.06), 의료용 기기 제조업(1.05), 농림어업(1.04),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1.03), 특수기계 제조업(1.02),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1.0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01) 등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남한에서 산업활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 제외(1.04), 항공기 제조업(1.03), 전투용 차량 제조업(1.02), 건설업, 건축기술 서비스(1.02), 전기, 가스, 증기, 수도(1.01), 비료 및 질소 화학물 제조업(1.01), 사무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1.0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01),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1.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1.01), 기타전기 장비 제조업(1.01),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1.01),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1.01), 담배제조업(1.01) 등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북한에서 출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산업분야로는 모터사이클 제조업과 전투용 차량제조업 분야이다.

그림 14 남북한 산업재산권 산업분야 비교



II. 북한의 발명공보 데이터의 키워드 특성 분석

1. 분석데이터

분석 대상이 된 데이터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8,167건의 발명 및 특허 공보데이터이다. 북한의 연구개발 현황 및 변화를 탐지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11년까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두 개의 시구간(제1시구간, 제2시구간)을 설정하여, 각 시구간별 주요 키워드를 탐색하고 키워드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2시구간은 북한의 현 김정은 위원장 집권시기에 해당한다.

2. 분석방법

가. 1단계 키워드 분석

① 발명공보 및 특허공보에서 주요 키워드를 탐색하기 위하여, 두 개 시구간 (제1시구간: 2004년~2011년, 제2시구간: 2012년~2018년)의 데이터의 “제목” 항목에 대한 1차 형태소 분석, 키워드 파싱 및 추출을 수행한다.

※ 한글 형태소 분석 및 키워드 파싱은 NetMiner4.0⁴⁷⁾에 포함된 오픈소스 한글 형태소 분석기 ‘은전한닢’⁴⁸⁾을 이용함.

② 추출된 키워드 목록에 대하여, 출연 빈도수가 1에 그친 키워드와 글자수가 1인 키워드는 불용어 처리하였다.

③ 추출된 키워드 목록에 대하여, 동시발생빈도 기반의 상관관계 행렬 계산을 하였다.

④ 키워드 상관관계 행렬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및 키워드 맵 생성을 하였다.

나. 단계 키워드 분석

① 추출된 키워드 목록에 대하여, “제목” 과 “개요” 를 결합한 텍스트를 기준으로 2차 형태소 분석, 키워드 파싱 및 추출을 수행하였다.

② 2차 수행된 키워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키워드의 TF-IDF를 측정하였다.

47) www.netminer.com

48) <http://eunjeon.blogspot.com/2013/02/blog-post.html>

③ TF-IDF 상위 키워드를 도출하여 각 시구간별 북한의 주요 기술동향을 탐색하고, 시구간별 TF-IDF 상위 키워드 변화로부터 기술개발 변화를 논의하였다.

※ TF(Term Frequency)는 키워드가 한 문서 내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키워드가 얼마나 많은 문서에 등장하는지의 정도를 역수로 표현한 것으로, TF-IDF는 어떤 키워드의 문서 내에서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지수로 널리 사용함.

다. 3단계 TF-IDF 상위 키워드 소속 클러스터 상세현황 탐색

① 2단계 TF-IDF 측정 결과, TF-IDF 상위 50위 키워드가 포함된 클러스터를 확인하고, 해당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키워드 목록을 도출하였다.

②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와 함께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키워드 목록을 바탕으로 제1시구간 및 제2시구간에서의 북한 내 연구동향 탐색을 시도하였다.

그림 15 제1시구간(2004년~2011년) 북한 특허데이터 주요 키워드 상관관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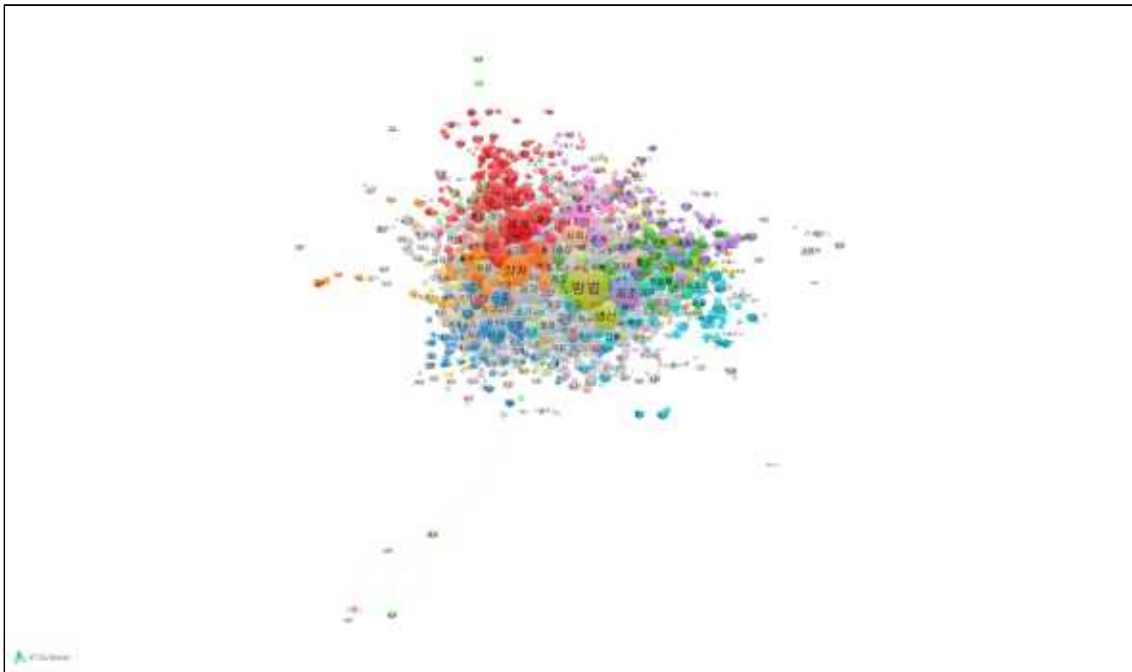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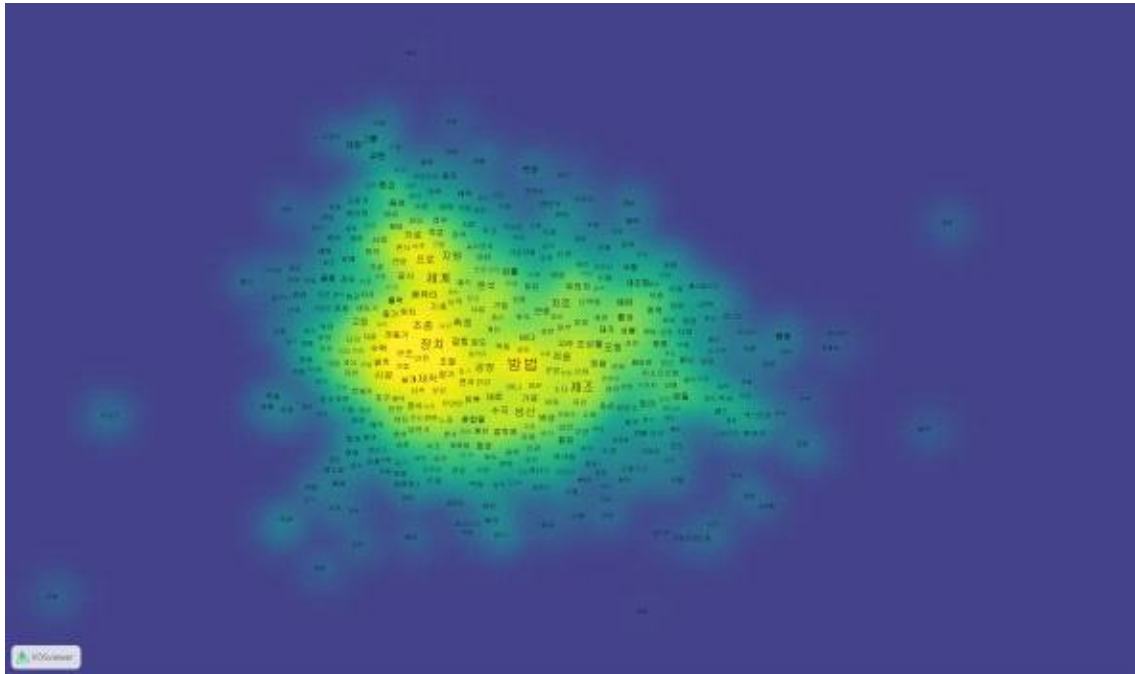


그림 18 제2시구간(2012년~2018년) 북한 특허데이터 주요 키워드 상관관계 지도(밀도지도)



3. 분석결과

가. 1단계 키워드 분석결과

1단계 키워드 분석을 통한 클러스터링 결과⁴⁹⁾, 제1시구간에서는 47개의 클러스터가 262개 키워드~28개 키워드의 크기로 검출되었고, 제2시구간에서는 49개의 클러스터가 243개 키워드~23개 키워드의 크기로 검출되었다.⁵⁰⁾

<그림 3-14> ~ <그림 3-17>까지, 클러스터링 결과를 시각화한 키워드 상관관계 지도, 특히 밀도지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클러스터가 유사한 정도의 강도를 나타내어(밀도지도에서 유사한 색상은 유사한 강도를 의미), 특정 기술영역의 두드러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북한 기술개발 영역에서, 특정 기술주제로의 집중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9) 클러스터링은 VOSViewer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됨 (www.vosviewer.com)

50) 2~4개 키워드로 구성된 극소 클러스터는 제외

나. 2단계 키워드 분석결과

2단계 키워드 분석에서는, 각 키워드별 TF-IDF를 측정하고, TF-IDF값을 기준으로 상위 100위까지에 해당하는 키워드 목록을 <표 3-7>와 같이 추출하였다(TF-IDF값이 같을 경우, 복수의 키워드 목록을 모두 도출).

이때 TF-IDF는, 제1시구간, 제2시구간에서 별도로 측정되었고, 각 시구간의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키워드의 중요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시구간의 TF-IDF 순위와 제2시구간 TF-IDF 순위를 비교해보면, TF-IDF 순위가 유지되는 키워드는 많지 않고, 제1시구간 TF-IDF 순위 100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키워드들이 대거 제2시구간 TF-IDF 순위 100위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북한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활동에 관하여, 연구주제의 중요성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연구활동이 단기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제1시구간 TF-IDF 순위 100위내 키워드 중, 제2시구간 TF-IDF 순위 100위내에 다시 등장하는 키워드는, 라돈과 육수 등 2개 키워드에 불과하였다.

다. 3단계 TF-IDF 상위 키워드 소속 클러스터의 상세 키워드 현황 도출

제1시구간 및 제2시구간의 TF-IDF 상위 50개 키워드에 대하여, 각 키워드가 소속된 클러스터를 찾고 해당 클러스터의 구성 키워드 목록을 <표 3-8>과 같이 도출하였다.

제1시구간에서 총 30개 클러스터, 제2시구간에서 총 23개 클러스터가 TF-IDF 상위 키워드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클러스터에 대하여, 현시대의 기술적 수준에 의한 한글형태소 분석기 작동 성능의 한계와 북한 용어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하여, 클러스터의 상세 키워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해석은 용이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북한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개선되고 해당 분야 기술전공자의 참여 시, 북한 내 연구활동 동향에 대한 풍부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 제1시구간(2004~2011)과 제2시구간(2012~2018)의 TF-IDF 순위 상위 100위 키워드 목록

제1시구간			제2시구간			
No.	키워드	TF-IDF	No.	키워드	TF-IDF	제1시구간 순위
1	상표	2.815	1	그룹	2.622	#N/A
2	일주	2.623	2	날개바퀴	2.62	2485
3	부지	2.599	3	중성자	2.542	1230
4	저체온	2.574	4	주장	2.463	1799
5	헤르니아	2.562	5	빛중합	2.408	#N/A
6	봉합침	2.555	6	응축기	2.407	#N/A
7	백일	2.508	7	옹벽	2.406	664
8	개구리	2.501	8	교원	2.384	#N/A
9	기름떡	2.501	9	상박	2.336	676
10	보람	2.501	10	호스	2.336	1930
11	육수	2.501	11	고도	2.322	2250
12	접촉렌즈	2.501	12	광고	2.322	#N/A
13	주낙	2.501	13	기우	2.322	#N/A
14	버너	2.497	14	네뿔	2.322	#N/A
15	투과막	2.497	15	대다수	2.322	#N/A
16	우편	2.446	16	맨드라미	2.322	#N/A
17	위석	2.442	17	발벼	2.322	#N/A
18	자연어	2.442	18	올밤	2.322	#N/A
19	숨판	2.44	19	전기담요	2.322	#N/A
20	푸마르	2.44	20	카비르	2.322	#N/A
21	황사	2.44	21	라돈	2.304	66
22	훈액	2.44	22	립상	2.304	2145
23	사문석	2.438	23	침탄	2.304	444
24	모드	2.392	24	제형	2.266	2214
25	정미	2.389	25	전송	2.24	3898
26	단국	2.384	26	보도	2.232	532
27	응집소	2.38	27	기뢰	2.225	#N/A
28	비우	2.379	28	기화기	2.225	#N/A
29	창틀	2.379	29	벽화	2.225	612
30	코란	2.379	30	분마	2.225	202
31	심음	2.322	31	선전	2.225	1479
32	후두경	2.322	32	소착	2.225	853
33	갓풀	2.318	33	열전	2.225	2337
34	식혜	2.318	34	유인	2.225	#N/A
35	송지	2.295	35	장음	2.225	#N/A
36	착수	2.295	36	코더	2.225	#N/A
37	한랭	2.295	37	탄화물	2.225	#N/A
38	포접	2.285	38	효소제	2.225	2221
39	록음	2.275	39	화일	2.218	3372
40	수유기름	2.264	40	용중	2.195	#N/A
41	혈중	2.264	41	각통	2.193	#N/A

42	홍골	2.264
43	디페	2.257
44	띠강	2.257
45	맞단추	2.257
46	살구나무	2.257
47	연관	2.257
48	전철기	2.257
49	치마	2.257
50	커피	2.257
51	봉합사	2.239
52	송이버섯	2.239
53	재봉기	2.239
54	배위	2.233
55	연필	2.233
56	공심	2.229
57	케톤	2.229
58	수은	2.228
59	청력	2.228
60	흰생쥐	2.228
61	체외	2.209
62	탄질	2.209
63	탈곡	2.209
64	농포	2.206
65	다면	2.206
66	라돈	2.206
67	선방	2.206
68	솜옷	2.206
69	안검	2.206
70	열중성자	2.206
71	영사막	2.206
72	촌백층	2.206
73	협기성	2.206
74	황정	2.206
75	경도계	2.196
76	꽃씨	2.196
77	달맞이	2.196
78	레크	2.196
79	리보	2.196
80	바얀	2.196
81	방현재	2.196
82	산삼	2.196
83	서혜	2.196
84	수직과	2.196
85	에페드린	2.196
86	취약	2.196
87	참미역	2.196

42	붕락	2.193	1791
43	연단	2.193	#N/A
44	추환	2.193	258
45	침수	2.193	#N/A
46	투영기	2.193	#N/A
47	플라본	2.193	#N/A
48	단선	2.187	2140
49	오물	2.187	1772
50	주행	2.187	2113
51	통구리	2.187	1062
52	인삼	2.164	2845
53	습기	2.153	3419
54	가을밀	2.145	#N/A
55	곡동	2.145	#N/A
56	관람	2.145	#N/A
57	광대	2.145	2859
58	금관리	2.145	#N/A
59	농화	2.145	#N/A
60	단백폴	2.145	1013
61	단사	2.145	#N/A
62	단세포	2.145	#N/A
63	도계	2.145	#N/A
64	돌모	2.145	#N/A
65	마발	2.145	1900
66	마요네즈	2.145	#N/A
67	막이	2.145	1968
68	메르	2.145	#N/A
69	무좀	2.145	#N/A
70	발효제	2.145	#N/A
71	배관	2.145	2519
72	배나무	2.145	#N/A
73	베렐	2.145	#N/A
74	보형	2.145	#N/A
75	분극	2.145	2022
76	브로	2.145	#N/A
77	빵틀	2.145	#N/A
78	서리	2.145	#N/A
79	송어	2.145	563
80	수류	2.145	2039
81	수송관	2.145	#N/A
82	심비디움	2.145	#N/A
83	아스타	2.145	#N/A
84	알기생벌	2.145	496
85	연마기	2.145	2303
86	유착	2.145	#N/A
87	유채	2.145	538

88	치질	2.196
89	타전	2.196
90	폭파	2.196
91	프로피온	2.196
92	호흡음	2.196
93	다공판	2.183
94	무릎	2.183
95	발론	2.183
96	초림	2.183
97	환등	2.183
98	서체	2.181
99	연마지	2.181
100	그물	2.178
101	노체	2.178

88	육수	2.145	11
89	응회암	2.145	#N/A
90	절체	2.145	2931
91	점과	2.145	#N/A
92	제초기	2.145	505
93	조압	2.145	1264
94	중공축	2.145	1754
95	중실	2.145	#N/A
96	지불	2.145	#N/A
97	진채	2.145	#N/A
98	집광	2.145	1266
99	체액	2.145	#N/A
100	칠색	2.145	574
101	카르바민산	2.145	#N/A
102	토미	2.145	1458
103	토사	2.145	#N/A
104	투석	2.145	2565
105	프레임워크	2.145	1176
106	피브린	2.145	#N/A
107	피오줌	2.145	#N/A
108	하악	2.145	#N/A
109	형리	2.145	#N/A
110	홍당무	2.145	#N/A

※ 제2시구간 TF-IDF 상위 키워드 중 제1시구간 키워드목록에 없었던 키워드의 경우, 제1시구간 순위는 #N/A로 표시

표 22 TFIDF 상위 키워드가 포함된 클러스터의 구성키워드 현황 (제1시구간: 2004년~2011년)

클러스터 No.	클러스터 구성키워드 목록 (굵은 글씨 키워드는 TFIDF 상위 키워드)
#1	<p>우편, 자연어, 황사, 단국, 청력, 발생, 예약, 단어, 복호, 전송망, 분축기, 번역, 법률, 봉화, 코퍼스, 통지, 땀납, 삼천리, 화용, 감온, 분로, 특허, 항공사진, 기지국, 지기, 련락선, 차모, 풍년, 금망, 클라스, 토지, 영어, 집계, 금계산, 태부, 판구, 조선어, 구내, 형지, 무역, 발신, 부하분산, 성악, 연안, 메아리, 사색, 클라, 인증, 간원, 격강, 청송, 항해, 동통, 주제, 석유, 전화망, 금알, 발굴, 백반, 세포진, 싸이트, 전자사전, 프레입워크, 사진, 물동, 계발, 카오스, 색인, 국어, 실마리, 가상현실, 비화통신, 시프, 어음, 일보, 자심, 태모, 통실, 객체, 등록계, 위성, 청각, 국제, 도서, 회의, 호화, 지능, 식시, 정류탑, 희망, 과제, 전력계, 안개, 칠관, 열쇠, 기모, 복화, 사령, 교육용, 구역, 스트림, 식련, 모뎀, 접이식, 발견, 포진, 규약, 내원, 특원, 계능, 엔진, 적산, 다층, 비트, 계획, 영상, 정정, 모호, 증착, 경보, 가상, 동특성, 삭제, 미생물학, 주장, 실기, 복호화, 내용물, 문서, 영조, 침지, 지리, 강의, 곡자, 보안, 다목, 무리, 지식, 문헌, 조선, 주소, 추론, 표본화, 지도, 호출, 운행, 업무, 모듈, 학습, 신경망, 호환, 련관, 통신망, 호흡기, 계층, 마이크, 규칙, 교환기, 일체식, 오유, 분사, 실행, 지향, 감압, 암호, 열람, 전문가, 원유, 분할, 부호, 전화, 본문, 웹, 화일, 다중, 직결, 검색, 실시, 검사, 동적, 시각, 통합, 포구, 원격, 말단, 수집, 교환, 반도체, 사용자, 화상, 조사, 병렬, 성능, 봉사, 철도, 의학, 표준, 알갱이, 기체, 도구, 인식, 손실, 직렬, 분산, 최량, 전문, 음성, 정류, 전송, 실습, 호상, 생성, 감시, 운전, 관계, 모의, 공간, 경제, 전국, 가능, 실시간, 구축, 최소, 소편, 실험, 정보, 통신, 기지, 환경, 형식, 방안, 입력, 해석, 전자, 자료, 자식, 관리, 운영, 기관, 형태, 지원, 길이, 작성, 설정, 조작, 교육, 조종, 통과, 임의, 방식, 그림, 자동, 프로, 개발, 결합, 상태, 콤퓨터, 기초, 실현, 체계, 기술, 특징</p>
#2	<p>개구리, 살구나무, 송이버섯, 흰생쥐, 쥐약, 발열제, 덩굴, 향나무, 달팽이, 국화, 호열성, 복숭아나무, 사철, 깃털, 도립, 딱감자, 진디, 꿀벌, 씨앗, 면막, 봉화, 수세미, 유채, 키트, 구체약, 다래, 방성, 성포, 다래나무, 털가죽, 삼투압, 소철, 추위, 털벌레, 오이, 길항, 보산, 사과나무, 암컷, 양모, 염육, 클린, 상법, 도토리, 타제, 방선균, 소나무, 실체, 채종, 다당류, 방화, 오균, 병맥주, 온실, 스파, 물코, 은행나무, 현미기, 간엽, 묘목, 용비, 토미, 의자, 떡가루, 수중, 인공수정, 질화, 화초, 콜라겐, 골수, 활성화제, 로이, 염색체, 진드기, 비육, 포도, 장생, 김일성, 두부, 연고, 프로테아제, 동분, 창상, 곰팡이, 실란, 자극제, 밤색, 줄기세포, 프라이머, 줄기, 덩이, 당화, 해충, 병해충, 번식, 벌레, 잡종, 재조합, 목재, 디젤유, 테트라, 농약, 토양, 평양, 판별, 모판, 살균제, 균주, 살충제, 가지, 형질전환, 비타민, 생합성, 부유, 육성, 대장균, 비료, 변이, 소화, 구제, 깨묵, 염기, 물분, 포름알데히드, 유전자, 칠감, 규산염, 영양가, 미생물, 고순, 선박, 주머니, 대량, 주요, 구분, 동정, 필수, 검정, 견딜성, 세포, 구부, 변전소, 단백, 속성, 저온, 성장, 세균, 생물, 직접, 나무, 축진제, 선별, 전진, 식물, 천연, 절단, 저하, 카리, 유도, 재배, 시기, 시약, 미량, 접종, 기름, 배양, 원소, 열처리, 첨가제, 사람, 조직, 저항, 정제, 분리, 활성, 화학, 설계, 작용, 처리, 조절, 확립, 도입, 적용</p>
#3	<p>버너, 송지, 재봉기, 공심, 방한재, 폭파, 우회, 도면, 수제, 대립, 암거, 해수, 구와, 물문, 절선, 정자, 체질, 메탄가스, 산탄, 도로포장, 수사, 해탄, 강관, 축합, 옹벽, 가물막이, 취수구, 취수탑, 구마, 굴식, 보식, 산포, 파라핀유, 형광체, 내진, 방조제, 잔교, 제올라이트, 합판, 용임, 인용, 토압, 사석, 아스팔트, 말뚝, 망간토, 음판, 주철근, 지지턱, 현수식, 객화차, 반우, 벽타일, 열분석, 쿠마론, 철탑, 방수제, 교각, 에틸렌글리콜, 힘받이, 수관, 자현, 마늘, 라베, 유도가열, 중층, 진식, 분압, 하류, 노관, 계량기, 중력식, 가교, 굴뚝, 식가, 막돌, 애기, 용소, 단추, 아치형, 조업, 차바퀴, 가배, 양정, 타르, 이음줄, 부두, 방수, 부력, 잔사, 풍화, 물막, 아링, 배근, 축조, 장식, 화차, 언제, 강구, 민산, 합금화, 유기물, 세척기, 수막, 격리, 아치, 골조, 유탁액, 체내, 축전기, 시판, 투석, 동결, 주회, 수액, 고성능, 침하, 대리석, 유탕, 장식, 수압, 주물품, 관로, 버력, 열분해, 중유, 용고, 소성로, 연유, 상부, 식고, 접착제, 더운물, 석고, 해체, 자외선, 진흙, 파라핀, 건재, 니트릴, 철근, 폴리에틸렌, 야외, 대응, 기관차, 기동, 석탄, 변경, 고무, 발전기, 마감, 보강, 구조물, 공법, 음극,</p>

	고주파, 대응, 흡수, 단면, 지지, 입구, 감소, 농축, 탄광, 리트, 건설, 광산, 시공, 구조
#4	식혜, 춘백층, 황정, 리보, 산삼, 홍곡, 기록기, 타이로신, 포자, 열고, 자손, 콩다식, 색지, 양판, 모피, 고추장, 송어, 증감, 칠색, 갑상선, 메주, 금죽, 시디, 제곡, 호식, 홍삼, 산유, 입술연지, 발효효모, 암내, 흑맥주, 불판, 합체, 프로피온산, 감홍, 제생, 타미, 병아리, 아질산, 절임, 백분, 설량, 오줌, 용원, 코아, 향신료, 전해로, 토끼, 열팽창, 초피, 글루, 부정맥, 음원, 백혈구, 추정, 국수, 나체, 된장, 충전제, 핵산, 덧밥, 와류, 용합, 침기, 팽화, 치주, 위암, 구충약, 고기, 콜레스테롤, 염소, 심전, 동생, 조미, 소증, 알루, 질기, 호르몬, 종자, 흰쌀, 누룩, 식초, 성숙, 물고기, 신율, 발효기, 형법, 회귀, 파스타, 수성, 전گی식, 방부제, 식기, 종균, 클론, 남생, 런던, 밀라, 통풍, 향기, 소주, 유기질, 철액, 우량, 간장, 식성, 젖산, 품종, 새끼, 강성, 예보, 작물, 질체, 농작물, 방부, 젖산균, 피대, 토르, 벤졸, 성형기, 시험, 맥주, 육종, 흰색, 연재, 생육, 발효, 색소, 식료품, 양극, 절단기, 집짐승, 강제, 소결, 그루, 뿌리, 축진, 미니, 증가, 비교, 모형, 보관, 혼합물, 랭각, 제약, 가공, 개선, 형성, 단계, 생산, 방법
#5	헤르니아, 육수, 혼액, 커피, 농포, 서혜, 호흡음, 전해수, 배추, 감보, 순대, 원핵생물, 종배설강, 고추냉이, 악보, 침묵, 아형, 프로모터, 단백유, 살모넬라, 약술, 콜레라, 이산화염소, 그물막, 단나무, 마가목, 주폐, 양념, 계역, 뽕뿌라, 기관염, 막조, 정액, 익모초, 맥아, 비염, 스피룰리나, 분기기, 페리, 방법, 산화염, 호프, 사료, 단백풀, 감마, 경희, 원종, 생식, 응진, 메기, 감각, 황경피, 독감, 토류, 장티푸스, 근전, 열분해법, 공생, 통기, 금당, 아미노산, 관장, 작변, 파라티푸스, 후두, 인터페론, 게사니, 느타리버섯, 알파, 전염성, 대장염, 약조, 단액, 약산, 신골, 열매, 침구, 약품, 내산성, 교차, 배설물, 성취, 비루스, 금물, 취장, 응집, 영양액, 장염, 혈구, 오리, 조류, 향원, 다당, 미용, 내기, 당뇨병, 발현, 살충, 쌀겨, 효모, 유기산, 증체, 유발, 예방약, 항체, 시비, 흐름식, 성물, 소수, 감자, 향산, 가금, 돼지, 균체, 발육, 수증기, 주사약, 분무, 지시, 면역, 우림, 처방, 먹이, 배양액, 단백질, 배양기, 특이, 급성, 기대, 탐색, 염산, 엑스, 알고리즘, 분해, 성분, 분석, 예방, 최대, 배합, 단축, 혼합, 단위, 제조, 포함, 리용
#6	상표, 포집, 케톤, 수은, 치질, 성냥, 네이트, 시클, 쾌삭강, 디히, 화관, 토인, 피페라진, 테트로도톡신, 로페, 평강, 디메틸아민, 박피, 접착성, 옥소, 마르텐, 벤조, 비페닐, 데스트린, 리그닌, 범랑, 지방족, 미생, 액틀, 인돌, 프로펜, 헤테로, 불수, 계오, 스테니, 클레오, 환상, 디아민, 다제, 아스, 이미다졸, 사과, 거품, 레노, 산디, 항균성, 과망간산, 줄리, 거품제, 빈산, 피리미딘, 히드라, 라졸리, 맛춤, 과민, 무모, 아졸, 옥사, 드로, 벤즈, 시드, 치료제, 복제, 푸르, 실리카, 유약, 지각, 오스, 산모, 보온재, 치약, 니트, 디메틸아미노, 안식향산, 단량체, 세척제, 회석, 중합물, 고상, 자기, 카르본산, 선광법, 질산염, 페닐, 포스, 송진, 알킬, 그릇, 운반체, 치환, 옥시, 싱아, 아미드, 망간철, 발색, 과산화수소, 고급, 항균, 중독, 히드록시, 탄산염, 아미노, 합금철, 간염, 지방, 해소, 프로필, 니켈, 칼리, 티오, 망간, 압연, 크롬, 유도체, 열간, 톱밥, 촉매, 아민, 폼위, 추합, 화합물, 나노, 에스테르, 광석, 수강, 환원, 메틸, 에틸, 억제, 산화, 조성물, 합성, 사용, 공정
#7	심음, 꽃씨, 달맞이, 초립, 알뿌리, 팽창기, 고약, 착화탄, 수실, 고질, 흡출관, 직수, 부인병, 눈약, 액회, 비등, 부뚜막, 청소기, 한마음, 온돌, 나팔, 식한, 혼류, 통부, 저탄소강, 물집, 경막, 구멍탄, 공유, 대항, 방열, 투관침, 솔잎, 수관, 판형, 황금, 화재, 관류, 축류, 분광기, 경보기, 연생, 내산, 필립, 온수, 할로젠, 다관, 식보, 페니, 식온, 조리, 페지, 향료, 세로축, 열전달, 다단, 축수, 랭매, 용접봉, 중력, 산체, 타빈, 식열, 콩팥, 불멸, 식변, 통풍기, 복사체, 살창, 날개바퀴, 피복제, 열수, 탄재, 김정일, 방울, 식용, 규산, 원심분리기, 표식, 열풍, 난방, 클로, 합침, 합성법, 천자, 내화물, 축선, 관식, 보이라, 각수, 촬영기, 축소, 적외선, 무수, 중소형, 류체, 가열로, 절연물, 중추, 배기, 물유리, 담체, 제제, 인체, 함유, 계량, 수리, 보수, 지속, 원심, 수력, 가정, 주원료, 발전소, 동력, 수직, 개조, 종합, 건조, 정상, 설치
#8	비우, 봉합사, 체외, 개가죽, 유경, 포획, 위장, 전자파, 레시틴, 치핵, 교정기, 자체, 카테, 대공, 상약동, 선량계, 장액, 정화용, 칠산, 계식, 산철, 응집제, 코담, 피리딘, 회충, 채취기, 내시경, 조영제, 결찰, 반응법, 뽕누에, 살리, 홍문, 절체, 가구, 물정, 병리, 비접, 흡인, 기관지, 선염, 기초제, 개구, 테르, 소작, 연축전지, 존데, 방습, 승리, 자침, 로봇트, 용천, 생검, 요드, 레트, 섬광, 탄닌,

	갈구리, 전위선, 가온, 축식, 시야, 금액, 기관지염, 경구, 근사, 포르, 경피, 온열, 관내, 면접, 배제, 정성, 보링, 시안, 중기, 쾌양, 정기, 측정계기, 치료법, 쇠기, 표본, 전해액, 류량, 등록, 점막, 극판, 글리세린, 매물, 순환, 양생, 보상, 전위, 억제제, 통계, 방사선, 폴리비닐, 폴리, 산소, 종양, 조절변, 함수, 가압, 출혈, 랭동, 아연, 지장, 만성, 거리, 약물, 알콜, 류산, 소다, 주입, 두께, 금속, 정확
#9	일주 , 안검, 방파제, 머리카락, 염비, 직파기, 방지기, 뜨개, 치석, 복강경, 지자기, 시험대, 보존합, 불경, 모포, 보석, 박리, 토리, 초고층, 급탕, 하향식, 상기, 개건, 분무식, 수술칼, 역전류, 옥내, 기장, 부자, 비듬, 타올, 린스, 부동산, 탑재, 구호, 강판, 동판, 사금, 수봉, 식판, 추식, 하식, 화형, 구획, 정방기, 완충기, 안장, 연사기, 물비누, 두둑, 권사기, 자동정, 수직갱, 윤희유, 뜨개천, 순응, 탈선, 초지기, 공기압, 복구, 감기, 굴개, 흡입구, 굴착기, 안과, 끈양기, 물개, 바늘, 과부하, 외면, 시공법, 제직, 기동력, 급수, 사갱, 균등, 단속, 운수, 지면, 도시, 미세, 중량, 유압, 감속, 조화, 전면, 자동차, 단성, 연신, 단순, 수단, 장비, 편심, 편차, 건물, 피해, 방전, 질환, 머리, 분배, 전환, 사기, 극소, 압축, 보통, 전달, 각도, 주기, 안전, 질량, 사이, 효과
#10	모드 , 혈중 , 만년필, 흡음, 심박수, 풍압, 하악골, 수직환, 지게차, 탱이, 주유기, 마질, 심박계, 인버터, 정계, 초식, 형격, 운기, 원로, 원장, 진주암, 벽판, 약장, 흡입기, 재크, 경소, 소호, 견신, 침포, 시력, 질석, 과포, 부품, 태아, 흡인기, 가래, 조방기, 풍차, 초고, 식견, 파려, 소성법, 추진축, 섬유질, 식려, 약기, 마전, 배출기, 재기, 제철, 체류, 갈탄, 가락, 타일, 야전, 마발, 진동식, 만곡, 속기, 꼬치, 정방, 과기, 굴곡, 주입기, 생기, 로천, 식조, 용광로, 채굴장, 디젤, 흡입, 장약, 톱날, 파쇄, 선박, 티탄, 진기, 도금, 시누스, 장입물, 라즈, 특성량, 수동식, 접촉기, 분리기, 전기로, 실린더, 파장, 휴대, 수동, 자체, 교류, 보조, 출구, 부위, 변환
#11	응집소 , 한랭 , 알런덤, 노공, 초전, 부동액, 산계, 동액, 가스관, 지질, 송전탑, 방송차, 푸란, 진주광택, 면과, 승용차, 내접, 싸이클, 아연광, 카메라, 배변, 철원, 혁신, 키프, 열공, 편식, 섬아연광, 연알, 나프톨, 로이드, 채선, 목표, 아조, 응판, 부선기, 보체, 실공, 마쇄기, 회선, 기정, 발동기, 기소, 전화기, 연도, 고성기, 통화, 사물, 착염, 비지, 누에, 수류, 식공, 혈청, 피마주, 철분, 사축, 별기, 급기, 화기, 금선, 기분, 연시, 권양, 해액, 마쇄, 차동, 분사식, 산업, 미광, 감쇠, 경화제, 색감, 간섭, 류사, 부선, 지상, 무균, 식사, 수입, 응용, 요동, 혼합기, 반사, 찌끼, 지령, 증폭기, 현탁액, 정수, 기하학, 운반, 부분품, 생리, 결수, 치수, 지표
#12	백일 , 탄질 , 타전, 프로피온, 꼬마, 디프테리아, 부표, 마킹, 워터, 부스, 소환, 강수량, 대환, 레스, 문지기, 안트라센, 아크릴아미드, 청정제, 폐녹, 기피제, 중과, 구름, 선구, 팔로스, 포린, 량식, 방사능, 축구, 해효, 지모, 비화, 중간체, 전기영동, 방송기, 차조기, 물자, 모기, 스중, 탐측, 페니실린, 낙지, 시초, 다수화, 백색, 아세, 알곡, 비색법, 고층, 그래피, 순환기, 다공성, 정유, 세대, 동심, 산아미드, 직교, 고지혈증, 기압, 대사, 경기, 무선, 광전, 기상, 파라, 훈련, 부틸, 체인, 판단, 항생제, 장기, 수분, 선수, 특효, 내장, 기용, 습도, 기질, 기재, 측정기, 평균, 활성제, 계면, 수행, 수감, 조성, 기본, 결정, 원리
#13	위석 , 띠강 , 참미역, 환등, 대다리, 락화, 홍역, 밥조개, 모기르기, 치장, 혜성, 도막, 가공법, 경수로, 다윈, 홍미, 현미, 개복, 운반선, 줄풀, 체세포, 군사체, 식장, 효과기, 배자, 소독기, 포체, 조개, 기습, 양장, 정전기, 폴리스티롤, 레기, 바스, 구두창, 종모, 무이, 박편, 모손, 체조, 특대, 윤희제, 양식, 해삼, 광차, 비행, 양법, 물결, 겨울철, 물우, 골재, 대전, 시설물, 연마기, 편직, 다시마, 전복, 드릴, 배경, 리식, 채식, 이식, 버섯, 소식회, 광폭, 내경, 조립식, 대화, 완충, 증식, 바다, 연마, 껍질, 장애, 식품, 대형, 건강, 바닥, 분포, 종류, 가루, 완성, 내용, 기구, 제거
#14	사문석 , 레크, 승강기, 유제, 이미드, 극선, 동물유, 먼조, 탄소질, 발신자, 화강석, 회계, 축심, 칠물, 생머이, 부티, 질화규소, 송화, 캄파, 도석, 동도금, 표지, 명판, 운모, 레자, 착색, 강쇠, 사약, 파고무, 점착, 적혈구, 탈색, 금전, 초미세, 가소물, 석수, 이용, 방사성, 구형, 보호제, 층막, 내화, 수복, 도자기, 해법, 그늘음, 축받이, 석영, 분비, 비스, 교질, 조형, 규소철, 번호, 붉은색, 적색, 사진, 소리, 숄폰산, 와니스, 확산, 색상, 폴리에스테르, 경량, 제조법, 결합, 야금, 에폭시, 오염, 건축물, 계전, 페놀, 비중, 중성, 계단, 미끄럼, 염화, 변성, 복합, 트리, 분말, 현상, 재료, 첨가

#15	정미, 유조선, 분급기, 영양물, 탈착, 희석제, 미기, 미셀, 습식법, 형무, 모세관, 점화, 강식, 예열기, 육모, 종합시험, 유화물, 모자이크, 상유, 합성탑, 호기, 로스, 합금, 텍스트란, 목초액, 고조과, 귀금속, 전물, 항산화제, 다핵, 우유, 관용, 도서관, 식선, 불포화, 형기, 아연화, 동전, 오수, 고도, 지방산, 플라보노이드, 소거, 식정, 농축물, 탄화, 위상각, 고농, 마취, 비누, 탄화수소, 마찰, 흡착제, 배소, 체크, 생활, 화법, 반결합, 식분, 정선, 방도, 활성탄, 정화, 자원, 스테아린, 암모니아, 마토, 아세톤, 산물, 수용액, 메타, 증류, 매질, 그래프, 지연, 중화, 립도, 투입, 회수, 용매, 공업, 능력
#16	부지, 보람, 수유기름, 발룬, 방광, 가야금, 암심, 피부색, 식도, 교식, 파소, 소찰, 밀림, 마그, 올림, 검과기, 극기, 내식, 도관, 얼굴, 동물체, 용대, 하천, 칼날, 배전선, 종식, 채광, 반자동, 가시광선, 광량, 증분, 광체, 마스크, 원색, 내압, 수합, 기반, 접지, 전개, 넷, 새김, 변두리, 추적, 반송과, 움직임, 성기, 다량, 토막, 동화상, 우연, 정합, 소음, 침혈, 변위, 음향, 계단식, 실내, 경계, 모형화, 보정, 분해능, 응답, 위상, 채취, 공구, 교수, 대기, 공학, 주파, 수법, 수학, 구역, 대역, 최적, 검출, 결면, 선택, 내부, 신속, 대상
#17	창틀, 쌍구멍, 부서, 나무버섯, 저광, 포위, 사중, 아스파라긴산, 분층, 채광법, 압접, 굴장, 대구경, 파식, 충격과, 뽕나무, 쌍축, 토인제, 측량, 소용, 단벽, 식숙, 급경사, 강염기, 광장, 자루, 물빼기, 전기선, 천공기, 단식, 붕괴, 환경, 카프, 채굴, 갱도, 좌표, 채탄장, 반사경, 잔주, 절삭, 하반, 글루타민, 식채, 올리, 동발, 위주, 중단, 탄층, 파쇄기, 내리, 채탄법, 발과구멍, 전통, 활석, 공동, 산생, 심부, 선행, 묶음, 타원, 덩어리, 함유량, 발과, 방출, 굴진, 동체, 의료, 무연탄, 이온, 한쪽, 개별, 준비, 초기, 반복, 배치, 간격, 수명, 조건
#18	주낙, 다공관, 극방, 아르기닌, 폭발과, 동위체, 탐폰, 김기, 막지, 석모, 강유전체, 고보, 왁스, 전지용, 연합, 적심, 역기, 고출력, 역행, 종속, 태부, 도폭선, 지관, 모체, 세트, 해침, 도리, 권회, 검사기, 시험기, 전선, 연선, 이동용, 문자, 동온, 선법, 기폭, 소선, 용자, 체제, 피리, 잉크, 항공, 극성, 수지관, 코드, 플라, 흑색, 폭발, 류화, 전법, 분기, 심선, 지수, 연료, 기수, 통식, 휘발유, 수소, 축전지, 추출물, 원천, 생석회, 에타, 인쇄기, 모선, 인쇄, 압착, 화장품, 현장, 려학, 재생, 시료, 차단, 증폭, 전원, 세기, 특성
#19	록음, 다면, 경도계, 빌리루빈, 김치, 온침, 만화, 염단, 머리칼, 자화수, 촉가, 흔들이, 제초기, 프리즘, 표면장력, 식거, 혼연, 계주, 기슬, 용점, 공우유, 청곡, 분장, 시험지, 치즈, 려기, 키나제, 사관, 발포제, 버터, 염소젖, 지렁, 강정, 인조, 가시오갈피, 세척액, 인진, 편집기, 효소제, 영양제, 영화, 황동, 고전압, 대기압, 채용, 해체, 편성, 다매체, 포도당, 음식, 조종기, 바이트, 입돌, 혈전, 알약, 가공품, 응결, 살균, 질소, 라크, 절연, 가로, 약재, 양금, 평행, 왕복, 운동, 포장, 농도, 함량, 고려, 용해, 공장
#20	붕합침, 갖풀, 처마, 바얀, 연마지, 너삼, 상강, 주패, 색기, 마이크로폰, 사이막, 막대, 뼈대, 피막제, 반주, 면지, 테레프탈, 알키드, 천연물, 유리실, 차축, 고회석, 지붕, 놀이, 상자, 글리, 다짐기, 무용, 식화, 판정법, 음악, 보호막, 부활제, 중관, 현수, 지단, 니스, 폭시, 전자석, 돌출부, 인조석, 내수, 기름통, 내유성, 길굴, 향암, 고강, 건축, 광택, 무기질, 천정, 수용성, 유화, 테두리, 용수철, 폭약, 다기능, 화면, 피복, 동물, 영구, 고온, 보존, 손상, 공사, 물리, 감부, 공급, 해결, 부분, 구성
#21	홍골, 무릎, 수내, 견운모, 슬개골, 골반, 지문, 쌍철, 상박, 대퇴, 단관, 심식, 전혈, 절건, 정복기, 하퇴, 결식, 절용, 기류, 격식, 체부, 홍채, 구식, 파와, 다발, 병기, 풍식, 수평선, 상체, 형조, 물매, 경부, 유도자, 체질, 비상, 강선, 고정기, 동형, 통채, 분류, 삼각형, 정리, 창외, 난알, 정복, 골절, 탈구, 장관, 시험관, 비레, 응고, 절체, 식별, 개방, 관절, 미분쇄기, 삼입, 고혈압, 육조, 하부, 외과, 유도로, 분쇄기, 인공, 저주파, 관련, 원통, 확장, 교반, 방향, 보장
#22	솜판, 맞단추, 올리고당, 환형, 선처리, 반식, 마석, 강방, 합조, 포용, 단결, 자작식, 흐름선, 진공계, 소식, 연수, 식모, 격기, 클로렐라, 고정화, 석재, 식층, 저작, 결심, 채택, 보철, 제화, 소경영, 전력망, 정판, 합부, 텍스, 열화비닐, 문양, 관측, 투과성, 팽윤, 정련, 균형, 분산제, 종합, 상관, 팽창, 품질, 분석법, 경영, 회로망, 려지, 결합제, 습기, 박막, 침강, 접착, 진공, 축산, 예측, 구강, 이송, 계수, 담보, 정지, 강철, 완전, 유리, 제고, 실수, 일반, 기업, 기계
#23	후두경, 선방, 서체, 안남미, 광소자, 체지, 페트, 행렬식, 화월, 어군, 전가, 보도, 라지오, 정향, 광이, 용미, 투영, 선대, 교량, 단광, 무정, 단알, 휘도, 성구, 전차선, 평로, 산기, 이상, 금융, 백금, 프람, 변색, 탐지기, 강심, 동기식,

	상식, 온습, 궤도, 조합, 제진, 천연색, 묘사, 압모, 용출, 균질, 액정, 전구, 편집, 단락, 서고, 중소, 집적회로, 블록, 메터, 크로, 차원, 발광, 전용, 규모, 현시, 보충, 구동, 표시, 회로, 소자, 원료
#24	투과막 , 에페드린, 정향나무, 시아누르산, 마광, 석침, 베르베린, 달력, 소결광, 연두부, 타우린, 마황, 산동, 쌍금속, 정특성, 도라지, 매혹, 물들이기, 원삭, 응결제, 반사식, 연진, 크릴, 폴리아, 전자시계, 셀렌, 닐론, 주체, 주파수계, 합제, 프로판, 전로, 금광석, 정치, 이소, 산암, 크롬산, 사포닌, 디페닐, 용제, 송출, 청화, 붕소, 명반, 메달, 모니, 염산염, 시안화, 인삼, 염기성, 침출, 착화합물, 약초, 정적, 제련, 불화, 희토류, 클로르, 립자, 장입, 주성분, 추출, 진행
#25	연관 , 불길, 혈압, 상가, 역상, 형연, 탐침, 병렬식, 계분, 혈당, 식부, 식적, 맥과, 용지, 선전, 초단과, 가시, 화구, 고진공, 미움, 자화, 강자성체, 정모, 오존, 형광, 송장, 마장, 식회, 유전체, 선기, 카드, 시편, 접철, 분석기, 원자, 흡광, 광도, 음료수, 합금강, 현미경, 광도계, 기계식, 분광, 스펙트르, 전과, 내림, 병합, 특수, 관성, 간접, 날개, 경화, 극소형, 주사, 평면, 마당, 흐름, 표면, 정량, 발생, 속도
#26	푸마르 , 코란 , 전철기 , 배위, 불소치약, 착공기, 고치, 적정, 세리신, 일자, 자소, 무식제, 과일, 첨가법, 살결, 화액, 날염기, 로시나, 용선, 중탄소강, 폴리에틸렌글리콜, 미백, 용린, 정머리, 연화, 염료, 바나, 중심잡이, 용착, 펩티드, 도장, 윌프, 청색, 형석, 선광, 알긴산, 젤라틴, 화성, 불꽃, 제제화, 석회석, 분자, 크림, 가수, 혼련, 용광, 산염, 산화물, 고장, 생체, 검증, 투명, 산성, 부식, 준위, 조절기, 피부, 마모, 전극, 용액
#27	디페 , 열물, 독술, 비닐에테르, 메트로니다졸, 당뇨병성, 염화칼리, 관법, 공진기, 질염, 이소부, 거액, 리오, 아스피린, 양화, 세포내, 발포, 감광, 담낭, 공중합, 라텍스, 타액, 리모, 정보처, 말레인, 전기석, 금형, 프탈산, 인쇄판, 강괴, 리프, 조증, 끼움, 라트, 스티롤, 구면, 혈장, 밀봉, 정부, 비닐, 양성, 아크릴, 피막, 평판, 정맥, 초산, 반경, 수지, 소형, 변화
#28	저체온 , 착수 , 이음관, 고구마, 오갈피, 채탄기, 귀침, 늘산, 용구, 재순, 투관, 주진, 잎담배, 값표, 마른국수, 인구, 탄식, 사이다, 엮음, 흥벽, 승모판, 무거리, 다수, 제동편, 판막, 이음목, 소생산, 객차, 창기, 황백, 용역, 누에고치, 제동기, 재봉, 환식, 접시, 이름, 수변, 동회, 제동, 구기, 봉합, 유압식, 원추, 소화기, 건조기, 부하, 충격
#29	접촉렌즈 , 불소, 등식, 양말, 물소, 독제, 시아닌, 트리아졸, 레인, 분광법, 슬폰, 프로필렌, 불화물, 화장비누, 노은, 비석, 조압, 수두, 전기분, 혈중, 유도식, 결정법, 연성, 옥시드, 도체, 산화아연, 공수, 분극, 수조, 에틸아민, 무기염, 친수성, 정체, 벤질, 푸리, 프탈, 비색, 전하, 기포, 혈액, 포화, 기공, 도포, 부착, 소독, 세척, 크기
#30	기름떡 , 개털, 모아, 군단, 조구, 단스, 탄부, 견사, 망점, 색소지, 용스, 상비, 직석, 용균, 비스무트, 화마, 비소, 연제, 물중, 약용, 케라틴, 과산화, 폴리브덴, 개폐, 분별, 청정, 바탕, 무늬, 단부, 착체, 물가, 세리, 가죽, 자갈, 상압, 압출기, 수산, 레몬산, 크류, 불순물, 수산화, 전처리, 곡선

표 23 TFIDF 상위 키워드가 포함된 클러스터의 구성키워드 현황 (제1시구간: 2012년~2018년)

클러스터 No.	클러스터 구성키워드 목록 (굵은 글씨 키워드는 TFIDF 상위 키워드)
#1	<p>그룹, 주장, 교원, 광고, 전승, 기화기, 화일, 광대, 중실, 프레임워크, 서까래, 하류, 유희, 정미기, 시험, 량조, 식체, 십사, 일류언, 통실, 원도, 분색, 송전선, 전송망, 학생, 소음, 결핵균, 계발, 금안, 동의어, 로밍, 막걸리, 부하분산, 사별기, 상수, 수업, 시간표, 시청각, 역구, 영농, 용미, 입기, 장모, 전해로, 종감, 지그, 화입, 교재, 도서관, 물자, 배포, 상식, 상업, 시청, 전자사전, 탁상, 회계, 공유, 특징, 지도, 공동, 과부하, 일감, 취입, 동통, 망구, 수변, 실력, 안드로이드, 재단기, 저락, 전화망, 중조, 칠판, 필기체, 학술, 폐지, 시기, 번역, 경제, 도표, 서고, 수식, 용련, 차용, 카드, 번호, 전력계, 골격, 동생, 등록, 연락선, 망통, 예산, 외국어, 육조, 음체, 전력망, 전담, 텔레비존, 도대, 호출, 대화, 음악, 기호, 다매체, 음성, 회의, 영상, 확장, 내용물, 흰쌀, 강조, 검증, 게놈, 공중, 내시경, 매체, 방화벽, 입관, 전자회로, 중계기, 장악, 투명, 송신, 쌍방향, 용어, 중첩, 행정, 사령, 사진, 회선, 분배, 구내, 기계실, 기지국, 무선망, 액정, 역변환, 판형, 신식, 세대, 식당, 영어, 상부, 완충기, 학습, 도시, 크류, 가변, 모듈, 개인, 규약, 맥주, 미분, 사금, 지리, 직결, 송수신, 철도, 가상, 운행, 선로, 유선, 렌트, 종체, 부호, 경영, 실행, 조종기, 특수, 매물, 유전, 지령, 보안, 기조, 화상, 경보, 부하, 교환기, 의학, 편집, 경로, 지역, 병렬, 업무, 전문, 립상, 응용, 열람, 지휘, 인식, 검색, 교환, 촬영기, 초음파, 방송, 지능, 최적, 통신망, 전화, 말단, 웹, 사이, 통신, 환경, 감시, 봉사, 유도, 확립, 개발, 선택, 분산, 실험, 기지, 고속, 원격, 교육, 실시간, 시간, 자료, 전자, 작성, 구축, 권보, 보호, 설비, 기술, 이동, 다음, 컴퓨터, 소편, 기관, 알고리즘, 실현, 관리, 구성, 그람, 결합, 프로, 지원, 체계</p>
#2	<p>립상, 플라본, 견방, 기피제, 너삼, 당노병성, 발쪽, 방적사, 복방, 부고, 이소니아지드, 자루, 정용, 질염, 과일, 미나리, 사탕수수, 황경피, 임신, 경장, 과일나무, 노야기, 메티오닌, 물결, 물재, 밀쌈, 바꽃, 소거, 약산, 일식, 장관, 취기, 파라메시움, 휴면, 약초, 급성, 결핵, 로줄, 로즈, 산화광, 성취, 식지, 판크레아틴, 하늘타리, 해충, 난알질, 유제, 장염, 키트, 기분, 벌레, 복합제, 산나, 섬유막, 식변, 위염, 위장, 취장, 치질, 플라보노이드, 한증, 극초단파, 피부병, 고지혈증, 제진기, 중력, 관내, 내림, 노은, 동맥경화증, 쇠줄, 연고, 이소, 현수, 수액, 레트, 가류, 경구, 내열성, 마비, 윌프, 역삼, 당노병, 정맥, 생장, 저주파, 전기석, 고순, 정유, 크로, 베르베린, 배설물, 조화, 전이, 생리, 병합, 비타민, 우림, 아연, 자극, 간염, 보온재, 간장, 신경, 찌끼, 체크, 농약, 엑스, 약제, 뿌리, 위생, 집집승, 축진제, 농작물, 약물, 약제학, 장애, 마토, 무기, 용매, 그래프, 아미노산, 동물, 구체, 진단, 신속, 유기, 추출, 작용, 주사약, 고려, 약조, 먹이, 종이, 질병, 성물, 예방, 활성, 사용, 원료, 조성물, 처리, 치료, 생산, 포함, 방법</p>
#3	<p>날개바퀴, 네뿔, 기뢰, 분마, 선전, 금관리, 도계, 마발, 감진기, 밀기, 자수기, 재회, 중대, 한식, 행체, 시설물, 통풍, 강체, 계합, 고치실, 과속, 메탄, 면식, 발창, 양복저고리, 중돌, 탄차, 주회, 축합, 강기, 거울, 구용, 권선기, 남자, 물랭, 산화동, 중심축, 축구공, 해양, 혼용, 흡출관, 저항기, 추진기, 관차, 구기, 전술, 단추, 걸개식, 배구, 부립, 안티몬, 주행부, 칩통, 보링, 운동학, 자리표, 주축, 파기, 광차, 구분, 용주, 적색, 주민, 청색, 밀개, 심지, 전화료, 좌표, 지형, 구면, 바퀴, 급전, 발진, 자려, 견인, 덮개, 용무, 객화차, 사판, 연기, 활차, 접점, 비행, 내연, 식기, 식전, 용수철, 차바퀴, 차축, 통풍기, 모멘트, 급수, 발판, 자성, 재봉기, 차식, 제동, 변동, 제진, 짐승, 주기, 각기, 단상, 부틸, 중기, 라이스, 완충, 저온, 승강기, 체신, 단축, 썰기, 동기전동기, 버력, 주변, 균형, 영구, 화력, 직렬, 가동, 비동기, 접촉, 자석, 지구, 풍력, 탄광, 안내, 기관차, 개조, 일반, 머리, 랭카, 구멍, 안전, 발전기, 전동기</p>
#4	<p>웅축기, 대다수, 장음, 탄화물, 연단, 오물, 농화, 알기생벌, 침지, 더운물, 랭매, 격식, 곤로, 근전도, 목화솜, 복식, 부엌, 연용, 중압, 침식, 불판, 수면, 쌀겨, 금속관, 등기, 망원경, 불입증, 산불, 천막, 천체, 취사, 효기, 러수, 난로, 당과, 불길, 수관, 시력, 실감기, 안작, 흡착기, 단조, 방사형, 부압, 상승, 손가락, 주입식, 기밀장치, 낙지, 내막, 동해, 로봇트, 심리, 심전도, 적관, 퍼짐, 다짐기, 신축, 요동, 위험, 유발, 조약, 중온, 진기, 장기, 어장,</p>

	곰팡이, 맥과, 착염, 큰물, 규모, 골조, 기류, 도면, 수역, 염색기, 자궁, 채식, 예보, 비등, 기변, 청소, 물감, 식분, 원심분리기, 톱날, 송풍, 강의, 굳기, 합제, 예측, 촬영, 관성, 암모니아, 혈관, 력학, 모형화, 호흡, 리기, 주유, 램동, 검사기, 산소, 계면, 불분쇄기, 고압, 조선, 용광로, 미분쇄기, 파형, 열간, 종자, 가정, 검출, 통합, 회전식, 활성제, 성질, 고온, 진동, 분리기, 원통, 보이라, 중심, 증기, 로라, 순환, 재생, 날개, 수직, 휴대, 과정, 회전, 평가, 자동
#5	추환, 피뢰기, 음식물, 칠물, 건구, 단변, 열화, 상호, 정석, 붕대, 흡음판, 질화붕소, 교회, 로켓트, 무대, 석회암, 아크, 열변, 합형식, 호닝, 피마주, 결체, 방수재, 착공, 도로포장, 밀감, 인조, 우개, 립방, 애자, 재생고무, 코발트, 황동, 빨래, 진공로, 삼바리, 우황, 예술, 탈류, 극장, 벽판, 비결정, 성판, 쌍금속, 용융물, 증창, 동관, 산화아연, 이음줄, 추론, 화강석, 파고무, 계수, 납땜, 석기, 진주암, 체용, 아스팔트, 내산, 깊이, 유효, 착색, 실레, 시추, 메움재, 부품, 성체, 약기, 열가소성, 복사, 불나사, 세수, 작품, 주름, 방부, 포화, 비집, 축식, 경소, 외벽, 석고, 연마석, 폴리스티롤, 결합제, 금강석, 미술, 질석, 경량, 가성, 변성, 기와, 대리석, 보호제, 전처리, 암석, 피복제, 화물, 타일, 가압, 발포, 응력, 접착, 용접봉, 건식, 품질, 방안, 수장, 카프, 소다, 연재, 갈탄, 마그네, 비누, 외부, 소결, 자동차, 모양, 배합, 표면, 형성, 성분, 결정, 효과, 제작
#6	고도, 맨드라미, 발버, 카비르, 효소제, 마요네즈, 아스타, 유채, 피오즘, 금광, 기관지염, 들깨, 병아리, 직감, 에스키모, 원종, 전염성, 양배추, 지방산, 감별, 강원, 거부지, 공수정, 동승, 리진, 미꾸라지, 장막, 카르복시메틸, 콩나물, 궁궁, 뇌척수액, 불로초, 참깨, 털가죽, 감자, 지렁, 매기, 망치, 탈산제, 동결, 계경, 두부, 모재, 소금발, 수화제, 심부, 카르복실, 타개, 평양, 향암, 핵산, 홍당, 무우, 은행잎, 코스모스, 불포화, 골재, 관류, 농업용, 병저, 향성, 혈전, 교감, 대상물, 정액, 콩우유, 동화, 배풍, 칠산, 보온제, 애기, 지반, 살리, 농마, 셀렌, 점가, 화초, 황금, 스피롤리나, 운반제, 껍질, 살균, 살초제, 식품, 알갱이, 가금, 키토, 주입, 선별기, 파쇄, 영양액, 건조로, 건강, 추출물, 체제, 논벼, 돼지, 분무, 강화, 용해, 육성, 세척, 원소, 미량, 가루, 강냉이, 식물, 품종, 첨가, 혼합, 적용
#7	투영기, 단선, 눈치, 빙상, 송구, 심판, 싸이, 장중, 전식, 레스, 활쏘기, 소선, 약수, 광관, 놀이, 동채, 모형비행기, 모형항공기, 바구니, 박기, 부담, 사격장, 추진축, 나비, 수구, 구획, 소독기, 승용차, 열림, 중관, 기피, 도색, 락하, 병리, 쇼크, 안검, 용려, 잉아, 제화, 해면, 표본, 단련, 단식, 출발, 곤충, 근전계, 눈알, 비행기, 정지, 의료, 비상, 록화, 교예, 도비, 모방, 수기, 체조, 보존, 경기, 순간, 전자석, 탁구, 수영, 활동, 고전압, 사격, 배수, 장력, 정류탑, 칩전, 거리, 광물질, 오존, 목표, 교수, 함수, 야외, 개식, 건축물, 기재, 흐름선, 도구, 폴리비닐, 선수, 발생기, 구동, 훈련, 섬유, 무선, 능력, 알콜, 모의, 운동, 분석
#8	상박, 하악, 글자, 고풍줄, 두통, 새우, 승모관, 퇴색, 골반, 금속관, 복구, 근사, 넓적다리, 빗장, 식염, 용담가, 장구, 전박골, 준어, 열레, 갈구리, 경부, 정자, 드레, 천연색, 이산화, 돌기, 발바닥, 선용, 염소수, 용개, 울타리, 이후, 조영제, 칩골, 탈선, 정합, 복부, 송신기, 어구, 종식, 풍차, 대퇴, 나사못, 무릎, 받침틀, 야전, 온열, 용약, 증강, 안테나, 살충제, 중계, 안마, 이산화염소, 풍식, 경추, 극기, 만능, 전방, 경피, 대퇴골, 안강탕, 조사, 침포, 렌즈, 어로, 체부, 초립, 치과, 부자, 관절, 고정기, 바깥, 개방, 척추, 사진, 소화, 창기, 기용, 접이식, 카메라, 수신, 골질, 감압, 자원, 창외, 고정, 고체, 주성분, 수술, 작업, 도입
#9	라돈, 화성, 용인, 공기름, 피치, 노루발, 바나, 박관, 비대증, 섬광체, 열분석, 염록, 탈염, 팽창제, 편직물, 명판, 방사능, 자화수, 흥곡, 탈수, 미안, 질화, 검측, 글리콜산, 도자, 돌소금, 염수, 유선중, 참나무, 해제, 극판, 전사, 수화, 전해액, 삼지구엽초, 식모, 싱아, 탄질, 동분, 수질, 유가, 전위선, 탈착, 연산, 절임, 양극, 화제, 기축, 활성탄, 연축전지, 정기, 증독, 정전기, 비대칭, 색소, 소금, 음극, 전해질, 충전기, 자화, 정화, 흡착제, 세균, 광학, 다기능, 원유, 전해, 전해조, 수용성, 유색, 환원, 수용액, 산화, 축전지, 보조, 병원, 남새, 열처리, 금속, 기능, 제품, 리용
#10	옹벽, 습기, 빵틀, 제초기, 단열재, 망모, 초음속, 방선균, 형석, 경사면, 강식, 관수, 눈약, 니페디핀, 동종, 바스, 약포, 연효성, 영모, 용동, 참미역, 금정, 재처리, 법랑, 휴즈, 계분, 그릇, 기린, 나무모, 레기, 용접, 지효성, 나크,

	결제, 교차, 송출, 청소기, 굴식, 독제, 물소, 방울, 용고, 크시, 메탄가스, 기습, 유기질, 장용, 로페, 분무기, 과전류, 청화, 제철, 내화, 응축, 건재, 미립, 온수난방, 뇌혈관, 고층, 보온, 석회, 흐름식, 양식, 제련, 중앙, 기식, 정전, 미광, 조립식, 알약, 투입, 항균, 블록, 비료, 소성, 정광, 카리, 바다, 차단, 성형, 계통
#11	제형, 각종, 주행, 투석, 고깔, 잔교, 웨도, 방과제, 축전, 갱실, 부꼴, 속채, 음뚝, 접촉렌즈, 칩목, 벽지, 초미분, 능동, 부두, 고성기, 골조식, 발대, 부푸막, 종모, 폴리브덴, 기모, 비로, 식신, 점화기, 반자동, 사출기, 중심잡이, 제한, 장화, 합형, 단독, 연질, 뚜껑, 율환, 추적, 사식, 이류, 집중, 공기압, 차지, 립도, 지식, 장약, 정압, 형기, 다량, 조속기, 온수, 걸음, 부재, 방조제, 조형, 공용, 식자, 편직, 철길, 율환유, 사탕, 류화, 공법, 마감, 삼입, 바늘, 구간, 대기, 보수, 유압, 발파, 나사, 강철, 운영, 건설
#12	봉락, 칩수, 발효제, 배나무, 생균, 토끼, 박하, 식상, 취수탑, 단부, 마름, 병원체, 축벽, 식혜, 잣나무, 지기, 체세포, 훈제, 가배, 소나무, 향료, 접그루, 중후군, 흰생쥐, 논밭, 눈접, 수확기, 단통, 대상포진, 도루, 도루, 메라, 수두, 사과, 비루스, 관개, 사과나무, 사석, 양수기, 열풍, 관통, 메주, 수화, 검정, 수도, 유화제, 포진, 길굴, 물길, 맛블림, 동정, 주요, 무모, 질기, 프라이머, 생육, 지하, 클론, 물량, 열전대, 메기, 냄새, 무덤이, 타입, 예방약, 식초, 초지기, 혼합기, 포도, 작물, 조합, 유전자, 공사, 흡입, 온도, 공장
#13	소착, 송어, 칠색, 토사, 비석, 개편, 기계톱, 형단, 호형, 질연물, 스로, 용단, 조개, 취수구, 화체, 러지, 모기, 장점, 벌목, 수제, 이상, 통신선, 소호, 부직포, 색기, 케톤, 혼탁, 모자, 물정, 유입, 화기, 고정식, 배기, 은행, 폐가, 탐지기, 포르말린, 수문, 흡착, 무부하, 가스정, 광이, 부가, 기체, 불순물, 펩티드, 저열, 폭시, 양어, 탐지, 결합, 사슬, 주물, 밀도, 탄산가스, 권양, 조기, 차단기, 새끼, 용접기, 절삭, 이온, 광물, 천연, 저항, 첨가제, 방지
#14	유인, 용중, 보형, 패턴, 반원, 이판정, 정휘, 주유기, 짐관, 객체, 류속, 부망, 원직, 깔때기, 배정, 부력, 통수, 량식, 합성수지, 항만, 손잡이, 근전, 다짐, 침입, 빗살, 실리, 철도역, 화재, 계량기, 점성, 화차, 고농, 지수, 경보기, 입식, 취급, 계층, 저울, 식별, 변위, 무게, 착암기, 열차, 물고기, 차량, 계량, 동적, 기중기, 결수, 질량, 신경망, 표식, 실습, 용융, 모래, 운전, 자름, 종류, 요소, 형식, 변화, 액체, 수감
#15	기우, 올밤, 형지, 세리신, 시아닌, 산스, 산줄, 소식, 소제, 알키드, 야광, 올배, 용열, 인공바다, 저축, 형광체, 전파, 열복사, 거체, 소농, 용규, 정대, 지면, 참배, 충전물, 포도나무, 수압, 보존함, 자변, 프탈, 도막, 무기질, 소수, 폴리아, 화탄, 질소, 크릴, 도료, 알루, 행렬, 흡수성, 규칙, 산화물, 중유, 일산, 산화철, 공중합, 규산염, 버너, 수성, 외장재, 견딜성, 유탁, 숙천, 색감, 아크릴, 프레스, 가죽, 흡수, 칠감, 재료, 복합
#16	벽화, 경사판, 과체, 관구, 금전, 동도금, 목욕, 이단, 푸코, 라파, 방진, 모자이크, 다당, 마이크로파, 생합성, 단자, 여드름, 전기선, 침전지, 괴용, 길금, 증자, 과유리, 강괴, 곡물, 복기, 수건, 중금, 천재, 축삼, 통형, 쇠기, 유도가열, 살결, 오수, 원호, 괴기, 정선기, 오수정, 화장, 식련, 걸개, 피대, 다시마, 포집, 건조기, 속조, 중량, 단기, 교반, 권선, 난알, 류체, 노즐, 국부, 일치, 마찰, 압출, 중간, 용접, 수평, 건조
#17	호스, 시각화, 도조, 로친, 감쇠, 레이다, 분무식, 송수화기, 안구, 운전실, 저장고, 지표면, 식재, 계모, 비침, 씨야, 절식, 정리, 채탄법, 붕괴, 전면, 지시기, 마광, 선생, 엽록소, 유연탄, 상판, 채굴, 수신기, 현수식, 묘사, 온습, 전호, 습도, 계획, 채굴장, 돌출, 주사, 전동차, 발파구멍, 원추형, 대역, 투과, 플라, 곡면, 수학, 지하, 관측, 기상, 전화기, 채취, 위성, 런결, 걸면, 용량, 경화, 경사, 전류, 측정기, 차원
#18	중성자, 열전, 썰매, 양조, 김정일, 독해물, 반송과, 식음, 알뿌리, 염도, 잉크통, 조광, 지진계, 축류, 무심, 정화용, 수차, 편차, 도체, 불멸, 형수, 화분, 초고주파, 조명기, 흡수제, 가마, 분사식, 세척액, 극소, 열쇠, 증폭기, 확산, 김일성, 검출기, 연마반, 수위, 귀환, 특성량, 랭크, 손실, 잡음, 다중, 선반, 예비, 실내, 인쇄기, 에로, 도포, 신호, 암호, 순위, 치수, 토양, 분사, 흐름, 보관, 수자, 조건, 측정
#19	보도, 공기방석, 귀틀, 스마트카드, 알집, 치기, 팔식, 포장재, 다결정, 비지, 적고판, 신용, 다이스, 지함, 형성기, 물계, 중성, 환식, 금법, 만곡, 맞춤, 도금, 극성, 물통, 마대, 봉지, 원주, 유리병, 상기, 추진, 율환제, 포장기,

	벨트, 염증, 막장, 세척기, 토시, 사출, 타의, 추공, 이송, 굴진, 베아
#20	전기담요 , 양단, 외울, 명시, 본틀, 식문, 실타래, 발피, 철선, 재봉실, 접이, 형자, 형틀, 코드, 채점, 권투, 무정, 타원, 언어, 시험지, 인견, 형판, 타격, 대칭, 혼합형, 감기, 가로, 여단이, 폴리에스테르, 전체, 염색, 빛전지, 원천, 변형, 충전, 원형, 태양
#21	침탄 , 공기포, 복극, 채종, 지변, 꽃가루, 도마, 솜털, 전해수, 스프, 잡종, 주리, 갱수, 기압, 보행, 날림, 무독화, 뽕뿌라, 뽕누에, 식포, 이적, 자망, 수증기, 기계손, 산성, 집기, 상자, 자유, 잔사, 격막, 실린더, 아래, 보트, 정상, 상태
#22	코더 , 밀봉, 특대, 오이, 부루, 겹유리, 제동편, 풋고추, 궤도전차, 수경, 구형과, 차체, 고추, 여름, 탄성판, 분화, 형재, 런결부, 무궤도, 무궤, 규소철, 전차, 단열, 창문, 정밀, 목재, 온실, 축진, 폴리염화비닐, 크기
#23	빛중합 , 속층, 폴리술폰, 형금, 미정, 불투수성, 장법, 채용, 보습, 고성능, 소결법, 실리카, 유전체, 중합물, 같이, 히알루론산, 연부, 중화, 구강, 대전, 액상, 중공, 침투, 방수제, 진제, 사기

제4장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방안

I. 서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그 직후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대화 국면으로 관계가 전환되면서, 사회·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등 남북화해·협력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구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남북대화를 이어가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통일부·문체부·문화재청 등은 문화, 체육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 활성화를 주도하였다. 평창올림픽 이후, “2018 아시아경기대회(8.18~9.2, 자카르타-팔렘방)”, “남북통일농구대회(7.3~6, 평양)”, “남북 예술단 상호 방문공연” 등을 진행하고, 민·관 합동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18.10.4~6, 평양)를 개최하는 등 당국 간 합의 이행을 통해 남북 간 화해 및 교류협력을 확대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지자체 교류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국제유소년축구대회(8.10~19, 평양)”, “민화협 연대모임(11.3~4, 금강산)”, “아태 평화번영 국제회의(11.14~17, 고양)”,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11.15~18, 평양)”, “금강산 20주년 남북공동행사(11.18~19, 금강산)” 등이 개최되었고, “개성만월대 공동발굴 사업(10.22~12.10)” 등 중단된 교류사업이 재개되었으며,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 재개가 준비되었다.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 분야에서는 2020 도쿄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 공동 진출, 2032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등 당국 간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축구대회 등 민간차원의 체육교류도 적극 지원하였다. 역사·문화협력 분야에서는 개성 고려 문화유산 발굴, 남북공동유물복원실 설치, 태봉국 철원성 발굴 협력 등 추진되었다.

통일부·기재부 등은 법·제도 개선을 통한 교류협력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추진, 남북관계 진전을 반영한 경험·교역기업 보험제도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통행·통신·통관 개선, 지식재산권·산업표준·경제·통계 분야 협력, 북한인력 역량개발, 인구조사사업 등 기타 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통일부·기재부·문체부·국토부·산업부 등은 남북경협을 위하여 공동조사·연구 등 철도·도로 연결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당국 간 협력을 단계

적·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을 노력하고 민간·지자체 경험사업 준비를 위한 대북접촉 및 방북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협력 차원에서 통일부·국방부는 인사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 대비 전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인사가족 초청·위로행사, 영상편지 제작, 디지털 박물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통일부·외교부·법무부는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 유엔 총회·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속 및 민간단체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한 정책 설명, 의견수렴 등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 장애인 권익 증진 국제세미나」, 보건의료 협력, 삼림분야 협력 등을 추진하였다.

지식재산권 남북교류협력, 특히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은 남북한 간의 산업협력과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거나 북한의 기업이 남한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상표나 특허, 산업 디자인 등의 등록과 보호를 통해 남북경협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전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경협 과정에서 북한에 진출하게 되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제도가 불비한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북한 내의 권리가 불안정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우리 기업이 특허나 상표를 북한에 출원 및 등록할 수 없어 중국 등 외국 기업이 북한에 미리 출원 및 등록하여 우리 기업의 온전한 북한 내 사업 환경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표권의 경우에는 보호기간 만료 시 갱신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그 권리가 확보될 수 있어 권리의 선점이 매우 중요하므로 상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상표나 특허권을 침해한 제3국의 상품이 북한에 유입되어 유통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불측의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심지어 북한에 의한 우리 기업의 상표나 특허 침해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학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제도가 불비된 상태에서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외국기업에 의해 선점된 산업재산권 간의 이익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재산권 제도에 대한 당국 및 민간 차원의 인적, 물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II.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 현황⁵¹⁾

1. 남북 산업재산권 관련 당국 간 협의 경과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한 당국 간 협의는 1990년대 초에 개최된 남북고위급 회담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91년에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제16조는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고 규정하였다.

남북한 당국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행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합의하였으나,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 동 공동위원회의 설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제1차 정상회담의 개최 등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2000년에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는데, 동 합의서의 제1조 제1항에서는 “투자 자산”의 정의에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식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를 포함시킴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합의하였고, 동 합의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남북관계발전예관법률’에 따른 효력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2003년 12월에 개최된 ‘경협제도 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는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법령 및 규정들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고 산업재산권 문제도 계속 협의해 가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한 당국 간의 협의는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의 상황 전개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저작권의 교류협력은 사회문화협력의 틀에서 협의되고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은 경제교류협력의 틀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가 상당기간 경색국면에 빠지게 되면서 후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등 일련의 남북한 합의 사항 이행 과정에서 남북한 철도 연결 등 대규모 경협 추진 과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산업재산권 분야의 교류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남북한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 산업재산권 문제를 바라보기 보다는 당장 눈앞의 경제협력 사업의 추진에 급급한 남

5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남북한 지식재산 법제도의 조화에 관한 연구」,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114-116면.

북경협 추진의 실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의 법적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북한측이 저작권 보호 문제와 마찬가지로 산업재산권 문제에도 정책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민간 차원의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 현황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제도가 불비한 관계로 남북한 간의 상표 및 특허의 남북한 직접 등록은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국제기구 루트를 통한 우리 상표권의 대북 등록이 시도되었으나 성사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의 대남 상표 등록 신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국제적 루트를 통한 등록절차인바, 남북한 모두 파리협약, PCT 조약, 마드리드(상표) 조약에 가입되어 있어 특허와 상표의 상호 출원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북한의 거절로 등록 사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기업은 북한 직접 출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등록 절차에 따라 상표 등의 북한 등록을 시도하거나 중국 등 제3국 우회 등록을 시도하고 있으나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 상표 등록의 거절 사유로 ‘선등록 국내 상표와 유사’하다는 점 등 일반적인 거절 사유를 제시하고 있고 있다. 한편, 북한 상표법 제21조제10호는 ‘북한을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바, 동 사유에 의한 남한 상표 등록 거절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북한 당국은 한 국내 기업의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한 거절 사유로 ‘북남경제협력법의 소관 사항’ 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항으로 보여진다.

현재까지 마드리드 출원 방식에 따라 우리 기업 등이 북한에 총 58건의 상표 등록을 출원하였으나, 심사 미착수 1건을 제외한 모든 건이 거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사례 : 저작권 분야의 과도적 제도화 사례>

□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 설치

북한은 2001년 저작권법을 제정하고 2003년 베른 협약에 가입한 이후 2004년 4월 저작권 사업을 대내외적으로 총괄하는 기구인 저작권 사무국을 내각 산하에 설치하였다. 저작권 사무국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북한의 저작물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의 출판지도국 판권처에서 관리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저작권 사무국의 설립 목적에

대해 북한은 “저작권 관련 사업을 국제적 수준에서 벌어나가기 위한 사업체계를 정비해 왔으며, 그 결과 저작권 사무국이 발족되었다” 고 밝히고 있으며, “그동안 외국에서 북한의 출판물이 무단 복제되는데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했다” 고 평가하면서 “저작권 사무국의 개설로 저작권 양도계약의 심의와 승인이 일원화되었다” 고 밝히고 있다.⁵²⁾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 설립에 대해서는 북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당사자는 물론 저작권 승계자와 관련된 문제, 북한에서 흔히 있는 공동 저작 또는 단체 명의 저작물에 대한 계약 주체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남북한이 합법적인 저작권 교류를 수행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⁵³⁾ 북한 저작권 사무국의 설립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민간 교류협력을 활용한 간접적 저작권 확인 제도 구축 사례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은 2005년 3월 남한 정부에 “저작권 사무국은 저작권자의 승인과 저작권 사무국의 공증확인서가 없는 한 남한에서의 우리 저작권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된다는 점을 알립니다” 라는 내용의 ‘저작권 교류 조건에 관한 통지’ 를 보냈으며, 통일부는 이러한 북한의 통지에 대해 북한 당국의 입장 표명임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하여 남북 저작권 교류업무를 추진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⁵⁴⁾ 남북 저작권 교류 참여 민간기관과 단체에 대해 북한의 각종 저작물을 남한 내에서 출판, 상영하는 경우에는 북한 저작물의 반입 또는 남북협력사업 신청 승인시에 북한 저작권자의 승인서 및 저작권 사무국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라는 안내서를 발표하였다.⁵⁵⁾

□ 평가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남북한 저작권 교류에 있어서는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의 확인 절차가 비록 당국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는바, 이는 남북한 저작권 교류협력 체계의 정립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2) 연합뉴스 2004. 11. 29.자 기사

53) 신현욱, “북한의 저작권 전담기구 설립에 따른 남북저작권 교류의 환경변화 연구”, 현대북한연구, 12권 3호, 2009, 북한대학원대학교, 제122면

54) 통일부 보도자료, 2005. 4. 19.자

55) 통일부 공문, 2005. 4. 20.

III.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및 조화 관련 해외사례

1. 독일

한반도와 독일 간에 놓여있는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통일은 그것이 평화적으로 달성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서 연구·분석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통일 이후 독일의 통합과정은 그것이 잘 진행되었건 못되었건 간에 우리에게서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독일의 법치국가 원리에 따른 평화적 통일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독일 통일은 종전 이후 1990년 통일까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 과정을 거쳤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통일을 위한 동서독의 교류협력은 “하나의 독일”과 “단일 국적” 원칙에서 표현되듯이 동독과 서독을 넘어서 전체로서 하나의 독일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도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사회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한 바 있으며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확대 발전된 경험을 갖고 있다.

독일통일의 과정을 보면, 독일통일이 구서독기본법(제23조 편입조항)에 의한 구동독의 서독연방에로의 편입통일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동·서독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평화적 통일을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서독은 통일독일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합의의 법적 기초로서 이른바 「국가조약」(Staatsvertrag)을 체결하여 화폐·경제·사회통합을 이룩하였고, 「통일조약」을 체결하여 정치·법률 제도통합으로 전반적인 독일통일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통일조약은 동서독의 법적통합을 본격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양국 간 법적 동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통일조약이 발효되는 순간부터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라는 국가는 소멸되었다. 동·서독의 통일은 통일조약 제1장에서 규정한대로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모든 편입과정은 이 조약에 따라 진행되었다.

서독과 동독의 산업재산권 통일화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⁶⁾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서독과 동독이 서로 내용이 다른 산업재산권법률을 가지고, 독자적인 특허청에서 각각 권리부여를 한 단계이다.

56) 윤권순 외,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추진 방안」,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2004, 36-38면.

57) 이길상, 동·서독의 산업재산권 제도 통일, 지식재산 21, 40호, 1996, 24면

두 번째 단계는 파리협약에 따라, 서로 상대방에 대한 특허를 대리인을 통해 출원과 등록을 허용한 단계이다. 따라서 동서독은 자국의 국적을 가지고 상대방 국가의 대리인을 통해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단계는 서독과 동독이 상대국의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자국의 대리인이 직접 상대국의 특허청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것은 동독과 서독이 동시에 합의한 사항은 아니고, 서독이 일방적으로 동독에게 양보를 했으며, 동독의 경우 공산정권이 붕괴되고, 통일되기 직전인 1990년 3월 21일 대리인법 규정을 서독과 함께 변경⁵⁷⁾하면서 허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네 번째 단계는 서독과 동독이 특허법등 산업재산권 법의 내용을 일치시킨 단계이다. 이것은 동독의 정권이 붕괴된 후 동독이 서독에 맞게 특허법은 1990년 6월 26일 개정함으로써 이루어 졌다. 이때, ‘경제특허’라 불리는 북한의 경우에 발명권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는 통일이 됨으로써, 통일조약에 따라 1990년 10월 3일 자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모든 법 규정들이 구 동독지역에서 발효되었고, 동시에 구 동독의 모든 법규정들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⁵⁸⁾ 이에 따라, 1990년 10월 3일 자부터 출원되는 산업재산권은 뮌헨에 본부를 둔 독일특허청이 유일한 특허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등록이 되었을 경우 법적 효력을 독일 전 지역에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전에 출원된 권리는 각 지역에만 효력이 미치지 때문에, 이들 권리를 전 독일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남아 있게 되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통일 전 발생한 산업재산권을 독일 지역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규정한 「확대법」이 1992년 4월 3일 제정되어, 같은 해 5월 1일 발효됨으로써, 서독과 동독간의 산업재산권 통일화 작업이 완결되게 되었다.

또한 통일 후에도 통일 상황과 동·서독 간 합의에 바탕 하여 헌법개혁을 이룩함으로써 규범적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통일 이전 동독에서 이루어진 헌법 개혁안의 논의와 헌법 개정은 상이한 두 이념과 체제의 결합을 보여준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에 기초한 구동독의 헌법개혁의 내용은 사회주의체제하의 북한의 헌법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동독은 정치적으로 국내 교역으로서의 동서독 간 교역의 특수성을 부인하면서도, 기본 조약을 통해 국내 교역으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국내 교역으로 취급됨으로

58) 상계서, 24면

인하여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본조약에 대한 추가의정서 제7조에 대하여” 중 제1항은 “서독과 동독간의 교역은 기존 협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조약은 “베를린 협정” 59)이 동서독 간 무역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으며 내독 교역의 특수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었다. 동독은 기본조약 체결 전이나 이후 동서독 교역에 관하여 동독의 관세법이나 대외 무역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베를린 협정을 근간으로 하는 동서독 간 협정에 따랐다.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본 통일의 법적 과제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통일조약과 통일합의서에 대한 효력 부여의 근거를 찾는 것이다. 통일 과정에서 쟁점이 될 산업재산권 관련 부분에 대해 미리 통일조약 또는 통일합의서의 초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통일 과정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준비라고 할 것이다. 또한 통일조약 등에 대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국회의결로 족하다는 견해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 통일조약에 그 효력 발생방법을 미리 규정하자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헌법상에 그 효력을 부여할 방법을 미리 부여해 놓거나 또는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효력 부여 방안에도 미리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동서독 사례에서 보듯, 우선적으로는 특허권리 간 저촉문제가 급증하여 산업재산권 분야에 혼란을 가져온 바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법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2. 중국과 대만

중국은 대만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따라 대만주민을 중국주민과 동일시(동등보호의 원칙)하였다. 대만주민에 대해서는 중국주민과 구별되면서도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는 우대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중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제도는 1978년 덩소평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확립된 제도로써 /하나의 국가에 두개의 체제 방식이 존재한다.’ 라는 의미로, 여기에서 뜻하는 ‘하나의 국가’는 ‘국가주권의 불가분성과 중화민족의 통일성’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통일 이후 중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만의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며, 「중국 헌법」에서는 “국가가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치한다.”(「헌법」 제31조 및 제62조)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홍콩·마카오 및 대만을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써 중앙정부의 수권에 의해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지방정부로 확정하고 있다.

59) 제4편 제3장 제2절 “경제 교류의 절차와 방법” 부분 참조

중국과 대만 정부는 양안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양안 간의 업무처리 및 통일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관리 기구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對대만 정책 및 통일정책 추진을 위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對 대만 공작 영도소조(領導小組)’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대륙정책 및 통일정책 관련 기구로 총독부 직속의 ‘국가통일 위원회’와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있다.

중국과 대만은 양안 간의 정치체제와 이념 및 통일정책이 서로 달라 정부 주도의 공식적인 교류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과 대만정부는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교류협력의 부재를 보충해 주기 위해 ‘반관반민’의 성격을 지닌 교류협력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는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산하에 1991년 12월 16일 민간기관의 성격을 띠는 ‘해협양안관계협회’(이하 ‘해협회’)를 설치하여 대만정부와의 연락채널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정치적 교류를 통해 대만정부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대한 점진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양안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대만과의 접촉과 협상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⁶⁰⁾

대만의 경우, 1990년 11월 21일 ‘행정원 대륙위원회’ 산하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로 민간 조직의 성격을 띤 ‘해협교류기금회’(이하 ‘해기회’)를 설치하여,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협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중국의 ‘해협회’의 협상 파트너로서 양안 교류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준(准)정부기관으로서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여타 정부조직을 능가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⁶¹⁾ 중국과 대만 양안은 정부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측의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반관반민’의 성격을 가진 ‘해협회’와 ‘해기회’를 설치하여 양안 간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이 마련한 관련 법제로는,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형식 및 투자보호에 관해 중국 국무원의 「대만동포 투자보호규정(国务院台湾同胞投资的规定)」(1988년), 「대만동포투자보호법(台湾同胞投资保护法)」(1994년)¹⁵⁾ 및 그 「실시세칙(台湾同胞投资保护实施细则)」, 「외자기업법(独资企业法)」(1986년), 중국 대륙기업의 대만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60) 「중국해협양안관계협회 정관」 제4조, “본회는 유관 기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대만 관련 부처 및 수권단체 내지 인사와 해협양안의 교류왕래에 관한 문제를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성 문건(協議性文件)에 서명할 수 있다.”

61) 「대만해협교류기금회 정관」 제2조, “본회는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의 왕래 관련 사무 처리에 협조하며, 양 지구 인민의 권익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에 관한 일정한 비용을 수령할 수 있다.” 제3조, “본회는 전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위임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장려하고 유도하기 위하여 「대륙기업의 대만지역 투자관리방법」(2010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도 對 중국투자에 있어서 「대만동포투자장려에 관한 규정」(1988년), 대만 경제부가 제정한 ‘투자금지업종의 제한’을 받으면서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나 기술합작은 금지하고 제3국을 경유하여 중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중국 간접투자관리법」(1990년)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무역허가판법(台湾地区与大陆地区贸易许可办法)」(1992년), 「대중국 간접투자·기술협력 허가법」(1993년), 「다국적기업의 대륙주민 초청 왕래 상업관련 활동허가판법(跨国企业邀请大陆地区人民来往从事商务相关活动许可办法)」(2003년)등을 규정하여 경제협력에 활성화 하고 있다.

이렇듯 양안 간의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원칙적인 정책은 잘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양안 간 산업재산권의 전반적 교류 현황과 관련 법제는 큰 틀에서 경제교류협력이라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법제만 마련되어 있는 반면, 세부적인 법제구축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양안 간의 시사점 중에서 참고할 만한 것은 경제통합 시행을 위한 대전제를 두고 양안 간의 실리를 반영한 경제협력 법제 확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이며, 각종 우대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이 괄목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3.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대만 양안은 상호 교류협력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책의 법제화를 시행함으로써 해당 정책의 실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남북 간의 경제교류협력은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및 토지를 상호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남북 양자의 경제적 이득을 실현하는 한편 향후 통합과정을 원만히 하고 그 비용을 절감하는 기대효과를 갖는다.⁶²⁾ 과거 개성공단이가동될 때 산업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논의가 필요함을 실무진에서 느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업만은 남북경협이 명맥을 이어주는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한 간 생산요소의 대규모 결합이라는 새로운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남북경협을 진일보한 단계로 끌어 올리는 기회를 열어 주었으나 남북경제협력 전반에 일대 전기를 이루는 단계로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 차원을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면서 남한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62) 그러나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은 언제나 정치적·군사적 요인에 의해 한정적이며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따른 지배를 받으며 낮은 수준의 단계로 한정되어 왔다. 특히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등으로 남북관계 전반이 대결과 반목으로 제자리걸음의 답보 상태에 있어 왔다.

북한 경제에도 보탬이 될 만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절실할 것이다. 그 대상의 하나가 지식재산권 문제이다. 최근 세계경제는 국제화와 개방화의 큰 흐름 위에서 소프트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재화의 가치가 유형의 하드웨어인 상품 자체보다도 상품에 체화된 지식, 기술, 서비스 등 무형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결정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히 경제기반의 주축도 지식기반 중심체제로 옮겨가고 있으며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인 지식재산권 제도의 중요성도 한층 배가되고 있다. 각 국가는 과거 노동집약적인 산업 형태에서 벗어나 지식재산기반 산업을 경제 성장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고려하여 남북경협은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산업재산권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구조에 있어서의 노동집약 중심산업에서 산업재산 중심산업으로의 변화, 산업재산 기반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은 북한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세계적인 수출전진 기지가 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항상 시사점으로 삼고 있는 독일 통일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 중 하나는 사회내면적 통합을 위한 독일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 동서독 주민 간, 그리고 구 동서독 지역 간의 갈등은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산업재산권 권리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통일 이후 독일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많은 사람들이 통일 이후의 독일 사회에 불만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래서 동·서독은 ‘통일’은 되었지만, 아직 ‘통합’은 되지 않았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래서 독일 통일은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에게 통일 과정도 순탄치 않겠지만, 통일 이후 닥칠 더 큰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 동·서독 보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더 크고, 북한인구수 차이는 2배 정도이나 서독은 동독에 비해 4배 정도 많았고,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한 동족 간의 전쟁이 있었던 반면 동·서독 간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이루어진 법률·사법 통합에 관하여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시켜 이에 관한 상당한 연구실적을 축적한 중국과 대만은 우리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념과 체제의 대립으로 인하여 분단 상태를 계속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앞서 교류와 협력관계를 이룩하고 있는 양안 간의 교류협력 관련 법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한 나머지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실적이 빈약한 실정이다.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가 일상화되고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는 남한 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정책이나 방식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 단계를 지날 것이다. 이 경우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며 남북 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관

런 법제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남북한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IV.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방안

1. 남북한 당국 간 협의체의 구성⁶³⁾

가. 추진 방향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남북 산업재산 교류 사안에 대한 당국 간의 협의와 조정을 위해 동 문제를 전담하는 남북한 당국 간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산업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는 남북한 당국 간 협의가 전무한 상태이며,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는 남한 당국이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의 통지를 받아들여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간단체를 통한 협의 채널을 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남북 간 협의 체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상황과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동 사안을 바로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감이 있으므로 산업재산교류 전담 협의체의 구성은 단계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당국 간 협의체 구성은 남북한 당국 간의 공식적이면서도 상시적인 협의기구의 창설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으로서,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남북한 제도통합의 시발점으로 삼을 만한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추진 단계 및 내용

남북한 당국 간 협의체의 구성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단계는 남북회담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산업재산권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절한 남북한 회담체를 선정하여 회담차원에서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변화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

63) 본 내용은 이찬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을 통해 작성됨.

색하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과 그 산하에 분야별 회담체가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상설적인 남북간 협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어 이러한 남북한 협의 채널 체계하에서 적절한 회담체를 통해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문제가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추진 단계의 설정은 남북관계 상황과 여타 분야 교류협력 추진 상황을 감안하는 가운데 설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문제는 남북경협의 이슈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바, 이는 저작권 교류협력 문제는 사회문화협력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가 초보적인 상태에서 특히 민간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협의할 남북한 당국 간 협의체를 상설 기구화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남북한 당국 간에 상호 업무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겠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문제를 전담하는 남북회담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일반적인 회담체(과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차원에서 남북경협 추진의 인프라 내지 법적, 제도적 기반을 형성할 목적으로 산업재산권 문제에 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협 회담체의 하위 회담기구로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및 제도화 문제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양측 산업재산권 당국 간의 회담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담 체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 회담체는 남북정상회담 산하의 남북경협회담의 회담 체계에 포함되며,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문제를 다루는 가칭 ‘남북산업재산권 교류협력위원회’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동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경협회담에서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을 주관하고,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남북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이행하며, 쌍방간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산업재산권 협력을 위한 남북한 당국 간의 상시적인 공동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이용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남북 쌍방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입법조정 권고 및 섭외사법 문제의 해결 기능까지도 포함한 전반적 문제를 다룰 가칭 ‘남북산업재산권 공동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⁶⁴⁾

동 위원회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이 남북한 인원이 상시 합동 근무하는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동 위원회를 통해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일체의 조사, 사실 확인, 자료의

64) 최은석, “남북한 저작권법제 비교 연구”, 2010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 2010, 제31면.

수집 및 제공, 산업재산권의 위탁관리, 중개, 대리 등의 업무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남북교류협력 추진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구가 설치된 바 있는데,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가 그러하다. 동 사무소는 2005년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 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남북한 당국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기구의 형태로 출범하여 남북사이의 경제거래 및 투자의 소개와 연락, 지원, 자문 기타 편의 보장, 남북당국 및 민간경제협력 당사자 사이의 회담 및 면담 장소의 보장, 남북사이의 교역·투자 관련 자료 제공, 투자대표단 교환, 상품전시회, 실무연수, 거래 및 투자상담회 등 남북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활동 보장, 기타 남북사이의 거래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쌍방 당국이 합의하여 위임하는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다. 추진 절차

산업재산권 분야에 남북한 당국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는 통상 남북회담의 핵심적인 의제에 해당하는 만큼,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분야 당국 간 협의체 구성안에 대한 정부 내 협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안은 필요하지 않고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협상 방안에 대한 준비로 회담의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족하겠지만, 두 번째 단계부터는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이니 만큼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부처와의 협의와 함께 정부 내 회담 총괄 부서와의 의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상시적인 공동기구 구성 단계에서는 공동위원회 구성안과 함께 향후 동 기구의 운영 계획과 인력 파견 계획 및 예산 방안 등이 함께 수립되어 정부 내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4 산업재산권 교류 남북 당국 간 협의체의 구성 단계

협의체	성격 및 주요 기능
남북정상회담/ 남북경협회담의 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회담과 경협회담에서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문제 협의 개시 -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의 남북회담에서의 의제화 - 원칙적인 합의 및 개별적 교류협력 사안 추진

<p>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전담 협의 회담체 -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사업의 총괄 조정 - 양측 산업재산권 담당 부서간 전문적 협의 추진 -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 상황 평가 및 점검
<p>남북 산업재산권 공동위원회 (상설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실행을 위한 남북한 공동기구 - 남북 인원의 공동 근무 - 산업재산권의 보호, 교류협력의 실행 - 남북 당국, 민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의 창구 당사자 사이의 회담 및 면담 장소 보장 - 산업 재산권 분야 분쟁 관련 상호 협력 등

2. 북한 산업재산권 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남한의 특허정보시스템은 동남아는 물론 UAE,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지역에서도 구축되고 있고, 남한의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은 파라과이의 남미까지 수출될 만큼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 산재권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남한이 북한에 특허정보시스템과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해준다면, 북한이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북한에 특허정보시스템을 비롯하여 산재권 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과 인력 및 장비 등을 남한은 미리 확보하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는 신호가 명확해지면, 곧바로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의 산재권 출원이 북한에 접수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권유하는 차원에서도 사전에 북한에 특허정보와 산재권 관리시스템의 지원을 제안해볼 수 있다.⁶⁵⁾

3. 북한에 대한 대금지급 방안 마련

6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남북한 지식재산 법제도의 조화에 관한 연구」,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116면.

남북관계는 국내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및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지식재산권 협력은 북미 관계 또는 대북 제재 등 다소 민감한 이슈와 상관없이 논의의 진척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국은 UN 안보리 제재 이외에 북한에 대하여 특정한 대북제재강화법과 대통령 행정명령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북제재규정(31 C.F.R. Part 510.517)에서 북한 내 특허, 상표 등의 지재권과 관련된 권리의 신청 및 취득, 침해소송의 제기 및 방어에 대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재권의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북한 내 거주민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 정부나 대리인에게 수수료와 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⁶⁾ 미국의 대북제재 규범 중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을 살펴본다.⁶⁷⁾

금융 분야에서는 미국 의회가 2016년 제정하여 2017년 한 차례 개정된 대북제재강화법은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UN 안보리 또는 행정명령을 통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기여(Contribute)하거나 개입(Engage)하는 자를 재량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⁸⁾ 또한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 정부에게 대량현금, 귀금속 등의 가치 저장수단을 이전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원(Facilitate)하는 자를 재량으로 지정하여 미국 내 자산동결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⁶⁹⁾ 북한의 운송, 광업, 에너지 또는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중요한 거래를 진행한 자를 재량으로 지정하여 제재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⁰⁾ 이렇게 금융 분야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북한제재규정 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대북제재규정 제510.201(a)(3)(iv)(A)조는 북한경제 내에서 운송, 광업, 에너지, 금융서비스와 같은 산업을 운영하는 자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⁷¹⁾ 북한과의 각종 금융거래 및 금융지원 역시 금지하고 있으며, 이차적 제재(Secondary Sanction)의 대표규정으로 칭하여지는 미국 북한제재규정 제510.210(b)(1)조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동결시킨 자산의 소유자를 위하여, 또는 ‘북한과의 교역(Trade)’을

66) 이승룡, “남북한 지재권 협력의 준비와 추진”, 지식재산정책 IP Policy, Vol.3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3., 16면.

67) 이하의 “미국의 대북제재 규범 중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남북한 지식재산 제도와의 조화에 관한 연구」,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111-114면 참고.

68) 22 U.S.C. 9214(b)(1)(A) (the President may designate under this subsection any person that the President determines(A) knowingly engages in, contributes to, assists, sponsors, or provides financial, material or technological support for, or goods and services in support of, any person designated pursuant to (i) an applicab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ii) any regulation promulgated under section 9254 of this title; or (iii) any applicable Executive order).

69) 22 U.S.C. 9214(b)(1)(G).

70) 22 U.S.C. 9214(b)(1)(M) (... the President may designate under this subsection any person that the President determines knowingly conducted a significant transaction or transactions in North Korea's transportation, mining, energy, or financial services industries).

71) 31 C.F.R. 510.210(a)(3)(iv)(A) (Any person determined To operate in any industry in the North Korean economy as may be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to be subject to paragraph (a)(3)(iv) of this section, such as transportation, mining, energy, or financial services.)

위하여 상당한 거래를 고의로(knowingly) 조력한(facilitate)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대북 제재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⁷²⁾ 북한과 관련하여 제재 대상이거나 의심을 받는 자에게 금융지원을 해 주는 외국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제재 대상에 해당될 위험이 있고, 제재 대상이 된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미국 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수출입 관련하여 살펴보면 대북제재강화법은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 기술 등과 관련하여 미국 수출통제 대상 상품, 서비스, 기술의 북한 수출입에 기여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무적(mandatory)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⁷³⁾ UN 안보리 결의나 행정규칙, 행정명령 등에 의하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기술지원, 상품제공 등에 기여하는 행위를 한 자 또한 재량(discretionary)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⁷⁴⁾ 이 경우 미국 대통령은 그와 같이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의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이 소유/통제하고 있는) 재산(property)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interest)를 모두 동결(block)하고 관련 거래(transaction)를 금지해야 한다.⁷⁵⁾ 이러한 제재는 위와 같이 지정된 자(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통제(controlled)되거나 그들을 위하여(for or on behalf of) 행동하는 자회사(subsidiary) 내지 대리인(agent) 등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⁷⁶⁾

72) 31 C.F.R. 510.210 (Prohibitions or strict conditions with respect to correspondent or payable-through accounts or blocking of certain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identified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b) Sanctionable activity by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may determine that 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has, on or after September 21, 2017, knowingly conducted or facilitated any significant transaction: (1) On behalf of any person whose property and interests in property are block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3551, Executive Order 13687, Executive Order 13722, or Executive Order 13810, or on behalf of any person whose property and interests in property are block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3382 in connection with North Korea-related activities; or (2) In connection with trade with North) (이와 같은 규정은 행정명령 EO 13810 Sec. 4(a)에서도 발견.)

510.314 (Knowingly) : The term knowingly, with respect to conduct, a circumstance, or a result, means that a person has actual knowledge, or should have known, of the conduct, the circumstance, or the result.

73) 22 U.S.C. 9214(a)(1). 한편, 행정법규인 미국 북한제재규정(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 또한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1 C.F.R. Part 510.201 (a)(3)(ii)(B)-(D)참조).

74) 22 U.S.C. 9214(b)(1)(A) (the President may designate under this subsection any person that the President determines(A) knowingly engages in, contributes to, assists, sponsors, or provides financial, material or technological support for, or goods and services in support of, any person designated pursuant to (i) an applicab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ii) any regulation promulgated under section 9254 of this title; or (iii) any applicable Executive order).

75) 22 U.S.C. 9214(c).

76) 22 U.S.C. 9214(d) (Application to subsidiaries and agents: The designation of a person under subsection (a) or (b) and the blocking of property and interests in property under subsection (c) shall apply with respect to a person who is determined to be owned or controlled by, or to have acted or purported to have acted for or on behalf of, directly or indirectly, any person whose property and interests in property are blocked pursuant to this section.)

또한 대통령 행정명령과 북한제재규정에서도 위와 유사한 규정들이 발견되는데, 예컨대, 북한과 ‘최소 한 번’ 이라도 물품이나 서비스 관련 중요한 수출입 거래에 개입한 자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⁷⁷⁾ 북한제재규정 제510.206(a)조는 미국 제품이 북한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 내지 재수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⁷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미국 제품이 직접 포함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 국적자가 제공하는 기술적 서비스가 해당 설비나 제품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된다.⁷⁹⁾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특허 및 상표를 비롯한 각종 지식재산에 관한 각종 거래는 다음과 같이 동 규범 제510.517⁸⁰⁾조의 포괄적 면제대상 (general license)으로 분류되어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⁸¹⁾, 대북제재규정 제510.213

77) 31 C.F.R. 510.201(a)(3)(v)(C) (All property and interests in property that are in the United States, that come within the United States, or that are or come within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any U.S. person of the following persons are blocked and may not be transferred, paid, exported, withdrawn, or otherwise dealt in: ... (v)...Any person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 (C) To have engaged in at least one significant importation from or exportation to North Korea of any goods, services, or technology). (같은 내용의 규정이 E.O. 13810 Section 1.에서도 발견됩니다.)

78) 31 C.F.R. 510.206(a) (The exportation or reexportation,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United States, or by a U.S. person, wherever located, of any goods, services, or technology to North Korea is prohibited)

79) 31 C.F.R. 510.405(a) (The prohibition on the exportation and reexportation of goods, services, or technology contained in 510.206 applies to services performed on behalf of a person in North Korea or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or where the benefit of such services is otherwise received in North Korea, if such services are performed: (1) In the United States; or (2) Outside the United States by a U.S. person, including by a foreign branch of an entity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80) § 510.517

Certain transactions related to patents, trademarks, copyrigh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a) All of the following transactions in connection with a patent, trademark, copyright, or other 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or North Korea are authorized, including exportation of services to North Korea, payment for such services, and payment to persons in North Korea directly connected to such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1) The filing and prosecution of any application to obtain a patent, trademark, copyright, or other 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2) The receipt of a patent, trademark, copyright, or other 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3) The renewal or maintenance of a patent, trademark, copyright, or other 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 (4) The filing and prosecution of any opposition or infringement proceeding with respect to a patent, trademark, copyright, or other 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r the entrance of a defense to any such proceeding.

(b) This section authorizes the payment of fees to the U.S. Government or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and of the reasonable and customary fees and charges to attorneys or representatives within the United States or North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transactions authorized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except that payment effected pursuant to the terms of this paragraph (b) may not be made from a blocked account.

81) § 510.517

조⁸²⁾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 포괄적인 면제가 부여되는 대상으로서 “정보 또는 정보물(information or information materia)” 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재 대상에서 면제가 되는 정보 및 정보물은 각종 출판물, 영상물, 영화, 포스터, 축음 레코드, 사진,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필름카드, 테이프, CD, CD-ROM, 미술작품, 뉴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⁸³⁾

실제 WIPO DB상의 통계를 확인하여 보면 대북 제재 이후에도 미국 및 유럽 각국에서 북한을 지정한 WIPO 출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대북제재 당사자인 미국을 본국관청으로 한 출원(즉, 미국 국적인 및/또는 미국 회사가 출원인인 출원)이 프랑스나 독일보다 오히려 그 수가 많고, 대표적 미국 기업인 Apple 의 출원이 다수 확인된다.

요컨대, 미국의 대북제재 중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남과 북의 산업재산권 출원과 관련한 활동이 대북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양자간의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교류·협력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Certain transactions related to patents, trademarks, copyrigh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a) All of the following transactions in connection with a patent, trademark, copyright, or other 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or North Korea are authorized, including exportation of services to North Korea, payment for such services, and payment to persons in North Korea directly connected to such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1) The filing and prosecution of any application to obtain a patent, trademark, copyright, or other 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2) The receipt of a patent, trademark, copyright, or other 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3) The renewal or maintenance of a patent, trademark, copyright, or other 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 (4) The filing and prosecution of any opposition or infringement proceeding with respect to a patent, trademark, copyright, or other 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r the entrance of a defense to any such proceeding.

(b) This section authorizes the payment of fees to the U.S. Government or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and of the reasonable and customary fees and charges to attorneys or representatives within the United States or North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transactions authorized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except that payment effected pursuant to the terms of this paragraph (b) may not be made from a blocked account.

82) § ?510.213 (Exempt transactions)

(c) Information or informational materials. (1) The prohibitions contained in this part do not apply to the importation from any country and the exportation to any country of any information or informational materials, as defined in § ?510.312, whether commercial or otherwise, regardless of format or medium of transmission.

83) § ?510.312 (Information or informational materials.)

(a)(1) The term information or informational materials includes publications, films, posters, phonograph records, photographs, microfilms, microfiche, tapes, compact disks, CD ROMs, artworks, and news wire feeds.

4.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서의 채택⁸⁴⁾

가. 합의서 채택의 필요성

남북한이 지식재산권의 교류를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형식은 합의서 방식과 공통 법령을 만드는 방식을 들 수 있다. 합의서 통한 지식재산권의 교류는 남북한 당국 간 합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남북한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다. 공통 법령을 제정하는 방식은 양자 간 공통된 법제를 합의하고 각각의 지역에서 이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양측의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작업으로 현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서독의 경우에서 보듯이 일방만이 시행하는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합의서 방식의 경우에는 남북 간 기본합의서나 4대 경협합의서가 현재 남북관계 경색 국면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⁸⁵⁾ 이 또한 사문화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이 상황에 따라 실천이 담보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남북 간 협력의 기반이 되어 온 합의서는 양측의 의지에 따라 그 추진력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선례로 보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규범 통합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이 남북 간의 이해와 그 실천이 양측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북 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공통 법령의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남북 간 정치적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공통 법령을 남북한의 국내법령 형식으로 제정한다는 점에서 보다 강한 집행력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법령의 효력이 우리와 같지 아니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관계가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관련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합의서 방식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확립되고 양측 간의 신뢰가 구축된다면 공통 법령의 제정을 통한 항구적인 지식재산의 교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의 비중이나 남북 간 협의의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초기단계에서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합의서의 도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즉, 정보자료의 교환이나 남북한 당국 간의 협의 추진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 정도

84) 본 내용은 이찬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을 통해 작성됨.

85) 기본합의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규로서의 규범력이 인정되지 않는 정치적 신사협정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이며, 4대 경협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그 규범력이 인정되고 있다.

가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경협회담 등에서 여러 가지 합의사항의 하나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재산권 전담 남북회담체의 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산업재산권 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경우에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합의서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당국 간 교류협력 추진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 도출이 예상되는 합의서를 도출하여 그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에 대한 원칙적 합의서(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에 관한 합의서)

본 합의서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남북교류협력의 재개 시점에서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한 기존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당국 간 교류협력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담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기존 남북한 당국 간 합의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6조(“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9조제5항(“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및 제2조제2항(“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 하에서의 남북한 합의가 규범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발효 당시 동 합의서의 규범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와 정치적 신사협정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학계와 연구계에 양립하였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법률적 구속력을 부인하고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⁸⁶⁾

그러나 2005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남북합의서에 대해 일정한 규범력을 부여하는 입법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바, 향후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남북한 간에 체결되는 합의서는 동 법에 따른 효력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86) 헌법재판소는 “남북기본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고(헌법재판소 1997. 1. 16.자 92헌바6 결정), 대법원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국가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9.7.23.선고 98두14525판결).

□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에 관한 합의서(안)

남과 북은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협력회담에서 산업재산권의 정보와 자료의 상호 교환을 실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양측의 관련 법령 자료를 상호 교환하기로 한다.
 - ① 남과 북은 각자 시행 중인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령 중 남측은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법과 규정, 시행세칙 등을 남측에 제공한다.
 - ② 남과 북은 1항의 법령 자료를 매년 2회(1월과 7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 ③ 남과 북은 전달받은 법령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률적인 의문사항 등에 대해 상대방에게 그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남과 북은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한다.
 - ① 상대방으로부터 상표,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등의 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 사실과 처리 계획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상대방이 보유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상대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요청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상대방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양도, 위임, 권리의 포기 주장 등 법률적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요청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상대방이 발급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각종 출원 및 등록 서류 등의 진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요청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본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 해결한다.
4.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 산업재산권 교류 관련 남북 당국간 협의체의 구성 합의서(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한 남북 당국간 협의체는 남북한이 정례적인 회담을 개최하여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한 정책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회담기구로서 구성된다. 따라서, 상시적인 실행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위원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지만, 공동위원회가 일종의 집행기능을 수행한다면 교류협력위원회는 상위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높다고 하겠다.

□ 남북산업재산권 교류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예시)

남과 북은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회담의 합의에 따라 남북한간의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남북산업재산권 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 1명과 위원 3-4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차관(부상)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③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각기 4-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경협회담에서의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산업재산권 분야의 교류협력들을 주관한다.
- ② 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산업재산권 분야 교류협력과 교류사업 과정에서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이행한다.
- ③ 위원회는 쌍방간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의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산하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위원회 본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본 회의 사이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본 회의와 실무협의회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본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⑤ 위원회 본 회의와 실무협의회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 본 회의와 실무협의회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⑦ 위원회 본 회의와 실무협의회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⑧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4조 위원회 본 회의 및 실무협의회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각기 합의문건에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라. 산업재산권 교류 관련 남북 당국간 상시적 공동기구 구성 합의서 (남북산업재산권 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협의의 진행 뿐만 아니라 당국간 합의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남북한 당국의 산업재산권 담당자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합동 근무하면서 남북산업재산권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적 수요를 처리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남북한 간에는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바, 동 연락사무소에서는 남북한의 관련 인력이 상시 근무하면서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연락사항의 교환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상설 공동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며, 남북관계 상황 상 별개의

산업재산 공동기구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편제에 산업재산 교류협력 기능을 편입하여 상시적인 남북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남북 산업재산권 공동위원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 산업재산권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개설·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위원회가 산업재산권 보호와 교류협력을 원활히 추진시키는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규모를 점차 확대·발전시켜 나가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제1조 명칭과 위치

1. 위원회의 명칭은 ‘남북산업재산권공동위원회’ 라고 한다.
2. 위원회는 개성 또는 판문점 등 남과 북이 합의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2조 지위와 구성

1. 위원회는 남북 사이의 산업재산권 보호 및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쌍방을 각각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쌍방 당국간의 연락, 지원 및 협의를 보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위원회는 남과 북의 당국에서 각기 파견하는 국장급 위원장을 포함하여 쌍방에서 각각 ○○명의 동수 인원으로 구성하며 보조인원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3. 쌍방은 위원회 인원을 교체할 경우 교체일 ○○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남북 사이의 산업재산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사항의 처리
2. 남북 당국 및 민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당사자 사이의 회담 및 면담 장소 보장
3. 남북 사이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출원·등록 등 현황 자료의 상대방에 대한 제공
4. 남북 사이의 상대방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신청 사항의 처리
5. 남북 사이의 산업재산권 분쟁 발생과 관련한 산업재산권 귀속자의 확인 및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사항의 확인, 유사 상표 확인, 특허 침해 등 사실의 확인

6. 남북 사이의 산업재산권 분쟁의 합의 해결 및 조정

7. 제3국의 개인 및 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의뢰 및 이에 대한 협조 처리

8 기타 남북 사이의 산업재산권 보호 및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쌍방 당국이 합의하여 위임하는 임무

제4조 운영 및 관리

1. 쌍방은 전화, 팩스, 근무 인원사이의 직접접촉 등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2. 위원회의 운영시간은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날짜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3. 북측은 당국간 회담대표단의 출입절차 및 신변안전을 위원회의 남측 인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한다.
4. 북측은 위원회 운영·관리와 관련한 물자와 설비의 반출·반입과 차량 운행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5. 위원회의 남측 인원과 남측지역 사이의 통신은 기존 남북한간의 합의 및 관례에 따라 보장한다.

제5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 해결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 위임하는 기관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6조 수정 및 보충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효력발생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종료한 후 이를 상호 통보한 날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지며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년 ○월 ○○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5장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및 출원·등록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모색하고, 교류협력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북한의 산업재산권법은 사회주의 국가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법조문이 비교적 단순하고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어, 법의 명확성 및 구체성의 면에서 남한의 산업재산권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여전히 다른 북한 법령과 마찬가지로 북한 산업재산권법은 체제정합성의 미비,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 부재, 실질적 규범력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남한과 북한의 산업재산권 법제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북한 산업재산권 협력 내지는 조화를 논함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산업재산권 법 제도가 기본적으로 권리의 확정과 권리자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측면이 강하고, 북한도 주요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남북 산업재산권법제도의 차이는 교류·협력 및 조화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북한의 법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 변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의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산업재산권 법령의 개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북한 산업재산권 제도의 변화와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폐쇄성과 남북 긴장관계로 인하여 그동안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으며, 이는 다소 긴장관계가 완화된 현재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발명공보를 통해 특허정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산업경쟁력을 분석하였으나, 상표 및 디자인과 관련된 정보의 입수에는 한계가 있었다. 북한 발명공보 수록 내용에 따르면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남한의 직무발명에 견줄 수 있는) 발명 출원이 9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은 대체로 외국인들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서, 개인의 재산권으로서의 발명특허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발명의 연도별 출원 및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감소 후 등락을 반복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초반에 외국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직접투자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경제특구 확대 및 적극적 투자유치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산업재산권을 산업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출원된 분야는 측정, 사업,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2,551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24,478건), 특수기계 제조업(2,281

건)이었고, 반면에 가장 적게 출원된 산업분야는 그 외 분류 안 된 운송장비 제조업(2건), 담배 제조업(4건),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9건), 항공기 제조업(9건) 등이었다.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인을 형태별로 분석하면 대학이 5,314건으로 29.2%이고, 그 뒤를 이어 기업(4,663건, 25.7%), 개인(3,847건 21.2%), 연구소(1,963건, 10.8%), 기관(973건, 5.4%), 병원(771건, 4.4%), 정부(388건, 1.9%), 외국인(302건, 1.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의 발명공보 데이터의 키워드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기술개발 영역에서 특정 기술주제로의 집중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북한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활동에 관하여는 연구주제의 중요성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연구활동이 단기적으로 수행됨을 추정할 수 있었다.

북한 특허공보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상 데이터의 해석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나, 특허정보가 북한의 기술혁신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발명특허 동향 및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북한의 기술혁신 구조 및 남북 협력 주체 발굴 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보다 상세한 특허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이 가능하다면 남북이 구체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술 분야를 세부적으로 도출하고, 산업협력 방안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극히 미흡한 남북 산업재산권의 교류·협력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단계에서는 북한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을 위한 유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사안에 대해 당국 간 협의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당국 간 협의체의 구성하여, 동 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쟁점이 될 산업재산권 관련 부분에 대해 미리 통일조약 또는 통일합의서의 초안을 준비함으로써 통일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였다는 점, 중국과 대만이 상호 교류협력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책의 법제화를 시행함으로써 해당 정책의 실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남북 교류협력 추진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서’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교류협력 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사회·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산업재산권은 국제적인 성격이 강하여 규범과 집행의 통일화가 용이하다는 점, 사회경제적 질서와 정치체제로부터 비교적 중립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 대북 제재의 예외에 해당하여 대북제재와 관련된 다소 민감한 이슈와 상관없이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는 분야라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재산권은 오히려 다른 어떤 분야보다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분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식재산권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논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야의 교류협력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남북경협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제라 할 수 있음에도, 현재 우리는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부족한 상황이며, 상표 또는 특허 관련 DB에 접근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즉, 현재의 단계에서는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관한 당장의 밑그림을 그리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남북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및 지원을 통해 북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는 한편 남과 북의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이 수립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북한을 산업재산권에 관한 논의의 장으로 유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이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철, “북한법연구의 현황과 과제-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하여”, 법과 사회이론 연구회, 1989
- 권순택,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평가”, 「제도 연구」, 2001
- 권재열 외 8인, 「북한의 법체계 : 그 구조와 특색」, 집문당, 2004
-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 제정의 의의와 해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 김광길,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와 대북제재”,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와 대북제재 토론회 자료집, 2018.
- 12.
- 김혜정,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도 현황 및 제언”, 심층분석보고서, 제2019-1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 남형두, “저작권의 역사와 철학”, 「산업재산권」 제26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8
- 문삼섭, “북한의 상표법 및 원산지명법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 21」, 특허청, 2005
- 문삼섭, 북한의 상표법 및 원산지명법, 제6차 국제상표디자인연구회 발표자료, 2005
- 박정원, 「북한의 ‘공업소유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
- 박정원, “북한의 발명법에 관한 분석”, 아시아법제연구, 창간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 박종배,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1호, 2011
- 박종배,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이해」, 북코리아, 2011
- 백재현 의원실, 2018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10.10.
- 법무법인 율촌 북한팀·매일경제중소기업부, 「북한 투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매일경제신문사, 2018
- 법무부, 「남북비교법령집」, 법무부, 2015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평양), 1997
- 서지영, 중국특허법, 한국특허아카데미, 2006
-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09
- 신지연 외, 「남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방안」, 특허청, 2008
- 윤대규·임을출 편저, 북한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한울 아카데미, 2006

육소영 외,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3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5

이길상, 동·서독의 산업재산권 제도 통일, 지식재산 21, 40호, 1996

이승룡, “남북한 지재권 협력의 준비와 추진”, 지식재산정책 IP Policy, Vol.3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3

이승룡, 남북한 디자인법의 통합모델 연구, 2008

이은영, 「북한의 법이론 및 법체계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18

이은정, “북한의 지식재산권”, 북한법연구, 제5호, 2002. 6

張萬明, 「涉台法律問題總論」, 法律出版社, 200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남북문화교류와 저작권문제”, 「저작권연구자료 1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2

中國年鑑, 中國年鑑社, 1993

제성호, “통일을 대비한 지식재산권 기반조성전략”, 「통일정책 연구」 제13권 1호, 통일연구원, 2004

최경수, 「국제지식재산권법(개정판)」, 한울, 2017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서강법학」 제11권, 2009

최은석,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2010 남북법제연구보고서」, 2010

최은석,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 「통일문제연구」, 2011

최은석·허인, 「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해」, 2014

통일연구원,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개원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2006

특허청, 「북한의 산업재산권 제도 안내」, 2001

한국지식재산학회, 「북한 지재권 현황 파악 및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사례 분석 연구」, 특허청, 2015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한올아카데미, 2016

<부록 1> 연도별 남북한 산업재산권의 산업활동성 비교

1. 연도별 출원추이

출원 연도	실용기 술발명 (H)	발명권 (F)	특허권 (L)	실용기 술특허 (W)	발명 합계	특허 합계	대발명	소발명	합계
1999		1	1		1	1	2	0	2
2000		4	12		4	12	16	0	16
2001		74	24		74	24	98	0	98
2002	108	432	24		540	24	456	108	564
2003	383	144	17		527	17	161	383	544
2004	701	80	61		781	61	141	701	842
2005	869	61	50		930	50	111	869	980
2006	1,080	60	62	10	1,140	72	122	1,090	1,212
2007	1,273	42	100	4	1,315	104	142	1,277	1,419
2008	1,437	69	91	4	1,506	95	160	1,441	1,601
2009	1,083	84	73	3	1,167	76	157	1,086	1,243
2010	1,089	64	81	6	1,153	87	145	1,095	1,240
2011	921	47	67		968	67	114	921	1,035
2012	1,102	64	50	1	1,166	51	114	1,103	1,217
2013	914	86	42	15	1,000	57	128	929	1,057
2014	1,175	127	31	28	1,302	59	158	1,203	1,361
2015	1,172	145	30	57	1,317	87	175	1,229	1,404
2016	977	126	10	78	1,103	88	136	1,055	1,191
2017	858	104	4	109	962	113	108	967	1,075
2018	53	12		1	65	1	12	54	66
합계	15,195	1,826	830	316	17,021	1,146	2,656	15,511	18,167

2. 연도별 등록추이

등록 연도	실용기 술발명 (H)	발명권 (F)	특허권 (L)	실용기 술특허 (W)	발명 합계	특허 합계	대발명	소발명	합계
2001		1			1	0	1	0	1
2002		201			201	0	201	0	201
2003	119	408	38		527	38	446	119	565
2004	746	92	63		838	63	155	746	901
2005	913	70	75		983	75	145	913	1,058
2006	1,033	72	58	9	1,105	67	130	1,042	1,172
2007	1,276	35	73	5	1,311	78	108	1,281	1,389
2008	1,079	39	39	4	1,118	43	78	1,083	1,161
2009	1,278	84	89	3	1,362	92	173	1,281	1,454
2010	1,039	66	67		1,105	67	133	1,039	1,172
2011	754	54	54	4	808	58	108	758	866
2012	1,323	63	92	1	1,386	93	155	1,324	1,479
2013	885	44	59	6	929	65	103	891	994
2014	1,184	148	49	26	1,332	75	197	1,210	1,407
2015	1,126	128	28	25	1,254	53	156	1,151	1,307
2016	1,007	134	33	91	1,141	124	167	1,098	1,265
2017	1,046	105	12	108	1,151	120	117	1,154	1,271
2018	387	82	1	34	469	35	83	421	504
합계	15,195	1,826	830	316	17,021	1,146	2,656	15,511	18,167

3. 출원인 형태의 산업분야

일련 코드	산업명	U (대학)	C (기업)	P (개인)	R (연구)	O (기관)	H (병원)	G (정부)	A (외국)	합계
C00	농림어업	91	136	114	143	55	1	13	3	556
C01	광업	43	91	67	18	13		2	3	237
C02	식료품 제조업	181	187	173	81	13	5	7	3	650
C03	음료제조업	25	62	28	12	2	2			131
C04	담배제조업		2	1	1					4
C05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2	52	10	5	3		1	2	85
C06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	8	3				5	1	18
C07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8	41	3	2	5			2	61
C08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19	43	39	6	8		1	2	118
C0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0	17	17	23	1		2	1	71
C10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11	4	4		3			3	25
C1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8	33	24	6	6		6	4	97
C12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7	112	79	81	9	11	5	12	516
C13	비료 및 질소 화학물 제조업	27	20	21	16	7		2		93
C14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제조업	36	74	31	27	4	3	1	2	178
C15	살충제 및 기타농약제조업	61	31	59	70	16	5	6	5	252
C16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45	59	37	26	9		3	1	180
C17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16	76	24	17	5	1	3	2	144
C18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40	174	113	88	17	3	5	2	542
C19	화학섬유 제조업	3	6	2	2					13
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21	235	533	262	56	167	15	110	1,797
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42	169	57	31	14	5	3	19	340
C2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76	371	254	103	45	8	16	8	981
C23	1차 철강제조업	108	177	100	24	8	2	3	5	427
C24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6	16	30	3		1	1	2	79
C25	금속주조업	26	59	24	6	5				120
C26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증기발생기 제조업	23	24	30	3	11		2	3	96
C27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4	2	5	3				1	15
C28	기타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85	165	119	32	22	2	4	7	436

C29	반도체 제조업	81	6	76	10	3		1	2	179
C30	전자부품제조업	150	75	91	44	25	2	7	2	396
C3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89	21	43	22	3	4	3	3	188
C32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92	49	99	86	51	1	86	7	671
C33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114	11	22	22	14	2	13	4	202
C34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3	1	1				4		9
C35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1	59	281	49	7	469	5	19	1,220
C36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	1007	488	456	283	177	75	59	6	2551
C37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43	20	28	16	2	10	2	2	123
C38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10	7	6	2	4		1		30
C39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 공급, 제어장치 제조업	109	104	54	35	54	1	9	3	369
C4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11	16	12	2	2		1		44
C41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45	101	40	12	34		3		235
C42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8	8	12	22		3	1		54
C43	가정용 기기 제조업	48	53	27	16	16	3	7	7	177
C44	기타전기 장비 제조업	133	82	74	49	61	4	12		415
C45	사무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13	4	3	2			3	41
C46	사무용 이외의 일반기계 제조업	399	683	387	169	101	18	17	35	1,808
C47	특수기계 제조업	484	968	473	240	70	13	17	16	2,281
C48	자동차 제조업	28	54	34	14	8	1		4	143
C49	선박제조업	10	16	17	6	4			3	56
C50	철도장비 제조업	31	28	15	13	44		1	3	135
C51	항공기 제조업	3		4	1				1	9
C54	그외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1	1					2
C55	가구제조업		4	11						15
C56	기타제품 제조업	201	32	46	14	21	5	5	8	332
C57	전기, 가스, 증기, 수도	12	8	4	6	1		1	2	34
C5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	33	29	42	25	6	6	2	6	149
C59	건설업, 건축기술 서비스	86	247	156	60	68		19	5	641
C60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1390	253	337	218	125	70	80	5	2,478

4. 연도별/산업분야별 출원추이

일련 코드	소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C00	556			6	7	9	16	18	33	41	50	39	33	46	51	56	57	35	36	20	3
C01	237				8	4	9	6	22	19	21	23	22	15	10	11	16	23	16	10	2
C02	650			1	22	13	32	26	49	41	64	44	36	25	41	29	49	55	73	49	1
C03	131			1	4	7	8	8	8	8	21	8	11	7	3	9	8	12	5	3	
C04	4						1		1	1				1							
C05	85				3	7	6	6	4	8	4	4	10	7	4	3	4	4	6	5	
C06	18				1				2	2	2	2		1	4	2	1	1			
C07	61			1	2			2	5	11	15	3	4	2	3	2	3	7	1		
C08	118		1			2			6	10	10	11	10	3	16	8	6	19	10	5	1
C09	71				5	7	4	1	4	7	3	1	4	5	5	1	9	7	2	6	
C10	25				1	1	1			2		2		5		4	4	1	1	3	
C11	97				3		4	2	6	6	7	8	9	2	8	6	4	11	15	5	1
C12	516		1	6	22	14	17	19	23	37	52	50	37	30	34	24	41	43	40	24	2
C13	93				2	1	6	2	8	7	10	5	3	5	3	3	4	18	9	7	
C14	178				7	3	6	7	11	18	15	9	12	13	7	9	14	12	17	17	1
C15	252		1		7	8	12	6	14	22	27	23	21	25	16	14	16	13	17	9	1
C16	180			1	8	8	6	8	10	12	12	17	9	14	7	13	11	22	10	12	
C17	144			1	2	2	3	6	3	8	11	17	8	11	7	15	10	16	10	13	1
C18	542				12	16	29	23	51	42	56	41	39	25	29	24	51	33	34	36	1
C19	13				2			1		2	3		2		2					1	
C20	1,797	1	4	30	77	76	97	110	119	137	192	132	105	98	109	87	80	114	119	107	3
C21	340		1	3	16	12	14	15	21	43	35	16	27	12	28	14	29	23	15	13	3
C22	981		1	4	24	30	30	30	46	68	93	62	83	45	85	49	66	101	76	85	3

C23	427			2	24	14	20	21	29	52	59	37	23	20	19	20	25	30	13	19		
C24	79		1		1		4	7	10	10	16	2	7	2	1	4	5	2	2	2	5	
C25	120				11	4	3		10	11	11	15	11	8	8	7	6	9	2	4		
C26	96		1	1	5	4	4	6	3	11	7	4	6	5	2	2	14	5	8	7	1	
C27	15		1					1		1	1	1					2	4	3	1		
C28	436		1		15	10	17	24	46	47	54	39	19	28	25	21	24	37	18	10	1	
C29	179				7	6	13	18	21	17	26	13	7	11	4	8	10	4	11	3		
C30	396				5	18	18	32	46	33	44	22	32	20	14	17	29	23	18	23	2	
C31	188				3	1	6	3	10	12	5	23	20	14	9	10	22	14	17	17	2	
C32	671		1	1	4	10	46	26	64	45	72	55	37	41	30	30	64	51	50	41	3	
C33	202		1		1	4	8	7	14	17	26	10	16	12	11	8	16	15	18	18		
C34	9				1		2				2	1	1	1	1							
C35	1,220			16	25	55	43	123	95	118	97	108	84	73	77	62	52	49	74	68	1	
C36	2,551	1	1	9	79	80	116	137	146	164	198	160	129	165	157	174	218	238	173	196	10	
C37	123				5	2	8	6	12	6	19	6	12	6	6	1	14	7	7	6		
C38	30				1	1	3	3		1	1	2	5	1		3	2	2	4	1		
C39	369				18	7	13	19	29	31	38	21	28	26	17	23	23	30	23	23		
C40	44				1	1	2	4	2	2	6	2	4	1	1	2	3	2	8	3		
C41	235			1	14	10	9	20	21	19	25	11	15	17	13	10	14	9	12	15		
C42	54						2		1	8	2	1	4		4	4	15	7	3	1	2	
C43	177		1	1	5	3	12	7	13	16	12	12	12	6	6	9	24	16	11	11		
C44	415				11	14	19	37	38	31	33	20	33	15	19	22	24	42	29	27	1	
C45	41					1	2	6	4	3	3	7		3	1	3	1	3	4			
C46	1,808			5	68	61	64	63	105	138	157	154	126	105	113	95	155	154	126	111	8	
C47	2,281	1	1	10	95	65	76	94	149	211	199	136	157	132	165	138	179	170	137	153	13	

C48	143		1		6	5	6	2	8	10	7	19	13	6	15	10	10	11	5	9	
C49	56				3	3	2		7	1	6	4	5	6	2		3	6	2	4	2
C50	135				4	1	5	3	5	17	17	13	10	8	8	16	10	11	5	1	1
C51	9				1					1	1						1			5	
C54	2									1		1									
C55	15			1					2	3		7	1		1						
C56	332		1	3	5	13	23	50	31	20	27	14	16	9	9	19	31	19	18	24	
C57	34								2	1	5		2		2	2	2	7	5	6	
C58	149				5	7	9	13	10	10	11	6	5	11	12	8	13	9	10	10	
C59	641		1	1	14	24	19	26	44	94	52	62	47	33	45	38	39	48	32	18	4
C60	2,478				8	29	144	133	128	185	216	178	233	193	167	164	174	169	178	169	10
합계	18,167	2	16	98	564	544	842	980	1,212	1,419	1,601	1,243	1,240	1,035	1,217	1,057	1,361	1,404	1,191	1,075	66

5. 출원인 형태별 출원동향

출원인 형태	소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U(대학)	5,314			16	107	145	201	347	363	365	483	385	376	307	322	294	442	388	413	347	13
C(기업)	4,663		1	20	216	133	212	175	316	370	347	345	358	298	358	302	309	310	283	290	20
P(개인)	3,847	1	2	12	101	124	216	214	298	347	398	241	241	185	227	191	253	325	254	193	24
R(연구소)	1,963			7	49	43	106	77	100	138	176	92	90	91	132	128	228	241	131	129	5
O(기관)	973			7	47	28	41	56	43	82	66	33	64	66	81	79	78	66	54	78	4
H(병원)	771			14	19	48	45	91	62	69	38	72	49	42	68	33	33	38	33	17	
G(정부)	338		1		2	14	16	20	22	19	38	34	17	20	24	21	15	30	21	24	
A(외국인)	302	1	12	22	23	9	5		8	29	55	41	45	26	6	9	3	6	2		

6. 출원인 형태별 기술집중도

출원인 형태	평균 (01-1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U(대학)	0.95	0.00	0.00	0.56	0.65	0.91	0.82	1.21	1.02	0.88	1.03	1.06	1.04	1.01	0.90	0.95	1.11	0.94	1.19	1.10	0.67
C(기업)	1.02	0.00	0.24	0.80	1.49	0.95	0.98	0.70	1.02	1.02	0.84	1.08	1.13	1.12	1.15	1.11	0.88	0.86	0.93	1.05	1.18
P(개인)	1.01	2.36	0.59	0.58	0.85	1.08	1.21	1.03	1.16	1.16	1.17	0.92	0.92	0.84	0.88	0.85	0.88	1.09	1.01	0.85	1.72
R(연구소)	0.95	0.00	0.00	0.66	0.80	0.73	1.17	0.73	0.76	0.90	1.02	0.69	0.67	0.81	1.00	1.12	1.55	1.59	1.02	1.11	0.70
O(기관)	1.05	0.00	0.00	1.33	1.56	0.96	0.91	1.07	0.66	1.08	0.77	0.50	0.96	1.19	1.24	1.40	1.07	0.88	0.85	1.35	1.13
H(병원)	1.12	0.00	0.00	3.37	0.79	2.08	1.26	2.19	1.21	1.15	0.56	1.37	0.93	0.96	1.32	0.74	0.57	0.64	0.65	0.37	0.00
G(정부)	0.88	0.00	3.36	0.00	0.19	1.38	1.02	1.10	0.98	0.72	1.28	1.47	0.74	1.04	1.06	1.07	0.59	1.15	0.95	1.20	0.00
A(외국인)	1.55	30.08	45.13	13.51	2.45	1.00	0.36	0.00	0.40	1.23	2.07	1.98	2.18	1.51	0.30	0.51	0.13	0.26	0.10	0.00	0.00

7. 상위랭킹 50위 출원인 리스트

KSIC	합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김일성종합대학	1,188			2	4	34	40	65	50	54	82	131	118	85	75	66	85	86	128	81	2
김책공업종합대학	1,136			1	43	38	33	80	62	81	123	77	65	66	69	51	127	78	81	57	4
국가과학원	795			1	18	22	18	19	30	48	70	19	12	24	37	48	137	147	58	83	4
리과대학	174				1	2	23	13	19	28	42	12	11	11	10					2	
평양철도대학	172					1	5	9	20	26	9	16	26	15	12	32	1				
평양기계대학	169			1	4	13	14	15	13	24	28	12	7	4	15	11	8				
농업연구원	156				5	5	4	1	5	10	8	4	9	15	28	16	10	11	18	7	
의학연구원	154			3	3	2	4	5	12	6	7	16	6	6	9	11	24	23	8	9	
조선적십자종합병원	150			2	7	4	6	2	10	10	10	19	7	16	13	9	10	8	15	2	
김만유병원	132			3		12	13	29	12	13	9	16	7	5	6	3	2	1		1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115															2	10	29	41	33	

청진광산금속대학	110			1	1	3	2	9	10	5	7	1	5	5	4	8	13	13	15	8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110			1	5	6	8	10	13	8	24	6	6	3	11	4	5				
함흥수리동력대학	106				3		2		3		12	2	4	5	3	7	49	6	3	7	
함흥약학대학	104			2	7	1	6	1		3	15	13	12	19	11	10	3		1		
식료일용연구원	94				14	2	4	4	8	6	10	4	5	4	4	8	8	4	9		
황해제철련기업소	93				8	1	2	6	5	6	2	10	8	3	12	6	5	2	12	5	
희천체신대학	92					2		6	79		4	1									
평양컴퓨터기술대학	89					5	3	7	2	4	7	4	10	12	5	10	3	7	4	5	1
김책제철련합기업소	87				2	1	4	1	5	13	18	5	8	5	7	8	4	1	2	3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84				13		6	7	7	2	2	14	2	6	3	1	6	5	4	6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82					6		1	8	2	8	8	7	5	5	2	16	8	2	4	
평양기계종합대학	78															3	7	27	25	16	
조선체육대학	76					1	2	8		2	5	9	11	3	8	10	3	8	2	4	
함흥의과대학	75			3	2	2	3	2	9	7	7	5	7	5	5	4	2	6		5	1
함흥화학공업대학	74				2	3	1	2	4	4	5	7	8	11	10	15	2				
석탄연구원	71					2	6	3	4	11	6	8	3	5	4	1	3	10	2	3	
신의주화장품공장	71				11	1	6	1	10	1	10	5	1	8	2	4		4	5	2	
평양산원	67			1			5	15	5	8	3	5	3		7		7	4	2	2	
평양의학대학	67			1		4	2	4	14	13	1	10	18								
중앙정보통신국	66						3	2	4	2	10	9	8	5	4	2	4	9	3	1	
정보통신연구소	64					1	28				7		4				7		15	2	
평양인쇄공업대학	63				3	2	4	5	4	1	5	10	1	4	3	4	7	5	5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62															1	11	25	9	15	1
흥남벼료련합기업소	60				13	1		1	4		1	5	4	12	6	6	2	1	1	3	
평양건축종합대학	57															3	21	13	8	9	3

평양화장품공장	54					5	1	4	2	6	3	5	4	1	1	6	4	3		9
평양시제1인민병원	53		1	1	4	5	7	4	9	2	1	2	2	8	2	1	1	2	1	
희천공업대학	51														1	31	8	7	4	
백두산건축연구원	49				11			2	6	10	3	4	6	3	2	2				
수풍발전소	49			10	1	25		2			1		3	1	1	2	1		2	
고려의학연구원	48				2	15	4	5	5	2	3	2	1	1	2	5	1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48			9	1		1	4	1	1	1	9	1	6	8	1	2		3	
평양건설건재대학	48			1	3	4	2	3	4	8	7	13	3							
평양정보기술전문학교	47						31	15	1											
해주의학대학	47				1	1	1		4	1			5	2	3	2	2	9	16	
2.8비날론연합기업소	46			1		2	2	1		1	8	1	7	1	4	7	3		8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43			4			4	7	1	1	8	4	6	3	1	1	2	1		
원산수산대학	42			2		1	1			6	1	3	5	3	4	1	7	4	4	
평양어린이식료공장	42								4	6	7			1	2	1	5	1	12	3

8. 남북한 산업활동지수

○ 북한산업활동지수(연도별)

일련코드	산업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C00	농림어업	0.64	0.62	0.87	0.88	0.94	0.94	0.84	1.36	1.45	1.74	1.36	0.80	0.95	0.57	1.46	1.03
C01	광업	0.85	0.49	1.37	0.97	0.94	1.32	1.33	1.06	0.67	0.81	0.91	1.25	1.01	0.67	2.30	1.06
C02	식료품 제조업	1.11	0.78	1.12	0.77	1.05	0.93	0.80	0.64	1.01	0.78	1.02	1.10	1.68	1.21	0.42	0.96
C03	음료제조업	1.44	1.23	0.94	0.77	1.78	0.87	1.25	0.93	0.38	1.25	0.86	1.24	0.59	0.38	0.00	0.93
C04	담배제조업	5.34	0.00	3.51	2.87	0.00	0.00	0.00	3.9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4
C05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71	1.47	0.75	1.22	0.54	0.69	1.81	1.48	0.81	0.66	0.68	0.65	1.13	1.01	0.00	0.97
C06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00	0.00	1.65	1.35	1.19	1.52	0.00	0.93	3.57	1.95	0.75	0.72	0.00	0.00	0.00	0.91

C07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0.00	0.63	1.21	2.17	2.61	0.67	0.94	0.55	0.78	0.57	0.66	1.48	0.24	0.00	0.00	0.83
C08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0.00	0.00	0.73	1.00	0.88	1.24	1.18	0.41	2.11	1.15	0.67	2.03	1.23	0.66	2.25	1.04
C0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45	0.31	0.95	1.36	0.51	0.22	0.92	1.34	1.28	0.28	1.95	1.46	0.48	1.54	0.00	0.94
C10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0.93	0.00	0.00	1.00	0.00	1.12	0.00	3.44	0.00	2.88	2.22	0.53	0.62	1.97	0.00	0.98
C1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91	0.39	0.90	0.73	0.75	1.10	1.30	0.34	1.29	1.06	0.54	1.44	2.26	0.80	2.76	1.10
C12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0.77	0.74	0.68	0.90	1.11	1.37	1.06	1.00	1.09	0.84	1.11	1.12	1.20	0.77	1.10	0.99
C13	비료 및 질소 화학물 제조업	1.42	0.41	1.25	0.89	1.12	0.72	0.45	0.88	0.51	0.55	0.57	2.46	1.42	1.18	0.00	0.92
C14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제조업	0.76	0.76	0.92	1.23	0.90	0.69	0.97	1.22	0.63	0.89	1.06	0.88	1.43	1.53	1.54	1.03
C15	살충제 및 기타농약제조업	1.09	0.47	0.83	1.07	1.15	1.26	1.21	1.68	1.03	0.98	0.86	0.68	1.02	0.58	1.10	1.00
C16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0.79	0.90	0.86	0.84	0.74	1.35	0.75	1.36	0.65	1.32	0.86	1.66	0.87	1.11	0.00	0.94
C17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0.46	0.79	0.30	0.66	0.80	1.58	0.78	1.25	0.76	1.79	0.92	1.41	1.02	1.41	1.86	1.05
C18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21	0.82	1.39	0.94	1.10	1.03	1.03	0.77	0.86	0.77	1.27	0.79	0.94	1.06	0.50	0.96
C19	화학섬유 제조업	0.00	1.67	0.00	2.08	2.75	0.00	2.47	0.00	2.76	0.00	0.00	0.00	0.00	1.38	0.00	0.87
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9	1.25	1.04	0.98	1.20	1.06	0.89	0.96	1.03	0.90	0.63	0.87	1.05	1.01	0.48	0.98
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0.97	0.89	0.96	1.60	1.15	0.67	1.19	0.62	1.38	0.75	1.20	0.92	0.69	0.64	2.52	1.08
C2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70	0.60	0.70	0.85	1.02	0.87	1.22	0.77	1.40	0.88	0.91	1.34	1.17	1.39	0.84	0.98
C23	1차 철강제조업	1.10	1.00	1.05	1.54	1.54	1.24	0.81	0.82	0.74	0.86	0.82	0.95	0.48	0.74	0.00	0.91
C24	1차 비철금속 제조업	1.11	1.67	1.82	1.49	2.10	0.34	1.23	0.41	0.20	0.86	0.83	0.32	0.37	0.98	0.00	0.91
C25	금속주조업	0.61	0.00	1.34	1.20	1.06	1.85	1.42	1.21	1.15	1.11	0.73	1.05	0.27	0.58	0.00	0.90
C26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증기발생기 제조업	1.01	1.29	0.50	1.48	0.83	0.61	0.96	0.93	0.36	0.39	2.10	0.72	1.33	1.25	3.05	1.12
C27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0.00	1.31	0.00	0.82	0.72	0.92	0.00	0.00	0.00	0.00	1.82	3.51	3.03	1.08	0.00	0.88
C28	기타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0.89	1.07	1.57	1.31	1.33	1.23	0.63	1.08	0.92	0.85	0.75	1.11	0.62	0.37	0.63	0.96
C29	반도체 제조업	1.67	1.99	1.78	1.17	1.58	1.01	0.57	1.05	0.37	0.80	0.77	0.30	0.94	0.27	0.00	0.95
C30	전자부품제조업	1.03	1.57	1.73	1.01	1.19	0.76	1.16	0.85	0.57	0.76	0.99	0.76	0.68	0.93	1.39	1.03
C3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0.70	0.30	0.76	0.75	0.27	1.62	1.47	1.20	0.74	0.90	1.52	0.93	1.31	1.40	2.82	1.11
C32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1.50	0.73	1.37	0.79	1.11	1.09	0.77	0.99	0.69	0.76	1.25	0.96	1.08	0.95	1.19	1.01
C33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0.87	0.65	1.00	0.99	1.34	0.66	1.11	0.97	0.85	0.68	1.04	0.94	1.30	1.39	0.00	0.92

C34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5.34	0.00	0.00	0.00	2.52	1.62	1.70	1.98	1.89	0.00	0.00	0.00	0.00	0.00	0.00	1.00
C35	의료용 기기 제조업	0.82	2.01	1.19	1.20	0.87	1.24	1.01	1.03	1.04	0.91	0.59	0.54	0.93	0.92	0.23	0.97
C36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	1.04	1.06	0.86	0.79	0.84	0.87	0.73	1.10	1.00	1.21	1.17	1.23	1.03	1.25	1.09	1.02
C37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계 제조업	1.47	0.95	1.45	0.59	1.65	0.67	1.40	0.82	0.78	0.14	1.54	0.74	0.85	0.78	0.00	0.92
C38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29	1.96	0.00	0.41	0.36	0.92	2.42	0.57	0.00	1.78	0.91	0.88	2.02	0.54	0.00	1.00
C39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 공급, 제어장치제조업	0.81	1.01	1.18	1.03	1.11	0.79	1.10	1.20	0.75	1.11	0.85	1.07	0.95	1.01	0.00	0.93
C4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1.02	1.75	0.67	0.55	1.44	0.62	1.29	0.38	0.36	0.79	0.91	0.58	2.70	1.08	0.00	0.94
C41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0.92	1.75	1.40	1.04	1.20	0.68	0.97	1.28	0.94	0.79	0.85	0.53	0.81	1.08	0.00	0.95
C42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0.79	0.00	0.26	1.70	0.37	0.24	1.00	0.00	1.12	1.23	3.54	1.59	0.79	0.28	9.60	1.50
C43	가정용 기기 제조업	1.53	0.77	1.09	1.10	0.72	0.93	0.97	0.57	0.54	0.89	1.83	1.18	0.93	1.00	0.00	0.94
C44	기타전기 장비 제조업	1.04	1.74	1.37	0.91	0.85	0.66	1.15	0.61	0.74	0.94	0.78	1.32	1.05	1.05	0.66	0.99
C45	사무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	1.07	2.75	1.40	0.86	0.76	2.26	0.00	1.19	0.38	1.24	0.32	0.92	1.42	0.00	0.00	0.97
C46	사무용 이외의 일반기계 제조업	0.82	0.69	0.88	0.94	0.95	1.19	1.02	0.99	1.02	0.94	1.18	1.13	1.07	1.00	1.24	1.00
C47	특수기계 제조업	0.77	0.82	0.99	1.15	0.95	0.83	1.01	0.99	1.19	1.08	1.08	0.99	0.92	1.10	1.60	1.03
C48	자동차 제조업	0.98	0.28	0.86	0.87	0.54	1.88	1.35	0.73	1.74	1.27	0.97	1.03	0.54	1.04	0.00	0.94
C49	선박제조업	0.85	0.00	1.96	0.23	1.21	1.03	1.36	1.90	0.61	0.00	0.77	1.47	0.57	1.21	10.37	1.57
C50	철도장비 제조업	0.82	0.42	0.54	1.50	1.32	1.29	1.04	0.97	0.93	2.04	0.98	1.04	0.54	0.12	1.99	1.04
C51	항공기 제조업	0.00	0.00	0.00	1.43	1.26	0.00	0.00	0.00	0.00	0.00	1.59	0.00	0.00	9.45	0.00	0.92
C54	그외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0.00	0.00	0.00	5.73	0.00	6.4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81
C55	가구제조업	0.00	0.00	2.00	2.46	0.00	6.47	0.97	0.00	1.08	0.00	0.00	0.00	0.00	0.00	0.00	0.87
C56	기타제품 제조업	1.58	2.96	1.40	0.74	0.88	0.58	0.70	0.46	0.44	1.02	1.28	0.75	0.82	1.17	0.00	0.99
C57	전기, 가스, 증기, 수도	0.00	0.00	0.83	0.34	1.48	0.00	0.80	0.00	0.89	0.98	0.75	2.53	2.08	2.67	0.00	0.89
C5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	1.40	1.74	1.02	0.84	0.81	0.57	0.49	1.27	1.33	0.97	1.21	0.81	1.03	1.10	0.00	0.97
C59	건설업, 건축기술 서비스	0.68	0.79	1.03	1.79	0.87	1.33	1.06	0.87	1.13	1.05	0.83	0.98	0.75	0.45	1.72	1.02
C60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1.26	1.00	0.74	0.87	0.89	0.94	1.29	1.25	1.04	1.11	0.91	0.85	1.03	1.05	1.06	1.02

○ 남한 산업활동지수(연도별)

일련코드	산업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C00	농림어업	0.98	0.92	0.90	0.89	0.91	1.03	1.02	1.03	1.03	1.02	1.06	1.04	1.01	1.07	1.19	1.01
C01	광업	0.74	0.68	0.78	0.78	0.79	1.10	1.28	1.33	1.26	1.23	1.04	0.85	1.03	0.99	1.04	1.00
C02	식료품 제조업	0.80	0.70	0.69	0.84	0.87	0.91	0.95	0.93	0.96	0.99	1.15	1.32	1.24	1.38	1.30	1.00
C03	음료제조업	0.62	0.71	0.75	1.08	0.94	1.12	1.56	1.19	1.06	0.88	0.97	1.00	0.93	1.26	0.72	0.99
C04	담배제조업	0.50	0.47	0.58	0.58	0.67	0.78	0.76	1.12	1.00	0.94	1.21	1.37	1.45	2.07	1.60	1.01
C05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0.93	0.94	0.81	0.86	0.95	1.00	0.95	0.91	1.00	1.09	1.10	1.18	1.22	0.97	1.05	1.00
C06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34	1.15	1.15	0.95	1.16	1.21	1.04	0.97	0.93	0.80	0.76	0.86	0.93	0.83	1.05	1.01
C07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00	0.96	0.89	0.91	1.06	1.07	1.04	1.02	1.23	1.11	0.98	0.98	0.90	0.95	0.77	0.99
C08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1.10	1.15	1.03	0.94	0.94	1.03	0.98	0.98	0.99	0.78	0.75	0.87	1.01	1.16	1.84	1.04
C0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5	1.16	1.15	1.26	1.31	1.15	1.06	1.03	0.92	0.84	0.77	0.76	0.84	0.78	0.65	1.00
C10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1.32	1.25	1.20	1.27	1.19	1.21	1.10	1.03	0.85	0.72	0.78	0.79	0.84	0.75	0.64	1.00
C1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67	0.70	0.92	0.96	1.14	1.14	1.09	1.12	1.18	1.12	1.25	0.94	0.86	0.95	0.85	0.99
C12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0.85	0.84	0.90	0.96	0.95	1.09	1.04	1.05	1.11	1.05	1.08	1.02	1.08	1.04	0.77	0.99
C13	비료 및 질소 화학물 제조업	1.11	0.89	0.89	1.12	0.79	1.02	1.01	0.94	1.07	1.06	0.98	0.93	1.13	0.95	1.29	1.01
C14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제조업	0.78	0.83	0.88	0.90	0.91	0.96	1.02	1.02	1.03	1.07	1.20	1.11	1.14	1.12	0.92	0.99
C15	살충제 및 기타농약제조업	0.93	0.88	0.87	1.13	0.97	1.10	1.14	1.11	0.96	0.93	0.99	0.86	1.03	1.14	0.90	1.00
C16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0.78	0.79	0.84	0.86	0.86	0.93	1.00	0.93	0.86	1.04	1.12	1.06	1.30	1.37	1.40	1.01
C17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0.69	0.69	0.72	0.83	0.84	0.91	0.92	0.90	0.89	0.96	1.18	1.33	1.38	1.48	1.39	1.01
C18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0.67	0.72	0.75	0.80	0.88	0.96	1.02	1.07	1.10	1.16	1.18	1.09	1.23	1.20	1.06	0.99
C19	화학섬유 제조업	0.81	0.83	0.81	0.84	0.96	0.99	1.05	0.92	1.08	1.18	1.10	1.19	1.20	0.95	1.00	0.99
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79	0.81	0.90	0.94	1.00	1.03	1.02	1.04	1.03	1.07	1.12	1.03	1.05	1.17	0.88	0.99
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01	0.99	1.01	0.99	1.02	1.04	0.97	1.00	0.97	0.93	0.95	0.97	1.08	1.05	1.05	1.00
C2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95	0.92	0.94	0.91	0.96	1.05	1.05	1.02	1.03	0.99	0.99	1.06	1.05	1.01	1.09	1.00
C23	1차 철강제조업	0.60	0.62	0.70	0.87	0.87	0.92	1.05	1.24	1.25	1.22	1.21	1.05	1.16	1.19	0.74	0.98

C24	1차 비철금속 제조업	0.52	0.51	0.52	0.56	0.71	0.81	1.01	1.15	1.30	1.40	1.34	1.12	1.48	1.43	0.69	0.97
C25	금속주조업	0.75	0.76	0.91	0.94	0.94	0.98	1.21	1.29	1.24	1.19	1.04	1.08	0.92	0.84	0.61	0.98
C26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증기발생기 제조업	0.95	0.92	0.96	0.95	1.14	1.18	1.11	1.01	1.10	1.05	1.11	0.90	0.86	0.85	0.87	1.00
C27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0.64	0.65	0.54	0.60	0.75	0.94	1.19	1.02	1.19	1.10	1.12	1.06	1.42	1.38	1.51	1.01
C28	기타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0.88	0.93	0.93	0.96	1.00	1.06	1.04	1.05	1.07	0.99	0.93	0.94	1.07	1.07	1.15	1.00
C29	반도체 제조업	1.14	1.21	1.22	1.25	1.20	1.01	1.03	0.99	0.94	0.92	0.92	0.81	0.76	0.80	0.83	1.00
C30	전자부품제조업	1.36	1.49	1.50	1.21	1.17	0.99	0.94	0.95	0.86	0.89	0.81	0.80	0.71	0.66	0.61	1.00
C3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0.94	0.95	0.93	0.98	0.93	0.98	1.01	1.01	1.07	1.13	1.09	1.05	1.00	0.97	0.87	0.99
C32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1.38	1.32	1.19	1.25	1.14	1.04	1.02	0.89	0.89	0.84	0.82	0.88	0.84	0.76	0.68	1.00
C33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1.23	1.33	1.24	1.17	1.12	1.02	0.92	0.92	0.89	0.91	0.91	0.81	0.88	0.80	0.84	1.00
C34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3.49	2.98	2.13	1.66	1.05	0.84	0.72	0.76	0.44	0.30	0.24	0.16	0.14	0.11	0.08	1.01
C35	의료용 기기 제조업	0.86	0.81	0.82	0.81	0.85	0.98	0.96	0.98	0.96	0.98	1.13	1.18	1.19	1.31	1.25	1.00
C36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	0.69	0.69	0.77	0.88	0.91	0.91	0.98	1.01	1.06	1.10	1.11	1.18	1.24	1.23	1.29	1.00
C37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0.96	0.95	0.92	0.98	0.97	0.95	1.00	1.01	0.98	0.99	1.05	1.01	1.11	1.10	1.01	1.00
C38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1.03	1.00	0.96	1.01	0.85	0.87	0.80	0.64	0.61	0.88	1.03	1.70	1.46	1.00	1.15	1.00
C39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 공급, 제어장치제조업	0.77	0.74	0.74	0.74	0.78	0.93	1.02	1.14	1.19	1.13	1.19	1.23	1.13	1.09	1.09	0.99
C4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0.62	0.72	0.78	0.72	0.64	0.69	0.92	1.05	1.20	1.30	1.30	1.35	1.20	1.23	1.20	0.99
C41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0.88	0.96	1.14	1.10	1.15	0.97	0.99	1.01	0.99	0.96	0.97	0.97	0.94	0.96	1.08	1.00
C42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0.94	0.81	0.98	0.92	0.95	1.22	1.28	1.17	1.02	0.98	0.92	1.14	0.92	0.80	0.80	0.99
C43	가정용 기기 제조업	1.28	1.23	1.13	1.03	1.05	1.13	0.98	0.96	0.94	0.94	0.78	0.93	0.89	0.88	0.89	1.00
C44	기타전기 장비 제조업	0.89	0.89	0.86	0.91	0.95	0.96	0.93	0.93	0.96	0.97	1.03	1.21	1.13	1.18	1.32	1.01
C45	사무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7	1.65	1.20	1.33	1.17	0.95	0.83	0.87	0.82	0.81	0.70	0.75	0.74	0.76	0.88	1.01
C46	사무용 이외의 일반기계 제조업	1.10	1.09	1.08	1.02	0.99	0.99	0.99	0.97	0.96	0.97	0.96	0.96	0.97	0.96	1.00	1.00
C47	특수기계 제조업	0.84	0.88	0.89	0.95	0.98	1.00	1.03	1.06	1.09	1.10	1.03	1.03	1.04	0.99	1.10	1.00
C48	자동차 제조업	1.09	0.97	1.06	1.02	1.00	0.87	0.94	1.02	1.01	0.99	1.04	1.03	1.00	1.02	0.86	0.99
C49	선박제조업	0.27	0.33	0.31	0.47	0.63	0.77	0.96	1.31	1.75	1.62	1.72	1.35	1.18	1.04	0.89	0.97
C50	철도장비 제조업	0.96	0.81	0.92	0.88	1.17	1.12	1.11	1.08	1.08	1.10	0.99	0.96	0.95	0.90	0.90	1.00

C51	항공기 제조업	0.35	0.34	0.34	0.41	0.46	0.59	0.71	0.61	0.73	0.85	1.05	1.90	2.36	2.25	2.49	1.03
C52	전투용 차량 제조업	0.36	0.59	0.42	1.51	1.15	0.78	0.82	0.72	0.94	0.93	1.51	0.84	2.05	0.88	1.86	1.02
C53	모터사이클 제조업	0.67	0.67	0.79	0.81	0.71	1.65	1.47	1.10	0.97	0.85	1.05	1.18	1.18	0.87	0.88	0.99
C54	그외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0.78	0.79	0.79	0.79	0.98	1.64	1.40	1.00	0.91	0.93	1.05	1.08	0.93	0.89	1.12	1.00
C55	가구제조업	1.24	1.14	1.10	1.05	1.16	1.09	0.93	0.96	0.88	0.81	0.92	1.02	0.90	0.91	0.96	1.00
C56	기타제품 제조업	1.13	1.07	1.03	0.97	1.07	1.10	1.06	0.97	1.01	0.96	0.83	0.95	0.94	0.94	1.01	1.00
C57	전기, 가스, 증기, 수도	0.27	0.27	0.33	0.48	0.86	1.24	1.30	1.43	1.26	1.16	1.23	1.23	1.15	1.26	1.75	1.01
C5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	0.94	0.95	0.96	0.97	1.10	1.15	1.09	1.09	1.03	1.02	0.93	0.90	0.95	0.91	1.04	1.00
C59	건설업, 건축기술 서비스	1.10	1.15	1.11	1.00	1.09	1.16	1.05	0.98	0.92	0.89	0.85	0.87	0.90	0.91	1.28	1.02
C60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0.83	0.82	0.88	0.98	0.89	0.91	0.91	0.98	1.05	1.11	1.12	1.04	1.08	1.20	1.33	1.01

<부록 2> 저널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제목	저널명	저자	연도	호수
공업소유권과 공업소유권보호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	[학보(역사,법학)]	최정희	2000년	2호
[명인소개] 화약과 화약무기발명가 최무선	[민족문화유산]		2002년	2호
(일화)《발명왕》의 대답	[민족문화유산]		2003년	2호
발명에 대한 권리와 그 보호	[정치법률연구]	박세식	2003년	4호
우리 나라에서의 금속활자의 발명과 발전이 가지는 문화사적의의	[역사과학]	박사, 부교수 허륜	2005년	3호
특허권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	[정치법률연구]	학사 박세식	2006년	4호
발명가일군	[천리마]		2006년	5호
지적소유권과 그 리용	[천리마]	부교수 학사 김성도	2006년	6호
<상식> 특허제도	[천리마]		2006년	12호
발명메달	[청년문학]	청진제2사범대학 어문학부 학생 리준미	2007년	1호
<상식> 기자들의 3대발명	[천리마]		2007년	2호
<강좌> 지적소유권에 대한 일반적리해	[정치법률연구]	학사 박세식	2007년	3호
특허권과 특허보호제도의 기본내용	[정치법률연구]	학사 김신호	2007년	4호
<상식> 인류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20세기 10대발명	[천리마]		2007년	6호
<상식> 전쟁이 가져온 3대발명품	[천리마]		2007년	8호
로동자《발명가》	[천리마]		2007년	10호
<국제과학계소식> 《종이》전지발명	[천리마]		2007년	12호
공업소유권의 준거법에 대한 부르쵸아리론과 그 부당성	[정치법률연구]	유명선	2008년	2호
비누의 발명	[천리마]		2008년	3호
<경제상식> 지적소유권이란	[천리마]	한성기	2008년	8호
<경제지식> 발명의 역할	[천리마]	김옥희	2008년	8호
<경제상식> 특허문헌의 발생	[천리마]	최창수	2008년	10호
고려의 금속활자발명시기와 그 기술적전제	[민족문화유산]	조정원	2009년	1호
<일화> 전지의 발명	[천리마]		2009년	1호
공화국특허권보호에 대한 일반적리해	[정치법률연구]	조명주	2009년	2호
특허권의 본질	[정치법률연구]	조명주	2009년	3호
<역사인물소개> 고려의 발명가 최무선	[천리마]	신경실	2009년	4호
지적소유권에 대한 일반적리해	[정치법률연구]	박성숙	2009년	4호
발명가의 명예를 빼앗길번 한 수학자 따르말리아	[천리마]		2009년	6호
<경제지식> 특허제도의 발전력사	[천리마]	리철운	2009년	6호
특허에 대한 일반적리해	[천리마]	안성련	2009년	8호
<로동자발명가> 청진강재공장 작업반장	[천리마]		2009년	10호

리호진동무				
<경제지식> 특허문헌의 리용	[천리마]	김상옥	2009년	11호
<강좌> 발명보호의 법률적기초	[정치법률연구]	리성일	2010년	1호
발명이 공업도입가능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	[정치법률연구]	송정혁	2010년	1호
특허권의 본질과 특징	[학보(역사,법학)]	김철웅	2010년	1호
배지느러미를 가진 잠수기계 발명	[천리마]		2010년	1호
발명공보의 구성과 법률적특징	[정치법률연구]	김명희	2010년	2호
<찬란한 문화, 슬기로운 인민> 우리 민족의 자랑 발명 몇가지	[청년문학]		2010년	6호
민족의 자랑—발명 몇가지	[천리마]	김광천	2010년	7호
<각도소식> 여성발명가	[천리마]	김철진	2010년	8호
특허쟁탈전의 기원—프로메테우스전설	[천리마]	리경숙	2010년	10호
특허권침해에 대한 심리원칙	[정치법률연구]	영문제목 박세식	2011년	1호
<상식> 철근공크리트의 발명	[천리마]		2011년	2호
전화기의 발명가 벨	[천리마]		2011년	3호
<농민발명가> 3대혁명붉은기 령산협동농장 농장원 럽남일동무	[천리마]		2011년	3호
상표의 법적인정조건에 대한 리해	[학보(역사,법학)]	조일범	2011년	4호
상표권의 법적성질과 특징	[정치법률연구]	조일범	2011년	4호
<상식> 지적소유권	[조선문학]		2011년	7호
<일화> 석판인쇄법의 발명과 제네헬더	[조선문학]	윤성호	2011년	8호
<일화> 요드링크의 발명	[천리마]		2012년	6호
<상식> 지난 시기의 몇가지 발명들	[천리마]		2012년	7호
<상식> 발명과 그 보호	[천리마]		2012년	11호
발명대리봉사에 대한 일반적리해	[정치법률연구]	장봉도	2013년	1호
특허와 상표의 련관성에 대한 분석	[정치법률연구]	박사 김철웅	2013년	2호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공업소유권법상 규제방도	[정치법률연구]	박사, 부교수 윤종철	2013년	4호
<상식> 특허권과 발명권	[천리마]		2013년	11호
<유모아> 《발견》과 《발명》	[문화어학습]		2014년	3호
발명권과 특허권에 대한 일반적리해	[학보(역사,법학)]	리선학	2014년	4호
특허권의 작용과 특허발전추세	[천리마]		2014년	11호
광부가 만든 축구경기용발명품	[천리마]	본사	2014년	12호
지적소유권에 대하여	[천리마]	김원식	2015년	2호
과학기술정보사업에서 특허문헌의 리용과 특성	[학보(어문학)]	백석	2015년	2호
현시기 자본주의기업들의 특허권람용과 그 부정적후과	[학보(철학,경제)]	안철주	2015년	4호
<각 도에서 보내온 소식> 창의고안명수	[천리마]	본사기자	2015년	11호
국제특허분쟁의 특징과 류형	[정치법률연구]	리평철	2016년	1호
음악가들에 의해 발명된 천연색필림	[조선예술]	임혁	2016년	11호

발명특허사업에서 재심의요청의 원칙적요구와 방법	[정치법률연구]	량광호	2017년	1호
지적소유권의 특징	[사회과학원학보]	권윤희	2018년	1호
생물공학기술발명에 대한 법적보호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학보(역사,법학)]	김철웅	2018년	1호
특허담보처분에 대한 일반적리해	[법률연구]	김성학	2018년	1호
현시기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중심과업과 방도	[사회과학원학보]	김신호	2019년	1호
<용어해설> 공업소유권	[법률연구]		2019년	1호
대외무역에서 상표와 그 효과적리용방도	[학보(철학,경제)]	김혜옥	2000년	3호
《BOT》개발방식에서 특허협약의 법적성격에 대한 리해	[정치법률연구]	강원우	2013년	1호
지적소유권침해에 대한 손해보상리론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정치법률연구]	박영일	2013년	4호
지적소유권의 합리적리용은 지식경제건설을 다그치는 위력한 수단	[경제연구]	김원식	2014년	2호
적극적인 새 제품도안개발은 지식경제강국건설의 중요한 담보	[경제연구]	한설경	2014년	4호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무역관련지적소유권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법률적문제	[정치법률연구]	부교수 김운남	2014년	4호
국제특허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	[사회과학원학보]	리평철	2016년	1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의 분쟁해결제도	[법률연구]	박영일	2018년	3호
공업소유권과 공업소유권보호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	[학보(역사,법학)]	최정희	2000년	1호
인터넷상에서 도메인이름과 상표권과의 저촉문제	[정치법률연구]	허영학	2006년	2호
지능로동의 산물로서의 상표	[경제연구]	김원일	2010년	2호
<강좌>상표의 본질과 종류	[정치법률연구]	문윤희	2011년	1호
상표권제한의 본질적내용	[정치법률연구]	김철웅	2011년	2호
상표권의 국제법적제도수립에 관한 역사적고찰	[학보(역사,법학)]	류성민	2011년	2호
합리적사용에 따르는 상표권의 제한형태와 그 내용	[정치법률연구]	문윤희	2011년	3호
부정경쟁으로부터의 상표권의 법적보호	[정치법률연구]	조일범	2012년	1호
등록시효에 의한 상표권제한의 방법	[정치법률연구]	조일범	2012년	2호
현시기 상표발전의 특징	[경제연구]	리건영	2014년	1호
<상식> 상표의 유래와 정의	[천리마]	본사	2014년	8호
지적소유권과 그 리용	[천리마]	부교수 학사 김성도	2006년	1호
<강좌> 지적소유권에 대한 일반적리해	[정치법률연구]	학사 박세식	2007년	4호
특허권과 특허보호제도의 기본내용	[정치법률연구]	학사 김신호	2007년	5호
<상식> 공업도안	[조선문학]		2012년	6호
현시기 공업도안을 적극 개발도입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	[경제연구]	조태희	2013년	1호
산업미술공업도안창작에서 비례수들의 적용수법	[조선예술]	차승혁	2013년	11호

공업미술도안창작과 인체공학	[조선예술]	배영길	2013년	12호
공업도안창작과 단순비례방법의 기준비례수	[조선예술]	차승혁	2014년	1호
상품광고도안과 사진촬영	[조선예술]	고정미	2008년	2호
<상식> 상표	[조선문학]		2012년	6호
<상식> 산업미술도안창작에서 국제적관례와 세칙	[천리마]	본사기자	2013년	2호
상표를 만화적으로	[조선예술]	본사기자	2014년	3호
방직도안에서 색채의 역할	[조선예술]	강남철	2015년	3호
우리 식의 회화기법으로 마크도안창작의 새 경지를 개척한 걸작품	[조선예술]	배영길	2015년	5호
세계적인 명도안과 산업미술가	[천리마]	장은혜	2015년	5호
마크도안의 조형적형상	[조선예술]	정현호	2015년	11호
산업미술에서의 신발도안의 형태	[조선예술]	정동혁	2016년	5호
절세위인의 세심한 지도속에 창작된 간판도안의 형상적특성 - 평양국제비행장간판도안에 대하여	[조선예술]	김혁철	2016년	5호
절세위인의 뜻이 어린 《매봉산》상표의 획과 공백의 조형성	[조선예술]	최수련	2016년	5호
도안창작에서의 색채구성	[조선예술]	김미향	2016년	11호
전사의 영예훈장 도안창작과 더불어 길이 빛나는 불멸의 자욱	[조선예술]	윤정혁	2017년	7호
류선형형태의 룬전기재도안창작	[조선예술]	김충혁	2017년	8호
주체적도안미술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조선예술]	홍성민	2017년	8호
산업미술간판도안창작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조선예술]	한현성	2018년	3호
공업미술도안창작에서의 착상	[조선예술]	리세혁	2018년	3호
과학기술전당마크도안의 조형적형상	[조선예술]	송문일	2018년	5호
창조적사고력과 산업미술도안창작	[조선예술]	김창원	2019년	3호
경제생활에서 상표의 역할과 보호	[경제연구]	황명희	2003년	3호
<법무해설> 상표란 무엇이며 어떤것이 속하는가	[천리마]	최청송	2011년	2호
<용어해설> 공업소유권	[법률연구]		2019년	1호

<부록 3> 뉴스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기사 제목	신문명	발간일자
지적소유권	[민주조선]	2005-09-06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켜> 발명장려사업을 앞세워 - 국가과학원 발명국에서	[로동신문]	2007-06-12
<상식> 지적소유권	[민주조선]	2007-08-07
국가적관심속에 지적소유권보호 - 관련 법규에 기초하여 행정지도 강화	[조선신보]	2008-05-01
<론설> 발명의 주인은 대중자신이다	[로동신문]	2008-07-13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어나가자> 경제강국건설을 추동하는 발명성과 확대	[로동신문]	2008-07-15
발명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적극 불러일으켜 - 국가과학원 발명국에서	[로동신문]	2008-07-22
제10차 전국발명 및 새기술전람회 개막	[민주조선]	2008-10-02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주는 자랑스런 모습 -제10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장을 돌아보고-> 현명한 령도밑에 자랑스런 발전을 이룩한 발명창조사업	[로동신문]	2008-10-07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주는 자랑스런 모습 -제10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장을 돌아보고-> 지적제품류통 활발	[로동신문]	2008-10-07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주는 자랑스런 모습 -제10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장을 돌아보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빛나는 결실	[로동신문]	2008-10-07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주는 자랑스런 모습 -제10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장을 돌아보고-> 전람회장에 넘치는 열풍	[로동신문]	2008-10-07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주는 자랑스런 모습 -제10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장을 돌아보고-> 이목을 끄는 발명, 새 기술성과들	[로동신문]	2008-10-07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자랑스런 로력적성교로> 상표법의 일부 내용이 수정보충되었다	[민주조선]	2011-07-15
지적제품류통에 관한 계약사업 활발 - 전국발명 및 새기술전람회에서	[조선신보]	2012-09-03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자> 청년과학기술행군의 생활력 과시 -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1만 2 0 0 0여건의 발명 및 창의고안,새 기술혁신안 도입	[로동신문]	2012-09-16
수정보충된 발명법 / 사회주의기업체의 경쟁을 안받침 - 새 기술창조로 경제발전을 추동	[조선신보]	2015-03-12
지적제품전람회 개막	[로동신문]	2016-07-21
<참관기> 지식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을 추동해갈 드높은 열의 - 지적제품전람회장을 돌아보고	[로동신문]	2016-07-31
산업미술도안의 등록과 보호	[로동신문]	2016-11-27
경제발전 보여주는 축도, 령역확대하는 산업미술 - 보다 창조적으로 진행되는 도안창작	[조선신보]	2018-07-06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많은 산업미술도안 창작	[로동신문]	2018-12-25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로동신문]	2019-01-09
국가산업미술전람회 개막 - 제품생산의 실리를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조선신보]	2005-09-27
주체산업미술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	[민주조선]	2005-09-30
수재교육에서 성과, 김책공대 학급전원이 발명권 획득 - 대학들에서 특별반 운영, 과학기술발전의 튼튼한 토대 마련	[조선신보]	2005-12-13
창의고안명수	[로동신문]	2005-12-15

발명소식	[로동신문]	2006-03-06
제9차 전국발명 및 새기술전람회가 진행된다	[로동신문]	2006-03-22
존경받는 《우리 발명가지배인》 - 승호식료공장 지배인 박의정동무	[로동신문]	2006-03-22
농기계공장 지배인, 《연유절약》으로 특허취득 - 《뜨락뜨락의 만가동 보장하겠다》	[조선신보]	2006-03-28
가정부인이 만든 당뇨병약에 특허 - 고려약에 미생물 배양, 전문기관들이 효과성 인정	[조선신보]	2006-04-22
존경받는 녀성심사원 - 국가과학원 발명국 공기관동무	[민주조선]	2006-05-30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의 본분을 다해갈 인민의 확고한 의지> 주체의 최고성지에 바쳐가는 순결한 마음 - 국가과학원 발명국 일군들과 번역원들	[로동신문]	2006-07-04
《발명국 등록》, 반년간에 1,500여건 - 과학기술분야에서 뚜렷한 성과, 주역은 새 세대	[조선신보]	2006-07-18
전국의 본보기《326공장》, 부단한 자기갱신 - 9달동안 10여건의 발명 및 새기술 도입	[조선신보]	2006-07-27
국내발명으로 등록된 새 기술 생산의 현장에 적극 도입	[조선신보]	2006-08-03
100여건을 국가발명품으로 추천 -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 폐막	[조선신보]	2006-08-04
<주체의 혁명적인생관을 새겨주는 시대의 성과작-《한 녀학생의 일기》> 관람후의 실효모임 - 국가과학원 발명국에서	[민주조선]	2006-08-22
제9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 - 전람회장에서 지적제품을 유통,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교류	[조선신보]	2006-09-18
<제9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참관후는 의약품 구입 - 특허제품을 매대에서 판매	[조선신보]	2006-09-18
<제9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새 기술 일반화를 위한 대화의 장 - 개발자들이 출연하여 해설강의	[조선신보]	2006-09-18
<제9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고분벽화수명을 늘일수 있는 새 기술 - 후레스코화법에 적합한 방법론의 확립	[조선신보]	2006-09-18
<제9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새형의 변환장치에 합영합작 신청 - 한개의 반도체소자로 모든 기능 수행	[조선신보]	2006-09-19
<과학기술은 강성대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 - 제9차 전국발명 및 새기술전람회장을 돌아보고	[민주조선]	2006-09-22
나날이 발전해가는 공화국의 과학기술 - 제9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를 보고	[통일신보]	2006-09-23
탄광버력으로 고급타일 생산, 발명권을 받은 기술 - 제품은 김책공대 전자도서관에도 리용	[조선신보]	2006-09-28
독자기술에 의한 간염치료약 - 리과대학 생화학연구실에서 개발, 국내특허 수여	[조선신보]	2006-10-24
발명권을 받은 《입냄새평가방법》 - 타액으로 변하는 색대조표를 리용	[조선신보]	2006-11-08
발명소식	[로동신문]	2006-11-12
2006년 최우수발명가 발표 - 전문연구사들과 함께 생산현장 일군들도 선정	[조선신보]	2006-12-30
<소문난 발명가>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절연소재분공장 - 책임기사 공훈기술자 최성덕동무	[민주조선]	2007-01-07
진귀한 치료약제 새로 발명 - 국가과학원 생물분원 실험생물학연구소에서	[통일신보]	2007-01-20
<상식> 특허제도	[민주조선]	2007-04-27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한 축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95돐기념 중앙과학기술축전장을 돌아보고-> 발명가들의 기쁨넘치는 밤	[로동신문]	2007-05-10
발명국에서 최신 발명 및 특허기술도서를 출판 - 비전문가도 창안명수가	[조선신보]	2007-05-16

되도록		
《국가발명》으로 《대학생과학탐구상》 -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과 5학년 1반	[조선신보]	2007-06-12
상반년 500여건의 발명 등록 - 주류는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 관련 연구	[조선신보]	2007-06-19
《조선보석화》 국제특허 신청, 독창적인 기법에 의한 아름다움 -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	[조선신보]	2007-07-03
차운전훈련기 중학교에 도입 - 발명총국에서 설비와 프로그램 개발	[조선신보]	2007-07-13
<위대한 전승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갈 불타는 신념과 의지> 과학연구사업에서 집단적혁신 - 희천체신대학에서 발명가, 창의고안자대렬 확대	[로동신문]	2007-07-25
소문없이 큰일을 해낸 부부발명가 - 평강군에서 사는 김상록, 리정화동무들	[로동신문]	2007-08-19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실력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많은 발명가들을 키워낸 교육자 - 고려성균관 학부장 최성일동무	[민주조선]	2007-08-21
판매령역 확대하는 《장훈》상표, 만경대식료공장 제품 - 지방도시에서도 인기	[조선신보]	2007-09-25
기능성조선김치의 발명권소유자 김동봉실장 - 민족음식발전에 헌신해온 로연구사	[조선신보]	2007-11-09
<강성대국건설을 추동하는 과학자의 본분을 지켜 -국가과학원에서-> 발명소식	[로동신문]	2007-11-24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인민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발명성과 확대	[로동신문]	2007-12-04
태양열흡수재료를 비롯한 발명품 개발 - 연구제목은 《저에네르기》로 《고효율》	[조선신보]	2007-12-10
<과학기술로 경제강국건설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뜻깊은 해>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할 발명제안들	[민주조선]	2007-12-11
발명소식	[로동신문]	2008-01-29
발명소식	[로동신문]	2008-02-13
<일하면서 배우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 로동자발명가 - 평양화학발전연합기업소 최황선동무	[민주조선]	2008-03-25
<과학기술소식> 중력전등 발명	[민주조선]	2008-04-01
《세계지적소유권의 날》	[민주조선]	2008-04-26
발명소식	[로동신문]	2008-04-27
43건의 증서 수여받은 김철주사범대학 물리학부 교원들 - 발명가들이 가르치는 학부	[조선신보]	2008-05-07
《건강 위한 물》의 발명가, 조선고려생명수기술센터 김수일소장	[조선신보]	2008-06-02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나가자> 더 많은 발명가들을 - 희천체신대학에서	[로동신문]	2008-06-03
발명가지배인 - 령남배수리공장 지배인 문희명동무	[민주조선]	2008-06-27
《발명권》으로 본보기 창조, 평양맥주공장 리성찬 지배인	[조선신보]	2008-07-25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끊임없이 늘여나가며> 발명소식	[로동신문]	2008-08-05
로동자발명가 - 평양담배연합기업소 로동자 김영도동무	[민주조선]	2008-08-12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 세차게 타오른다> 창의고안들을 적극 도입	[민주조선]	2008-08-17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 - 제10차 전국발명 및 새기술전람회장을 찾아서	[민주조선]	2008-10-07
제10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폐막	[민주조선]	2008-10-09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 확대> 발명소식	[로동신문]	2008-10-21
자랑많은 《발명가가정》	[통일신보]	2008-11-22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계속 확대> 발명소식	[로동신문]	2008-12-06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새 발명소식	[민주조선]	2008-12-12
로동자를 발명가로 키우는 대중운동 - 생산활동에서 실효성 실증	[조선신보]	2009-02-06
<우리 민족의 자랑> 선조들의 슬기가 깃든 발명품들	[통일신보]	2009-03-21
농장이 자랑하는 창의고안명수 - 선천군 은정협동농장 리경실동무	[로동신문]	2009-03-30
《세계지적소유권의 날》	[민주조선]	2009-04-26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150일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자> 수백건의 발명 및 창의고안 도입 -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에서	[로동신문]	2009-07-21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모두가 창의고안명수, 발명가 - 사리원닭공장 3중3대혁명붉은기 비육직장에서	[민주조선]	2010-12-1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을 돌아보시었다	[로동신문]	2012-04-11
《철쭉》상표를 고품질의 대명사로 - 고급기술자, 기능공이 많은 평양양말공장	[조선신보]	2012-08-08
동물뼈추출물로 만든 영양액 - 외국에서도 특허신청	[조선신보]	2012-10-16
<모든 부문에서 최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 가치있는 발명창의고안을 적극 도입 - 수도건설부문에 파견된 2월 17일 과학자,기술자들격대원들	[로동신문]	2012-10-23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여 태양의 역사를 끝없이 빛내이자> 경제강국건설에 기여할 발명성과들	[민주조선]	2012-12-11
천연원료로 경쟁력있는 제품 개발 - 《황금산》상표로 이름난 창성식료공장	[조선신보]	2013-07-09
높아가는 산업미술창작성과	[로동신문]	2013-09-06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기술혁신, 창의고안의 능수들로 - 북창은하피복공장에서	[민주조선]	2014-02-20
<과학기술을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보다 큰 혁신을 창조> 효능높은 논벼병저항성유도제 발명	[로동신문]	2014-05-26
생산현장의 요구에 부응/발명과 새기술 적극 도입	[조선신보]	2014-08-04
4건의 발명권 획득/평양철도국 김설미씨	[조선신보]	2014-08-27
<조선속도창조의 열풍 세차게 휘몰아치는 황해남도물길건설장> 은을 내는 창의고안들	[민주조선]	2014-11-25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가리> 900여점의 산업미술도안 창작	[로동신문]	2014-12-12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김정은> 창의고안의 명수,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	[로동신문]	2015-02-01
국제러객렬차의 외부장식 일신 - 조선산업미술창작사에서 도안형성	[조선신보]	2015-03-24
훌륭한 산업미술도안은 들끓는 현실속에서 나온다 -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서 1등상을 수여받은 도안창작가들의 성과를 두고	[로동신문]	2015-05-17
<과학기술의 알찬 열매로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드높은 열의> 발관수용물메뽕프를 발명하기까지 -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 과학자들	[로동신문]	2015-06-05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자> 자연에너지기를 리용한 발명제안들	[민주조선]	2015-09-29
<절약은 곧 생산이며 애국심의 발현> 은을 내는 물절약기 - 발명총국 새기술제품교류소에서	[로동신문]	2015-12-25
<태양민족의 긍지드높이 70일전투에서 보다 큰 로력적위훈을 떨치자(모두다 충정의 70일전투에로!)>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더욱 질풍같이 -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100여건의 새 기술 발명	[민주조선]	2016-04-03

<높은 과학기술성과들로 경제발전을 더욱 힘있게 추동할 일념안고(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 가치있는 발명제안들	[민주조선]	2017-01-11
다양하고 특색있는 산업미술도안창작사업 활발 - 조선산업미술창작사에서	[로동신문]	2017-02-02
제품의 다종화,다양화를 위한 노력/《매봉산》상표로 이름난 원산구두공장	[조선신보]	2017-04-08
수도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인 지하전동차 2호 -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조선신보]	2017-04-28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실현에 이바지하는 발명성과들	[민주조선]	2017-09-01
자력갱생대진군에 박차를 더해주는 새 기술들 발명	[민주조선]	2017-09-04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인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을 따라배우자> 《은하수》상표의 새 제품 개발자들 - 평양화장품공장 화장품연구소에서	[로동신문]	2017-09-06
<항일의 연길폭탄정신, 전화의 군자리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소문난 창의고안명수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4.5 청년전차갱 인차중대 중대장 림철수동무	[로동신문]	2017-09-12
새롭고 특색있는 산업미술도안창작사업 활발	[로동신문]	2018-01-25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주체적산업미술 -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을 돌아보고	[로동신문]	2018-04-12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는데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발명소식	[로동신문]	2018-05-29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의 대통로를 힘있게 열어나가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새 기술들 발명	[민주조선]	2018-06-05
발명 및 새 기술혁신안들을 도입	[민주조선]	2018-06-19
다양한 주제의 산업미술도안들을 새로 창작 - 산업미술부문에서	[로동신문]	2018-07-20
특색있는 산업미술도안들 새로 창작	[로동신문]	2018-08-06
<중산돌격운동의 불길높이 생산물의 질제고에서 비약을 일으키자> 창의고안전시회가 실효를 거두기까지 - 원산유리병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8-08-12
<증산의 거세찬 동음, 생산활성화의 동음높이 경제건설대진군에 더 큰 박차를 가하자>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대상설비생산성과 확대 - 기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수백건의 발명과 새 기술 도입	[로동신문]	2018-10-04
<나라살림살이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운전사들의 호평을 받는 발명 - 룡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에서	[로동신문]	2018-10-21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힘차게 전진 - 올해에 기계공업성적으로 수백건의 발명 및 기술혁신안을 도입	[민주조선]	2018-12-22
우리 인민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산업미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창작토론을 심화시키고있다. - 조선산업미술창작사에서-	[로동신문]	2019-01-21
<사회주의 내 조국을 과학기술성과로 더욱 빛내여갈 드높은 열정> 현실적의의가 있는 발명들	[로동신문]	2019-03-07
수요가 높은 《푸른 산》상표의 각종 비닐제품들 - 해방산무역회사의 인기상품들	[조선신보]	2019-03-16
가치있는 발명제안들	[로동신문]	2019-03-20
앞날을 보여주는 국가산업미술전시회/삼지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관련도안도 전시	[조선신보]	2019-05-28

북한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

발행기관 : 특허청

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행일 : 2019년 12월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보대전청사 4동

(Tel. 042-481-5225)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북한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481-5225 <http://www.kipo.go.kr>

ISBN : 979-11-89854-74-4 13500

DOI : 10.8080/P9791189854744